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573-01

2016. 11.

# 인삼시장 소비형태 변화와 인삼산업 육성을 위한 인삼산업법 전면 개정에 관한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인삼시장 소비형태 변화와 인삼산업 육성을 위한  
인삼산업법 전면 개정에 관한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1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성명환(연구위원)

전창곤(선임연구위원)

최기림(연구위원)

김원정(연구위원)

김승규(경북대조교수)



## 요 약

---

- 최근 들어 인삼의 생산비 상승, 노동력 부족, 긴 생육기간 등으로 인한 자연 재해 등 위험성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조 및 유통 부문에서는 복잡한 유통구조 등으로 국내 인삼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세계 인삼시장이 성장하고 소비트렌드가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인삼산업법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일부 채소 및 과일 등에서 농약이 과다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되는 가운데, 인삼의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은 것이 현실임. 인삼 종주국의 위상 회복을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며, 인삼의 재배, 유통, 제조, 수출 등 인삼시장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인삼산업법의 개정이 필요함.
- 인삼산업법은 인삼산업의 육성과 인삼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최근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맞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경제적 자율성을 확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인삼산업법 개정의 주요 쟁점은 경작신고의무제 도입과 인삼류의 검사제도 완화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작부문의 안전성 강화 및 수삼의 연근확인과 연근표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인삼경작신고 자율화 체제인 현 인삼산업법은 향후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경작신고를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함.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청정한 인삼의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현재 자율사항인 인삼경작신고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함.

- 인삼류의 품질 관리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인삼의 검사가 의무화되었지만, 현 품질기준이 지나치게 외형 중심으로 등급·세부품명을 구분하고 있어 불필요한 시간·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검사항목을 선택검사제로 완화하는 것을 제안함.
- 소비자 속성분석 결과, 인삼제품 및 원료관리와 직결된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AP) 인증여부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추가적인 지불의사를 보임. 이러한 분석결과는 GAP 인증여부와 같은 제품 및 원료관리 측면에서의 제품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이를 위해서는 GAP 도입과 생산이력제 추진이 필요함.
- 연근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6년근 수삼만이 고품질의 수삼인 것으로 오인시켜 저년근 인삼류의 부정 표시·유통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었음. 6년근에 집중된 인삼시장을 보다 다양화시키기 위하여 저년근 시장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현 인삼류 연근표시 의무제를 제조업체 자율사항으로 전환하고, 수삼 연근확인은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수삼의 연근확인은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중장기 인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 및 제도 개선과 함께 향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대안이 필요함. 먼저 수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수삼유통체계의 개선 및 수삼유통의 규격화가 필요하며, 자연재해 시 인삼경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후계자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하며, 새로운 인삼시장 개척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및 투자 촉진이 필요함.

- 이 연구는 국내 인삼산업 실태 분석, 인삼업계 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의견 조정을 통해 새로운 인삼산업법 개정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인삼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 및 국내 인삼시장의 소비패턴 변화 분석을 통해 중장기 인삼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함.



## 차 례

---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과 방법 ..... 3
3.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 ..... 5

### 제2장 국내 인삼산업의 위상과 관련제도

1.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위상 ..... 9
2. 인삼산업 관련 법안의 변천 과정 ..... 20
3. 인삼산업 관련 행정체계 ..... 33
4. 최근 인삼 관련 정책 동향 ..... 42

### 제3장 국내 인삼산업 실태 분석과 과제

1. 인삼 생산 및 경작 실태 분석 ..... 47
2. 인삼 유통 실태 분석 ..... 62
3. 국내 인삼산업의 문제점과 과제 ..... 76

### 제4장 인삼 소비 실태와 트렌드 분석

1.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 실태 ..... 85
2. 인삼 및 인삼제품 선호 속성 및 수요 조사 분석 ..... 93
3. 요약 및 시사점 ..... 115

### 제5장 중장기 인삼수급 전망 및 육성 방안

1. 중장기 인삼 수급 성장 잠재력 전망 ..... 117
2. 인삼산업의 환경 변화와 SWOT 분석 ..... 128
3. 인삼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안 ..... 132

**제6장 인삼산업법 개정 방안**

1. 인삼산업법 개정 이유 및 방향 .....	139
2. 주요 쟁점별 개정 방향 .....	145
3. 인삼산업법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148

**제7장 요약 및 결론 .....** 185

**참고 문헌 .....** 189

## 표 차례

---

### 제2장

표 2- 1.	농업에서 차지하는 인삼산업의 위치 .....	10
표 2- 2.	인삼산업의 현황 .....	11
표 2- 3.	인삼 수급 동향 .....	12
표 2- 4.	인삼류별 가격동향 .....	13
표 2- 5.	인삼류 수출 비중 .....	14
표 2- 6.	인삼류별 수출 실적 .....	15
표 2- 7.	우리나라 인삼(뿌리삼) 국가별 수출 동향 .....	16
표 2- 8.	인삼 유형별 수입 동향 .....	17
표 2- 9.	세계 인삼 수출 상위 10개국 .....	19
표 2-10.	캐나다의 인삼(뿌리삼) 수출동향 .....	19
표 2-11.	중국의 인삼(뿌리삼) 수출동향 .....	20
표 2-12.	미국의 인삼(뿌리삼) 수출동향 .....	20
표 2-13.	인삼산업 관련 법안 변천 연혁 .....	21
표 2-14.	인삼산업법 개정 연혁 .....	24
표 2-15.	인삼산업법 시행령 개정 연혁 .....	25
표 2-16.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연혁 .....	26
표 2-17.	인삼검사기관의 변천 .....	36
표 2-18.	인삼검사 실적 .....	38

### 제3장

표 3- 1.	인삼 생산 현황 .....	48
표 3- 2.	인삼 재배형태별 재배면적 및 신규 식재면적 현황 .....	49
표 3- 3.	인삼 재배형태별 생산량 추이 .....	51
표 3- 4.	연근별 경작 동향 .....	52
표 3- 5.	2015년 시·도별 생산량 현황 .....	53

표 3- 6.	연도별 수삼 수매실적 .....	54
표 3- 7.	경영형태별 인삼 재배 경영체 및 재배면적, 2015 .....	55
표 3- 8.	경영형태별 인삼 재배 경영체 및 재배면적, 2016 .....	56
표 3- 9.	GAP·친환경농산물과의 비교 .....	60
표 3-10.	인삼 조사농가의 수삼 판매처별 비중 .....	64
표 3-11.	금산 수삼도매시장 현황 .....	65
표 3-12.	수삼 도매거래 시 일반적 거래등급 실태 .....	67
표 3-13.	인삼의 용도별 이용 비중 .....	69
표 3-14.	인삼류 제조업체의 지역별 입지 현황 .....	70
표 3-15.	인삼류의 검사종류별 주요 검사 항목과 내용 .....	75
표 3-16.	인삼의 연도별 GAP 인증실적 .....	76
표 3-17.	수삼 유통부문의 문제점과 현안 .....	82
표 3-18.	인삼제품류의 제조·유통부문 현안과 문제점 .....	83

#### 제4장

표 4- 1.	인삼 용도별 이용 현황 .....	86
표 4- 2.	인삼제품별 판매량 .....	87
표 4- 3.	연도별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액 비중 .....	90
표 4- 4.	주요 구입처별 가구당 인삼 및 인삼제품 평균소비액 .....	91
표 4- 5.	응답자 연령대별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액 비중 .....	92
표 4- 6.	가구원수별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액 비중 .....	92
표 4- 7.	응답자 성별 구성비 .....	93
표 4- 8.	응답자 연령별 구성비 .....	94
표 4- 9.	응답자 가족구성원 수 .....	94
표 4-10.	응답자 가구 월 평균 소득 .....	95
표 4-11.	응답자 학력수준 .....	95
표 4-12.	지난 1년간 인삼제품 구매횟수 .....	96
표 4-13.	인삼제품 구매 목적 .....	96
표 4-14.	인삼제품 주요 구매처 .....	97
표 4-15.	인삼제품 가정 내 주요 섭취자 .....	97

표 4-16.	인삼제품 선호 브랜드 .....	99
표 4-17.	인삼산업 발전대책(2016~2025년까지) 주요내용 .....	100
표 4-18.	국내 당류 정책 동향 .....	101
표 4-19.	홍삼토닉 제품의 이용 속성 및 속성별 수준 .....	102
표 4-20.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 .....	104
표 4-21.	홍삼토닉 제품의 속성별 수준 변화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 .....	106
표 4-22.	발효홍삼 농축액 변수 정의 .....	108
표 4-23.	발효홍삼 농축액 기술 통계량 .....	108
표 4-24.	발효홍삼 농축액에 대한 로짓추정결과 .....	109
표 4-25.	발효홍삼 농축액 가격에 대한 잠재시장규모 예측 .....	110
표 4-26.	진생베리 추출액 변수 정의 .....	111
표 4-27.	진생베리 추출액 기술 통계량 .....	112
표 4-28.	진생베리 추출액에 대한 로짓추정결과 .....	112
표 4-29.	진생베리 추출액 가격에 대한 잠재시장규모 예측 .....	113
표 4-30.	파마톤정 가격별 구매의사 .....	114
표 4-31.	새싹인삼 가격별 구매의사 .....	115

## 제5장

표 5- 1.	생산부문 변수설정 .....	118
표 5- 2.	소비부문 변수설정 .....	118
표 5- 3.	인삼 무역부문 변수설정 .....	119
표 5- 4.	인삼 수급 모형 관련 시계열 자료 및 출처 .....	119
표 5- 5.	중장기 인삼 수급전망 결과(베이스라인) .....	123
표 5- 6.	시나리오별 2025년 인삼 수급 전망 결과 .....	125
표 5- 7.	중장기 인삼 수급전망 결과(시나리오1) .....	126
표 5- 8.	중장기 인삼 수급전망 결과(시나리오2) .....	126
표 5- 9.	중장기 인삼 수급전망 결과(시나리오3) .....	127
표 5-10.	인삼산업의 대내적 환경 변화 .....	128
표 5-11.	인삼산업의 대외적 환경 변화 .....	129
표 5-12.	국내 인삼산업의 SWOT 분석 .....	131

표 5-13. 미래 유망기술 관련 농업 미래 산업 ..... 137

**제6장**

표 6- 1.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내용 ... 140  
표 6- 2. 인삼산업법의 주요 쟁점 ..... 141  
표 6- 3. 자체검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 143  
표 6- 4. 삼종별 검사 실적 ..... 144

## 그림 차례

---

### 제2장

그림 2-1. 인삼산업 행정체계의 변화 .....	34
-----------------------------	----

### 제3장

그림 3-1. 인삼 재배형태별 신규 식재면적 추이 .....	50
그림 3-2. 2015년 미신고면적 추정 비율 .....	55
그림 3-3. 미계약 재배 수삼의 주요 유통경로 .....	63
그림 3-4. 인삼 가공제품의 주요 유통경로 .....	71

### 제4장

그림 4-1. 건강기능식품 생산액 중 홍삼제품의 점유율 .....	88
그림 4-2. 선택형 실험 설문 예시 .....	103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캐나다, 중국, 호주 등이 새로운 인삼재배국으로 부상함으로써 세계 인삼시장의 확대와 함께 세계 인삼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세계 인삼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삼의 종주국이라 자부했던 우리나라의 인삼산업은 최근 들어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한·중 FTA 체결 등 인삼시장을 둘러싼 대외적인 여건이 변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함.
- 한국의 인삼 생산액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줄면서 최근 생산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수출의 경우 수출액은 2002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인삼시장의 성장세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인삼 수출산업이 성장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국내 인삼산업의 위축은 경작·생산 부문에서의 경영비 상승 및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한 경지면적 감소, 긴 생육기간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 위험성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조 및 유통 부문에서는 복잡한 검사제도, 포장단위, 유통 구조 등에 기인함.
- 현재 국내 인삼산업은 인삼산업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인삼산업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최근 세계 인삼시장은 성장하고 소비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인삼산업법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나라 인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인삼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삼의 재배, 유통, 제조, 수출 등 전방위적인 인삼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인삼산업법의 개정이 필요함.
- 최근(2016.5.16.)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삼업계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고 인삼류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삼류 검사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음.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 유통질서 확립, 소비 및 수출 활성화를 통한 인삼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보완해야할 점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인삼산업 보호를 위해 그동안 엄격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1인가구화, 건강기능성 식품의 다양화, 소비층의 고령화 등 소비여건 변화와 소비자 불편 등으로 인삼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함. 효능보다는 외관 등 모양 위주의 품질기준, 제한된 포장단위, 이해하기 힘든 표시사항 등 소비자

요구에 미흡한 검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등급판정의 필요성이 적고 판정마저 곤란한 미삼·절삼 등 건삼류의 부적합한 등급기준이 설정된 실정임.

- 인삼 및 인삼제품의 소비패턴 변화와 규제로 인한 불편 등 대내외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자 알 권리 보호, 유통질서 확립,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현행 경작신고제도의 보완, 현실에 부합한 규격·중량·포장·표시·인증 등에 대한 제도의 재정비, 인삼 생산·품질 관리제도 정착 등이 가능한 방향으로 인삼산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2. 연구 목적과 방법

### 2.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인삼산업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삼의 국내외 소비트렌드를 분석하여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인삼산업법의 개정 방향 및 개정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2.2. 연구 방법

- 국내외 인삼산업 관련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등에서 작성된 인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을 비롯해 인삼 경작, 제조, 가공, 검사, 소비, 유통, 수출입 통계 자료 및 실태조사를 이용함. 이러한 실태분석을 통해 인삼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인삼산업법 개정 방향을 제시함.

- 인삼산업법 개정에 대한 여론 수렴은 현장토론회, 설명회 및 관련 전문가회의(2회)를 통해 이루어짐.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인삼검사소, 농협중앙회, 농협인삼조합,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인삼협회, 인삼제조업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회를 개최함.
- 소비자의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행태의 변화와 최근 소비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소비실태 분석 전문 인력이 구축되어있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연구를 수행하였음. 위탁연구는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에 대해 최근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함. 총 534명의 소비자패널이 인삼소비에 대해 작성한 가계부를 원자료로 하여 분석에 필요한 패널자료를 구축하였고, 자료에는 소비자패널의 고유 식별 번호와 함께 연도별로 구입한 인삼 및 인삼제품의 종류 및 구입액, 구입처 등이 기입되어 있으며, 더불어 소비자패널의 인구사회적 특성변수로 나이, 학력수준, 주거형태, 소득수준 등이 포함됨.
- 인삼산업법 개정 필요사항과 유망 인삼 및 인삼제품 선호 속성 및 수요 분석에 필요한 소비자 설문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패널을 활용하여 인터넷조사로 진행하였음. 설문조사 결과 총 69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진행된 분석에 따라 유효한 응답을 한 표본에 대해서만 분석이 이루어짐.
- 국내 인삼산업 실태 분석, 인삼업계 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의견 조정을 통한 새로운 인삼산업법 개정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인삼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 및 국내 인삼시장의 소비패턴 변화 분석을 통해 인삼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

### 3.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

#### 3.1. 주요 선행연구

- 성명환 외(1999)는 인삼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해외시장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인삼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확보하고, 수출농업의 표본으로서 인삼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수요함수 설정을 통해 인삼의 수급을 전망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과 수출전략을 모색함.
- 성명환 외(2004)는 WTO/DDA 협상 타결 이후 우리나라 인삼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또한, 국내 인삼산업의 발전방향을 수립함과 동시에 실행 가능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함.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① 인삼 계열화사업의 추진과 생산이력제도의 도입, ② 고부가가치 인삼제품 개발과 가공산업의 육성, ③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검사 및 표시제도의 정비, ④ 인삼의 수출촉진과 효율적인 수입관리, ⑤ 인삼분야의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고려인삼연구센터’ 설치, ⑥ 인삼산업의 반전주체로서 생산자 및 사업자단체 육성, ⑦인삼산업 관련 제도개선과 추진행정체계 정비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동필(2003)은 인삼의 생산, 유통, 가공, 지원체계, 교역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응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정부의 대응 과제로는 ① 인삼생산의 효율성 제고, ② 인삼가공산업 활성화, ③ 인삼유통질서 확립, ④ 인삼수출 증대 및 효율적 수입관리, ⑤ 인삼 관련 지원제도 개선을 제시하고 있음.
- 성명환 외(2004)는 해외 인삼시장의 잠재력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인삼수출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고려인삼의 수출확대 방안으로 ① 고려인삼 전문점 확대 및 판촉활동 강화, ② 인삼가공제품의 수출증대를 위한 판로 확

보 및 효과적인 시장 홍보 등의 마케팅 전략 강화, ③ 수출시장의 다변화, ④ 수출인삼제품의 안전성 강화, ⑤ 통상 및 경제협력의 강화, ⑥ 지리적표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부정유통 방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동필(2006)은 중국의 인삼산업 실태와 관련제도, 발전전략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인삼산업 발전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한국은 홍삼의 개발, 전매제도라는 품질관리 시스템 등으로 오랫동안 인삼 종주국의 지위를 지켜왔음. 하지만 최근 세계 인삼시장이 음용이 편리한 건강기능성 식품이나 의약품, 일반식품 형태로 전환되고, 안전성과 위생, 효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중국·미국·캐나다 등이 인삼산업의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변화하는 세계 소비자들의 선호도나 이에 대응하는 경쟁국가 등의 전략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함.
- 강마야 외(2012)는 충남 인삼산업 경쟁력을 분석하고 전략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국내외 인삼산업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고 충남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한 경쟁력 및 차별화 요인을 분석하여 총 6가지 전략과제(① 생산·경영·기술 혁신, ② 제조 및 가공 혁신, ③ 유통 및 판매혁신 ④ 홍보혁신, ⑤ 수출혁신, ⑥ 국가 단위에서의 제도혁신)를 설정함. 특히, 국가단위 제도혁신의 과제로 규제위주 법령개정 제한 완화, 인삼산업법 개정을 통한 인삼보호와 육성, 소관부처의 일원화, 다중구조의 규제완화, CODEX 아시아규격의 세계규격 전환 등을 제시함.
- 전창곤(2013)은 국내 인삼산업의 실태조사와 분석 등을 통하여 인삼산업 각 부문의 현안과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재배·생산부문, 경영부문, 유통부문, 수출부문에 구분된 전략을 제시함. 특히, 재배·생산·경영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휴면기간 단축과 새로운 초작지 확보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수매의 현실화를 위한 가격형성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유통부문의 개선을 위해서는 수삼거래의 투명성, 공정성, 정보의 공개성 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래제도의 도입·운용이 필요하며, 가격 형성의 효율성과 물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인삼 제품의 유통 신뢰성 구축을 위한 방법으로 제품의 표준화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안전성 확인 및 인증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시함.

- 박기환(2013)은 인삼산업의 부문별 현황과 당면문제를 실증적 실태조사 및 수급전망을 통해 현안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해결방안을 제시함. 인삼산업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연작장해에 따른 재배적지와 초작지 확보 곤란으로 인한 신규 재배면적 감소추세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함.
- 권혁인(2003)은 세계시장에서 한국인삼의 품질 및 성가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인삼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한국 인삼의 품질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진품확인시스템, 품질인증체계, 유통질서 확립 등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지리적 표시제도’와 ‘농산물의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진품확인 및 품질인증체계를 통한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함.
- 양계진(2003)은 금산인삼 산업의 발전 방안으로 ① 신제품 및 고유브랜드 육성, ② 금산군의 ‘인삼특구화’를 통한 복합관광자원 개발, ③ 인삼청정재배단지 조성 및 지역단체장의 품질인증제 도입을 통한 고품질화, ④ 「인삼산업법」의 개정에 따른 「인삼진흥법」 제정 등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인삼산업법」을 폐지하고 고품질 청정인삼 재배를 위한 정부지원 및 재해보상제도 확립, 안전검기준의 재확립 및 검사기관의 단일화, 제품원료용 수삼 및 엑기스에 대한 검사기준 확립, 인삼의 특성에 따른 여러 관련부처 업무 단일화를 위한 법제정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김재수(2003)은 인삼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① 수출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고품질 원료삼의 생산기반 구축, ② 생산기술의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과 소득향상, ③ 가공 산업 활성화와 인삼소비계층의 저변확대, ④ 인삼 물류센터, 인삼공판장 개설, 표준거래규격 제정, 전자상거래 활성화, 품질인증제 도입을 통한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질서의 확립, ⑤ 수출 시장의 다변화, ⑥ 생산기술과 제품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등을 제시함.
- 서재혁(2003)은 인삼산업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발전 잠재력과 세계소비자들의 건강, 자연식품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농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성장·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또한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응 과제로 인삼생산의 경쟁력 강화, 인삼가공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 인삼유통질서의 확립, 인삼수출 증대 및 효율적인 수입관리, 인삼산업관련 지원 및 관리 체계의 정비 등의 필요성을 제안함.

### 3.2. 본 연구의 차별성

- 국내 인삼산업의 실태 분석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많이 있지만, 본 연구는 현행 인삼산업법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음. 인삼산업법 개정안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본 연구가 국내 최초임. 또한, 인삼과 관련된 소비행태 및 소비트렌드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모색하고자 함.

## 제 2 장

---

### 국내 인삼산업의 위상과 관련제도

#### 1.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위상

##### 1.1. 국내 인삼산업의 위치

- 인삼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2015년 기준 생산액 비중이 1.8%이  
나,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로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남. 2011년 인삼생산액이 1조 670억 원으로 증가하여 농업생  
산액 중에서 2.6%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 현재 8,2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함.
-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인삼 수출의 비중은 1990년 20.8%까지 상승하  
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2.7%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수출  
금액은 2011년 1억 8,900만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15년 1억 5,500만 달  
러로 감소하였음. 1990년 초반에 비해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인삼수출시장  
이 위축됨.
- 2015년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농가호수는 108만 8천호로 이 중 인삼 생산농  
가는 2만 1천호임. 이는 전체 농가 중 1.9%에 불과한 수준임. 인삼 생산농가  
의 비중은 2010년대에 들어 2%대까지 증가하였다가 최근 들어 주춤하였음.

표 2-1. 농업에서 차지하는 인삼산업의 위치

연도	생산액(억 원)			농가호수(천호)			농산물수출금액(백만 달러)		
	농업	인삼	비중(%)	총호수	인삼	비중(%)	총수출액	인삼류	비중(%)
1980	87,540	790	0.9	2,155	25	1.2	541	66	12.2
1985	122,254	1,680	1.4	1,926	35	1.8	388	73	18.8
1990	177,281	1,978	1.1	1,767	36	2.0	795	165	20.8
1995	258,553	2,839	1.1	1,501	23	1.5	1,237	140	11.3
2000	318,290	3,728	1.2	1,384	23	1.7	1,255	79	6.3
2005	350,889	5,803	1.7	1,273	16	1.3	2,072	82	4.0
2010	416,774	9,385	2.3	1,177	24	2.0	3,868	124	3.2
2011	413,582	10,666	2.6	1,163	24	2.1	5,117	189	3.7
2012	443,003	10,831	2.4	1,151	24	2.1	5,180	151	3.0
2013	446,088	8,771	2.0	1,142	24	2.1	5,177	175	3.4
2014	449,168	8,453	1.9	1,121	23	2.1	5,693	184	3.2
2015	455,188	8,164	1.8	1,088	21	1.9	5,721	155	2.7

주: 농산물총수출액의 '91년 이전은 농축산물 자료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업주요통계, 인삼통계자료, 농림통계연보, 각 연도.

- 성명환 외(2004)에 따르면, 인삼재배면적은 1995년 9,375ha에서 1996년 8,940ha까지 감소하다가 인삼재배 및 홍삼제조의 자율화이후 재배면적이 2009년에는 19,702ha까지 증가함. 이후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들어 2015년에는 14,213ha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표 2-2).
- 재배면적 변동과 마찬가지로 인삼 생산량도 1995년 11,971톤에서 2010년에는 26,944톤까지 늘어났다가 2015년에는 다시 21,043톤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2010년 이후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음.
- 최근 인삼 재배면적은 2005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작농가수가 늘어 호당 경영규모는 줄어들었음. 호당 인삼 경작면적은 2005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2015년 0.7ha 수준이었음. 인삼의 경우 호당 규모가 1ha 미만으로 영세적일 뿐만 아니라, 인삼경작의 특성상 경작지에서 가까운 재배적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경작지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임.

표 2-2. 인삼산업의 현황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5
수 요 량(톤)		12,115	14,080	15,791	27,656	21,456
생산	면적(ha)	9,375	12,445	14,153	19,010	14,213
	생산량(톤)	11,971	13,664	14,561	26,944	21,043
	생산액(억 원)	2,839	3,728	5,803	9,385	8,164
	생산농가수(호)	23,172	23,011	15,793	23,857	21,087
	호당규모(ha)	0.4	0.5	0.9	0.8	0.7
	가구당생산액(백만원)	12	16	37	39	39
수입	물 량(톤)	36.7	107	297	160	97
	금 액(천 달러)	824	3,243	6,070	4,017	4,117
수출	물 량(톤)	2,527	1,974	2,097	3,298	5,927
	금 액(천 달러)	139,981	78,986	82,475	124,204	155,102
연간 1인당 소비량(kg)		0.23	0.26	0.28	0.43	0.34

자료: 농협중앙회.

## 1.2. 국내 인삼시장 동향

### 1.2.1. 국내 인삼 수급 동향

- 수삼 기준으로 국내 인삼수급 동향은 <표 2-3>과 같이, 수요는 2010년 27,656톤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공급 또한 2010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됨. 이와 같은 인삼 공급의 감소는 인삼 수요 감소에 따른 인삼 생산의 감소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수요 측면의 국내 소비량은 2012년 23,318톤에서 2015년 17,314톤까지 감소하였으며 1인당 소비량도 함께 감소함. 2012년 1인당 연간 인삼소비량은 460g으로 2015년 소비량은 26% 감소한 340g으로 줄어듦. 이와 같은 소비량 감소는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종류가 다양해지고, 젊은 층의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수삼을 기준으로 한 수출량은 2010년

6,350톤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 4,412톤으로 소폭 증가함.

- 인삼의 공급량은 1985년부터 만 톤 이상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2010년 2만 7,700톤 수준까지 확대되었음. 생산량이 2010~2012년 2만 6천 톤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던 이유는 인삼 신규 재배면적이 2006~20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4천 900ha씩 증가하였기 때문임. 이는 2002~2005년 수삼 평균가격이 3만 5~6천 원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2012년 정점 이후 최근 인삼의 생산량은 2만 1천 톤 수준으로 증가세가 주춤하였음. 인삼의 수입량은 전반적으로 전체 공급량의 3% 미만 수준으로, 수입량이 인삼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표 2-3. 인삼 수급 동향

단위: 톤, kg/인

구분	수요				공급		
	소비량	1인당소비량	수출량	계	생산량	수입량	계
1980	3,899	0.11	869	4,768	4,768	-	4,768
1985	9,175	0.24	2,187	11,362	11,362	-	11,362
1990	9,924	0.26	3,844	13,889	13,889	-	13,889
1995	9,035	0.23	2,877	12,115	11,971	144	12,115
2000	12,106	0.26	1,964	14,080	13,664	413	14,080
2005	13,647	0.28	2,144	15,791	14,561	1,230	15,791
2010	21,306	0.43	6,350	27,656	26,944	712	27,656
2011	23,183	0.46	4,047	27,230	26,737	493	27,230
2012	23,318	0.46	3,195	26,513	26,057	456	26,513
2013	18,673	0.37	3,666	22,339	21,968	371	22,339
2014	18,098	0.35	3,226	21,324	20,978	346	21,324
2015	17,314	0.34	4,142	21,456	21,043	413	21,456

주: 1) 물동량은 수삼기준임.

2) 수삼환산은 제조수율을 적용함. 뿌리삼 26%, 분말 23%(뿌리삼의 90%수준), 엑시스 16.9%(뿌리삼의 65% 수준), 차류 10%(용량의 10%), 넥타 7%(용량의 7%), 음료류 0.3%(용량의 0.3%)

3) 1인당 소비량 적용 총인구수 : 50,617,045명(2015 12월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인삼 통계자료집』, 2016

## 1.2.2. 국내 인삼가격 동향

- 인삼류의 금산도매시장 판매가격 및 구매가격의 변동은 인삼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거나, 2010년 곡삼, 생건삼을 제외한 인삼류의 가격이 2005년 대비 하락하였음. 이는 꾸준한 재배면적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수삼의 금산도매시장 판매가격은 2014년 정점을 보이며 다소 등락을 보이지만 최근 직삼, 곡삼, 백삼의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인삼공사나 지역인삼조합과의 계약재배에 의한 수삼 평균 구매가격은 2012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음.

표 2-4. 인삼류별 가격동향

단위: 원

구분	금산도매시장 판매가격					kg당 평균 구매가격
	수삼	직삼	곡삼	생건삼	백삼	
1998	32,640	48,820	20,690	29,620	27,170	29,316
2000	31,720	61,320	26,890	32,040	30,670	30,371
2005	36,572	65,917	35,123	35,028	41,978	39,530
2010	27,511	47,250	26,347	36,188	40,000	38,797
2011	32,257	54,300	33,259	-	39,951	41,479
2012	32,906	59,993	33,253	-	40,111	42,420
2013	30,986	57,367	36,160	-	40,220	39,924
2014	37,551	58,848	36,574	-	43,163	40,739
2015	30,343	60,893	42,958	-	46,954	38,939

주: 1) 수삼- 750g/4년근/10편, 금산시장 1등급 기준, 직삼- 300g/6년근/15편 기준, 곡삼- 300g/4년근/50편 기준, 생건삼- 300g/4년근 기준, 백삼- 300g 기준

2) 생건삼의 경우, 2011년 이후 거래가 미미하여 미조사

3) kg당 평균구매가격은 수삼기준으로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인삼 통계자료집』, 2016

### 1.2.3. 인삼 수출입 동향

#### 가. 인삼 수출 동향

- 인삼수출액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약 1억 8,900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5년 1억 5,500만 달러 수준을 기록함. 국내 농산물 수출액과 비교하였을 때, 인삼수출액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농산물수출의 약 3%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 인삼류 수출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농산물수출	인삼수출액	비중
1990	795.0	164.9	20.7
1995	1,086.6	139.9	12.9
2001	1,251.9	74.8	6.0
2005	1,898.9	82.2	4.3
2010	3,721.6	124.2	3.3
2011	4,940.8	189.3	3.8
2012	4,785.0	150.8	3.2
2013	4,741.0	175.0	3.7
2014	5,223.7	183.5	3.5
2015	5,223.8	155.1	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인삼 통계자료집』, 2016

- 인삼 수출은 대부분 홍삼류가 차지하며 특히 2011년에는 홍삼류의 수출액이 눈에 띄게 증가함. 그 이후 다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홍삼류의 수출액은 꾸준히 1억 달러이상 수출되었음. 그 중에서 홍삼류(뿌리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홍삼제품류의 수출액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는 최대 시장인 중국의 고급 인삼시장에서 한국의 홍삼제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우수한 제품을 선호하는 고소득층을 목표로 한 판매전략이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세계 인삼시장은 규모가 확대 되고 있는데 반해 2015년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 한 것은 세계 최대 인삼시장인 중화권으로의 수출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 전체 인삼 수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정부의 부패척결 정책 등으로 인해 선물용 인삼의 수요가 감소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음.

표 2-6. 인삼류별 수출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홍삼류	74.0 (52.9)	48.7 (61.6)	46.3 (56.1)	86.5 (69.6)	149.9 (79.2)	104.0 (69.0)	129.8 (74.2)	132.5 (72.2)	113.3 (73.0)
-홍삼	63.5	43.2	32.2	52.7	108.4	65.1	88.3	86.1	65.4
-제품	10.5	5.5	14.1	33.8	41.5	38.9	41.5	46.4	47.9
백삼류	59.1 (42.2)	25.0 (31.6)	28.6 (34.7)	26.4 (21.3)	26.1 (13.8)	28.3 (18.8)	26.2 (15.0)	30.6 (16.7)	25.0 (16.1)
-백삼	7.8	4.2	3.7	9.5	8.5	10.9	7.8	12.7	9.4
-제품	51.3	20.8	24.9	16.9	17.6	17.3	18.4	17.9	15.6
기타	6.8	5.2	7.6	11.3	13.3	18.5	18.9	20.4	16.8
계	139.9	79.0	82.5	124.2	189.3	150.8	174.9	183.5	155.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인삼 통계자료집』, 2016

- 국가별 수출동향은 <표 2-7>과 같으며, 홍콩, 중국, 대만, 일본 등 주변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홍콩 인삼시장으로 가장 많은 인삼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는 홍콩의 인삼과세율이 0%로 매우 낮고 쉬운 통관절차로 인하여 수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임. 홍콩의 인삼류에 대한 통관제도는 수입 및 재수출에 대한 규제가 없고, 통관시 필수 기재요건인 규격, 수량, 중량 등 수시검사만 통과하면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임.

- KOTRA 홍콩 인삼시장 동향에 따르면 홍콩의 주요 소비자는 장·노년층과 중국인 관광객임. 면역력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인삼과 인삼 관련 제품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또한 홍삼, 절편, 드링크 등 가공제품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 특히 한국산 홍삼은 고품질과 고효능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었으나, 2015년 수출액이 급감하는 현상을 보임.
- 뿌리삼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의 경우 홍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물량은 많으나 수출액은 적음. 중국으로의 수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 위주의 수출 전략이 필요함. 캐나다와 미국의 북미삼 판매 마케팅 전략 중 “한국의 고려삼은 몸에 열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북미 화기삼은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등의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해 캐나다와 미국으로의 수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고려인삼의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함.

표 2-7. 우리나라 인삼(뿌리삼)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 톤, 천 달러

순위	국가	2013		2014		2015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1	홍콩	105	41,254	124	41,205	117	31,408
2	중국	153	32,813	128	28,769	118	26,621
3	대만	73	17,485	93	21,297	59	12,842
4	일본	22	3,225	44	6,119	50	6,573
5	미국	25	1,543	26	1,675	20	1,984
6	캐나다	5	1,773	8	3,111	4	1,465
7	싱가포르	2	1,100	2	1,122	2	748
8	말레이시아	1	262	3	956	2	687
9	베트남	25	2,451	8	632	8	669
10	인도네시아	3	716	2	530	2	561

자료: 세계 인삼생산 및 시장동향, 국제농업정보 제20호

## 나. 인삼 수입 동향

- 인삼류의 수입은 2005년 이후 감소 추세를 유지하다 2015년에 들어와 다소 증가함(표 2-8). 인삼가공품 중에서도 인삼제품이 인삼 수입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한국 농어민 신문에 따르면, 이러한 인삼제품의 수입 증가는 2000년 백삼정 수입액이 120만 달러 수준에서 이듬해 274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되는 등 백삼정의 수입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홍삼·백삼·홍삼정 등은 최고 754.3% 관세가 부과되나, 백삼정은 20%에 불과하여 관세 차이에 따른 수입 증가가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됨.

표 2-8. 인삼 유형별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수삼 (백삼포함)	인삼가공품		인삼 부산물	계
		홍삼(뿌리삼)	인삼제품		
2000	228(7.0)	474(14.6)	2,536(78.2)	6(0.2)	3,243(100.0)
2005	866(14.3)	59(1.0)	5,144(84.7)	1(0.0)	6,070(100.0)
2010	667(16.6)	190(4.7)	3,114(77.5)	46(1.1)	4,017(100.0)
2011	27(0.8)	25(0.7)	3,465(98.5)	-	3,517(100.0)
2012	82(2.6)	52(1.0)	2,777(88.6)	-	3,135(100.0)
2013	13(0.3)	325(8.4)	3,547(91.3)	-	3,885(100.0)
2014	41(1.2)	186(5.5)	3,099(91.1)	75(2.2)	3,401(100.0)
2015	40(1.0)	161(3.9)	3,901(94.8)	14(0.4)	4,117(100.0)

주: 인삼제품: 백삼분, 백삼정, 백삼차, 홍삼분, 홍삼정, 홍삼차, 인삼액즙, 인삼음료 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인삼 통계자료집』, 2016

## 1.3. 해외 인삼시장에서의 위상

- 글로벌 조사기관인 Euromonitor international의 2015년 리포트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세계 인삼 소매시장은 약 23억 달러<sup>1</sup>로 추정되었음. 최근 몇 년

간 캐나다, 중국, 호주 등이 새로운 인삼재배국으로 부상함으로써 세계 인삼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됨.

- 최근 3년간 세계 인삼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캐나다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으며 그 뒤를 중국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임(표 2-9). 특히 한국 고려인삼이 미국·캐나다산 화기삼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위태로운 상황임.
- 성명환 외(2004)의 캐나다 수출 동향에 따르면 1995년 6,290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10년 후 약 1억 4,900만 달러 증가한 2억 1,180만 달러가 되면서 20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표 2-10). 홍콩 인삼시장에서 캐나다 화기삼 수출이 최근 들어 대폭 증가한 반면 미국의 화기삼 수출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은 2014년 인삼 수출이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 다시 2013년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중국은 캐나다 다음으로 세계에서 많은 인삼을 수출하고 있음(표 2-9).
- 한국의 수출 금액은 2013년 1억 650만 달러에서 2014년 1억 73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다시 2015년 8,490만 달러로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국 중 3위에 그치는 수준임. 그러나 10년 전인 1995년에만 해도 한국의 인삼 수출 실적은 수출액 기준 1억 3,990만 달러로 세계 교역량의 약 38%를 차지하며 수출국 중 1위에 위치하고 있었음(성명환 외, 2004). 따라서 향후 인삼산업 육성을 통해 한국 고려인삼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는 동시에 경쟁국인 캐나다, 중국, 미국 등과의 차별성을 통해 수출시장을 확보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sup>1</sup> 전체 인삼 시장이 아닌 소매시장의 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도매시장을 포함한 전체 인삼시장의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됨.

표 2-9. 세계 인삼 수출 상위 10개국

단위 : 톤, 천 달러

순위		2013		2014		2015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1	캐나다	2,421	173,757	2,558	228,699	2,634	211,812
2	중국	2,365	134,711	1,722	157,960	1,660	134,056
3	대한민국	428	106,542	449	107,346	388	84,891
4	미국	454	90,558	365	77,301	331	55,950
5	홍콩	1,029	42,371	719	44,796	794	46,642
6	대만	38	12,173	53	14,646	44	13,013
7	싱가포르	21	4,885	24	3,850	23	3,407
8	독일	25	1,738	15	1,876	10	1,302
9	말레이시아	21	372	65	1,651	8	880
10	이탈리아	90	7,806	11	990	3	344

주: HS121120(뿌리삼)기준(엑기스, 차, 음료 등 제외)

자료: 세계 인삼생산 및 시장동향, 국제농업정보 제20호.

표 2-10. 캐나다의 인삼(뿌리삼) 수출동향

단위 : 톤, 천 달러

순위		2013		2014		2015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1	홍콩	2,186	161,087	2,329	212,827	2,464	200,117
2	중국	72	4,678	19	1,424	56	3,436
3	미국	74	3,848	77	5,005	38	3,344
4	싱가포르	29	1,627	53	4,406	35	2,872
5	대만	57	2,338	78	4,913	36	1,634

자료: 세계 인삼생산 및 시장동향, 국제농업정보 제20호.

표 2-11. 중국의 인삼(뿌리삼) 수출동향

단위 : 톤, 천 달러

순위		2013		2014		2015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1	일본	620	38,292	664	73,738	417	43,117
2	홍콩	639	27,738	527	26,826	561	29,353
3	대만	222	13,440	191	20,991	192	17,013
4	독일	223	12,073	44	4,384	129	10,857
5	미국	69	3,525	76	5,741	86	7,537

자료: 세계 인삼생산 및 시장동향, 국제농업정보 제20호.

표 2-12. 미국의 인삼(뿌리삼) 수출동향

단위 : 톤, 천 달러

순위		2013		2014		2015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1	홍콩	209	56,663	141	49,530	93	27,432
2	중국	133	24,404	153	21,160	176	23,033
3	캐나다	70	3,256	40	2,609	45	2,224
4	싱가포르	17	2,415	11	1,812	3	1,299
5	필리핀	0	0	0	0	1	889

자료: 세계 인삼생산 및 시장동향, 국제농업정보 제20호.

## 2. 인삼산업 관련 법안의 변천 과정

-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인삼산업 관련 제도 및 법은 1956년 홍삼전매법으로부터 시작됨. 홍삼전매법 시행 이후 홍삼포 경작은 전매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였으며, 홍삼의 제조·판매는 전매청이 독점하는 체제이었음. 1977년 인삼사업법이 새롭게 제정된 이후 홍삼의 제조·판매가 이전과 같이 한국전매공사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백삼의 제조·판매는 민간에게 개방되었음.

- 1967년 WTO 체제 출범 이후 고려인삼은 무한 경쟁에 노출되었고, 중국 인삼·화기삼의 부상으로 세계시장에서 고려인삼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이에 따라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6년 홍삼전매제가 폐지되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인삼산업법이 국내 인삼산업을 전담하고 있음.

표 2-13. 인삼산업 관련 법안 변천 연혁

년도	내 용
1908	법률 41호 홍삼전매법 공포
1956	1월 20일 법률 383호 홍삼전매법 제정 및 공포
1972	12월 30일 법률 2427호 인삼 및 인삼제품에 관한 법률 제정, 인삼관계법 제정
1977	12월 19일 법률 3019호 인삼사업법 제정
1986	인삼사업법 개정(홍삼전매법을 인삼사업법으로 통합)
1995	12월 6일 법률 5022호 인삼산업법 제정
1996	7월 1일 홍삼전매제 폐지(인삼사업법 폐지)

## 2.1. 인삼사업법

- 1908년 법률 41호로 ‘홍삼전매법’이 공포된 이후, 정부만이 홍삼을 제조할 수 있는 등 국가가 독점적으로 홍삼을 생산하고 판매하였음.
- 1972년 「인삼 및 인삼제품 규칙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부 산하공기업인 한국담배공사에서 인삼의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였으며,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는 인삼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등 인삼의 생산 및 검사에서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였음. 한국담배공사는 현 재무부 관리 하에 공사로 시작하여 인삼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홍삼사업을 독점 운영하였으며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창립된 이후 경작지정 및 관리, 경작의 지도, 수매지원, 기타 관련 업무 등을 통해 협조가 이루어졌음.

- 홍삼전매제도는 고려인삼의 위상을 유지, 인삼 경작 농가의 보호 및 수급안정, 고품질의 품질관리 등에 이바지하였으나, 제품 개발에 미흡하여 변화하는 소비자의 선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국내 인삼의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세계 시장점유율을 하락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국가 재정 확보 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독점 운영체제인 홍삼전매제를 시행하였으나, 해외시장 개방 등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인삼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1996년 홍삼전매제(인삼사업법)가 폐지됨.

## 2.2. 인삼산업법

- 인삼산업법의 주관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시 및 광역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소속기관장으로,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홍삼전매제를 주축으로 하여 만들어진 인삼사업법이 폐지되고 인삼산업법이 새롭게 제정되었음.
- 인삼산업법은 5년근 이상의 인삼을 재배하고자 할 때 경작지정을 받도록 하고, 4년근 이하 인삼은 자율적으로 재배하되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인삼제조업자와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간에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계약자에게 각종 자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함.
- 또한, 고려인삼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수출용 인삼의 종자·종묘와 5년근 이

상의 제조원료용 수삼 및 홍삼, 백삼, 태극삼은 국가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음. 모든 인삼제품에 대해 국립농산물검사소로 하여금 원료 성분과 재배기간, 무게 등을 의무적으로 검사하게 하는 등 검사 기능을 강화하였음.

- 인삼산업법 공포 이후 2015년 10월까지 23차례의 법률 개정이 있었음. 인삼산업의 자율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규제를 수차례의 법안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완화시켰으며,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검사 부문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 1999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에게 인삼류 검사를 자율적으로 맡기는 자체검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과도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인삼경작지정제 및 제조확인제를 폐지하였음. 2001년 ‘고려인삼’ 등 인삼류에 대한 지리적표시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여 농수산물의 지리적표시제도를 일원화하였음.
- 2004년 미검사품과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인삼제품의 부정유통근절과 품질관리를 위해,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한 인삼제품에 한하여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2008년 인삼류 제조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및 취소요건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법률상 재량권 행사의 근거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지정 및 취소요건을 법률상에 명시하였음.
- 2011년 산양삼이 인삼산업법이 아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2012년 흑삼 등 새로운 인삼제품에 대한 정의 및 신고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2015년에는 용도에 따라 식품용 인삼류는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받고 의약품용 인삼류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되었음.

표 2-14. 인삼산업법 개정 연혁

연도	내 용
1999	-정부주도의 인삼품질관리를 민간자율관리로 전환 -국정검사업무를 민간검사기관으로 이관 -인삼경작지정제 및 제조확인제 폐지
2001	-미·잡삼류도 검사대상에 포함 -부산물을 원료로 인삼제품 제조·가공 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따로 받지 않도록 함 -지리적표시제를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일원화시킴
2004	-자신이 직접 제조한 인삼제품에 한하여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008	-인삼류제조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및 취소요건 보완 -자가제조하여 검사를 받은 실적을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요건에 추가
2011	-산양삼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라 ‘특별 관리임산물’로 정의되어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2012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출현함에 따라 관련 정의와 제조에 대한 신고의 근거 마련 -인삼류제조업자에 대한 폐업신고 의무제 폐지 -인삼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2014	-인삼사업 등에 대한 통계조사 및 경작신고 기관 확대
2015	-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인삼류에 관해서는 「인삼산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인삼산업법의 변화에 따라 시행령은 10차례 개정되었음. 1999년 미삼(인삼의 잔뿌리) 등 검사의 실효성이 적은 인삼류까지도 판매를 위한 것에 대하여는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검사를 면제하여 인삼의 유통규제를 완화하였음. 그러나 2004년 미삼은 잡삼과 함께 다시 인삼류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 등의 검사를 받도록 개정되었음.
- 2011년 인삼의 종류별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요건 중 인삼제품을 자가제조하여 인삼류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검사 실적이 있어야하는 기간을 최근 2년에서 최근 1년으로 줄였음.

- 2012년 인삼류제조업 폐업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인삼류제조업 폐업신고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운 인삼형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였음. 2014년 인삼류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가제조한 인삼류의 안전성 등을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자체검사업체의 지정기준을 강화하였음.

표 2-15. 인삼산업법 시행령 개정 연혁

연도	내 용
1999	-인삼검사의 예외범위 규정
2001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인삼제품류로 인삼분말류 및 홍삼분말류 등을 정함
2004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 검사를 받도록 설정
2008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과 판정기준 마련
2011	-자체검사업체의 기준 완화(검사실적 기간 줄임)
2012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인삼류제조업 폐업신고 조항 삭제하고, 새로운 형태의 인삼류 제조 신고 위반 시 부과기준을 추가
2014	-자체검사업체의 지정기준 중 다른 기관의 검사기구를 이용할 경우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기구만을 이용하도록 함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시행규칙은 인삼산업법 변화에 따라 12차례 개정되었음. 1999년 연근확인 및 인삼제조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2005년 수요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품으로 제조되는 원형태극삼에 대해 제조·검사 기준 등을 마련하였음. 또한 홍삼, 태극삼, 백삼의 수분 함량기준을 본삼류 14%, 미삼류 및 기타삼류는 12%에서 일괄적으로 15%로 완화하였음. 2006년 제조업체 및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행 홍삼, 태극삼, 백삼에 관한 포장규격을 다양화시켰음.

- 2010년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경재배의 방식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경우 화학비료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였는데, 이는 향후 관련업계 및 생산자들의 불만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2012년 새롭게 출현한 흑삼의 정의 및 제조에 대한 신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약사법의 한약재용 인삼류 검사기준과 식품용 인삼류 검사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중금속 검사기준을 「식품위생법」의 인삼 중금속 기준과 일치시켰음. 또한, 인삼류에 대한 진세노사이드 함량 성분검사 항목을 신설함.

표 2-16.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연혁

연도	내 용
1999	-경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삼식재 전년도 9월 30일까지 인삼협동조합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연근확인 절차 간소화(수확예정일 3일전까지 인삼협동조합장에게 신청) -인삼제조업신고 절차 간소화(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신고기간의 제한 폐지)
2005	-새로운 인삼제품인 원형태극삼에 대한 제조기준, 검사기준·방법 마련, 홍삼, 태극삼 및 백삼의 수분 함량기준 일괄적으로 15%로 완화시킴
2006	-포장규격의 다양화(포장단위 75·150·300·600g외의 단위에 대해 300g 포장단위의 편급별·뿌리수 및 개체중량 등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함)
2010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경재배 경작 시 화학비료의 사용을 허용함
2012	-새로운 인삼제품으로 흑삼에 대한 개념, 제조 및 기준을 정함 -약사법의 한약재용 인삼류 검사기준과 통일되도록 인삼류 검사기준 보완
2014	-인삼경작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 추가 (기존 인삼관련품목조합 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추가)
2016	-절삼 인삼류에 대하여 별도의 등급 표시 -인삼류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포장 방법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정함.

## 2.3. 인삼산업 관련법

- 인삼산업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성식품에관한법률 및 약사법 등 다양한 법률과도 관련이 있음. 이는 인삼이 단순한 농산물에서부터 식품, 의약품, 기능성식품이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인삼은 다양한 속성에 따라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 2.3.1. 식품위생법

- 인삼사업법이 폐지되고 인삼산업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제6조 ‘홍삼제품의 제조·가공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게 되었음.
- 식품위생법은 현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관하고 있으며 1962년 제정·시행되었음.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1987년 인삼사업법의 적용을 받던 백삼제품(당삼 제외)이 인삼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해당 인삼제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함. 종래 인삼사업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던 백삼제품을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도록 하며, 식품 제조·가공업의 종류에 인삼을 원료로 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인삼제품제조·가공업을 추가하였음. 또한, 인삼제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허가를 받도록 함.

- 또한, 1991년 식품의약품안전처(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삼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인삼제품의 품질을 보전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음.
- 인삼산업법은 인삼산업법상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가 식품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제조와 가공에 따른 사항이 식품위생법 제14조, 36조, 37조 등과 관련이 있음. 제1장(정의), 제4장(인삼류 등의 제조) 부문에서 식품위생법에 영향을 받고 있음.
-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함. 제7조에서는 식품(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을 때 식품(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할 수 없음.
-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와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고 있음.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 및 규격에 인삼·홍삼은 인삼산업법에,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인삼산업법에서 정한 기준·규격은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많음.<sup>2</sup>
- 인삼산업법에서는 ‘인삼제품류’의 정의를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등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 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정의 하고 있음.

<sup>2</sup>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참조.

### 2.3.2.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부서이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된 식품을 말하며,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함.
- 인삼산업법 제2조 '정의'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 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이 "인삼제품류"로 명시되어 있음. 시행규칙 별표 3의제1호 적용대상식품 중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를 "특수영양식품"으로 한다고 고시되어 있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크게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로 구분하고 있음. 고시형 원료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 및 규격을 명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말함. 고시형 원료에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 약 80여종의 종류가 있음. 고시형 원료는 크게 영양소와 기능성원료로 구분되는데, 이 중 인삼(홍삼)은 녹차 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과 함께 기능성원료에 포함됨.
- 개별인정형 원료는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를 일컬음. 간건강, 관절/뼈건강, 기억력 개선, 긴장완화, 피부건강 등 다양한 종류의 원료가 있음.

### 2.3.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산양삼<sup>3</sup>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건조된 것을 포함)을 의미함. 재배여부에 따라 ‘자연인삼’과 ‘재배인삼’으로 구분되며, 산양삼은 삼의 묘삼을 산에 심어 자연생태로 재배한 인삼을 말함. 장뇌삼, 산삼 등으로 불리어지던 것을 산림청에서 산양삼으로 용어를 재정립하였음.
- 산림청은 산양삼의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해 임업진흥원을 설립(2011년)하였으며, 품질관리 강화에 노력하였음. 산양삼을 재배하려는 자는 재배 예정지의 생산적합성조사를 받아야하며, 재배사실을 임업진흥원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함. 또한,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생산 여부 및 품질 등을 전문기관에서 확인받아야 하며 잔류농약 등 검사가 의무임.
- 현재 인삼산업법은 산양삼과 동일하게 수삼 안전성검사 의무화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2.3.4. 약사법

- 약사법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인삼의 특성상 약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약재용 인삼은 약사법의 적용을 받음.

<sup>3</sup>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인삼산업법 인삼류는 대부분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의약품용 인삼은 국민질병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른 검사기준, 검사 횟수(2회), 제조업체허가, 제조관리자의 배치, 약사감사, 도매업 허가 등 보다 엄격한 안전 관리기준이 적용되었음.
- 약사법 제85조의3 ‘인삼산업법의 인삼류에 관한 특례’에서 인삼류 검사기관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인삼류 검사기관에서 검사하는 홍삼 및 백삼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인삼류 제조·유통 특례 사항에 따라 인삼산업법의 인삼류 제조업자가 품목 신고한 홍삼 및 백삼을 한약업사, 의약품도매상, 약국개설자, 한약 취급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판매 가능함. 또한 인삼류 제조업자는 약사법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인정하며, 관련 공장·창고·점포·사무소는 의약품 제조·저장·공장·창고·점포·사무소로 인정됨.
- 2011년 1월 정부는 한약재 수급·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농산물 한약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엄격한 규제를 시작하였음. 이에 따라 한약재용 인삼류는 특별법인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에 이중으로 적용받아 규제 부담이 커졌고, 인삼재배 농가들의 큰 불만을 샀음.
- 2015년 4월 농협인삼검사소를 한약재제조업소(GMP)로 등록하고 인삼류 제조업자는 유통특례를 받아 한약재인삼류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인삼관련 약사법이 개정되었음. 다만, 사후관리는 약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부터 시행되었음.
- 한약업계의 강한 반대로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금산군에서 합의안을 만들었고,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유통되는 인삼류도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일반 인삼류제조업자도 의약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고 약사법에 따라 검사, 사후 관리하도록 개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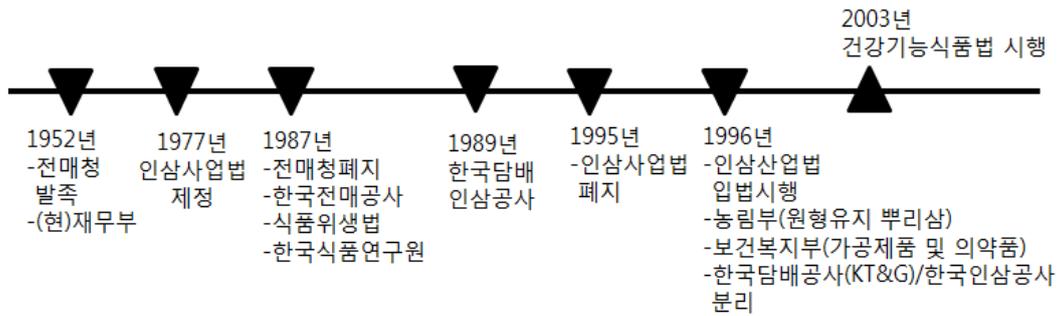
- 인삼산업법 제3조의2 ②항에 따라 약사법 제 31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인삼류에 관해서는 인삼산업법을 적용하지 않음. 그러나 한약재용 인삼류도 생산 단계에서는 식품용 인삼류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제17조 검사 부문에 한에서만 적용받지 아니함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약사법 개정(2015.5.18.)안 중 인삼류 제조업자에 대한 유통특례가 있음. 주요 내용은 인삼류 제조업자가 인삼검사기관에서 제조(검사)된 백삼 및 홍삼을 한약을 취급하는 한약방, 한약도매상, 약국 및 한방의료 기관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약사법 개정안에서 정한 의약품 인삼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인삼류 제조업자의 자격기준과 의무에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제조업자인 경우만 해당되며,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음. 또한 의약품인 인삼과 홍삼을 판매하는 인삼류 제조업자는 약사법(판매질서 준수, 보고와 검사 등, 회수폐기 등)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됨.
- 기존 인삼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인삼류 제조업자의 의약품용 인삼류의 유통·판매 조건에서는 별도의 행정절차는 없으나, 우선 인삼류 검사기관의 의약품제조업 허가 및 품목 허가(신고)가 필요하며, 인삼류 검사기관이 인삼류 제조업자의 보관소를 의약품용 인삼류의 보관소로 사용할 경우 해당 보관소는 의약품 제조업체의 보관소(창고)로 허가받아 관리해야 함.
- 개정(2015.5.18.) 약사법에 의한 약품용 인삼류의 판매는 그 동안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한 인삼은 인삼류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재배농가와 약초가게, 인삼사 등에서도 자격 제한 없이 한약재든 식품이든 자유롭게 판매해 왔음. 그러나 개정 약사법 시행(2015.10.1.) 후에는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를 통해 검사를 받은 인삼류에 대해서는 의약품용 인삼류로 유통·판매 가능함.

### 3. 인삼산업 관련 행정체계

#### 3.1. 인삼산업의 행정체계의 변천 과정

-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국가 재정 수입 및 공물 확보의 수단으로 국가가 인삼에 대해 행정적인 규제를 실시해 왔음. 국가가 인삼을 특별하게 관리해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인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조공물 또는 재정 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함.
- 인삼산업의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인삼 재배가 시작되면서 부터임. 이전에는 산에서 채취하는 산삼으로만 수요를 충족시켰으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인삼산업을 등장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음.
- 인삼산업의 행정은 인삼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장려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해야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타 농산물과는 다르게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졌음. 과거 내장원의 삼정과에서 홍삼을 관리하다가 1952년 재무부 소속의 전매청이 발족되면서 전매청에서 홍삼의 제조 및 판매 독점이 이어졌음. 1972년 인삼사업법이 시행된 이후 전매청은 1987년 한국전매공사로 개칭되었음. 19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근거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 홍삼전매제(인삼사업법)가 폐지되고 1996년 인삼산업법이 제정되었으며, 인삼산업 전반 관리 부처가 재정경제기획원에서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었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인삼재배와 ‘원형유지 뿌리삼’만을 관리하게 되었고, 식품으로의 가공제품과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로 전환되었음. 기존의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한국인삼공사와 한국담배공사로 분리되었음.

그림 2-1. 인삼산업 행정체계의 변화



## 3.2. 인삼산업 관련 주요 기관

### 3.2.1. 농림축산식품부

- 1996년 홍삼전매제가 폐지되면서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삼의 원형(뿌리삼)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게 되었음. 인삼산업법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삼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인삼의 경작, 수출, 검사 부문 등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음. 또한, 인삼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방출 할 수 있음. 또한 인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3.2.2. 농협중앙회 인삼특작부

- 2000년 7월 1일 인삼업협동조합은 홍삼전매제가 폐지되면서 농협중앙회로 편입되었음. 홍삼전매제 폐지 후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로 이관되면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합하였

고, 인삼사업부가 설치되었음. 이후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인삼특작부로 변경되었으며, 고품질 인삼 생산지도와 판매기능을 강화시킴.

- 인삼업협동조합은 생산자단체로서 홍삼전매제 당시 경작지도와 지원 및 관리 업무, 백삼검사 및 백삼류 수출추천 업무 등을 수행함. 농협중앙회와의 통합 이후 업무 성격의 큰 변화는 없으나, 생산자단체로서의 주체적인 역할과 조직의 체계성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13개 지역인삼조합이 인삼사업부에 속해 있음.
- 농협중앙회 인삼사업부의 주요 역할은 크게 인삼경작관리 및 기술지도, 인삼출하조절 및 공동구매 등 임. 생산농가에 대한 경작지도, 식재자금지원, 인삼의 검사로 나눌 수 있음. 인삼사업부는 인삼 생산농가에게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식재자금을 배분하고 있음. 홍삼 전매제 폐지 전에는 식재자금지원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인삼산업의 소관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전되면서 농협중앙회 인삼사업부가 정부자금지원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
- 2009년 농협중앙회는 당시 농협고려인삼과 12개 인삼농협을 중심으로 ‘한삼인’이라는 공동마케팅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이는 기존의 개별적인 사업방식에서 벗어난 농협중앙회와 인삼농협 간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통한 계열화 사업임. 이를 통해 농협의 인삼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함.
- 2015년 농협 인삼사업의 중장기 비전으로 「농협인삼사업 333비전」을 제시하였음. 이는 농협인삼 제품 매출을 매년 30%씩 성장시켜 2017년 총 매출 3,000억 원 달성 및 시장 점유율 30% 진입을 목표로 하는 비전임. 1차년인 2015년에는 신시장 개척, 인삼농협 지원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차년도인 2016년은 홍삼제품 브랜드를 ‘농협홍삼 한삼인’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가속화하고 제품별 규모화 및 전문화를 추진함.

### 3.2.3 인삼류 검사기관

- 인삼의 검사는 「인삼산업법」 제 17조의3·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1조제3항·제23조에 근거하여 의무화 되어 있으며 현재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서 일반 관능검사와 안전성검사 등 인삼류의 국정검사를 수행하고 있음. 관능검사에는 연근검사, 등급검사, 포장검사, 표시검사가 있으며, 안전성 검사에는 잔류농약 등 11종 검사가 있음.

표 2-17. 인삼검사기관의 변천

연도	내 용
~1972	-각 회원인삼조합(인삼농협)에서 검사 수행
~1981	-인삼조합연합회에서 검사 수행
~1984	-한국전매공사 또는 재무부장관 지정 검사기관에서 인삼류 검사 담당
~1996	-재단법인 인삼검사소가 백삼, 태극삼 검사
~1999	-5년근 이상은 농산물검사소에서 국정검사 -4년근 이하는 인삼류 검사기관이 국정검사(인삼협중앙회) -시설·인력을 갖춘 자체검사업체 지정
~2000	-인삼협중앙회
~2017(현재)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 1972년 이전까지 인삼의 검사는 각 회원인삼조합(인삼농협)에서 관장하였으나 1996년까지 인삼조합연합회, 전매청, 한국인삼검사소 등으로 검사기관이 바뀌었음. 홍삼전매제가 폐지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검사기관이 이원화되었다가 1999년 협동조합통합에 의해 현재까지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가 인삼류 국정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03년 인삼산업법 개정을 통해 자가제조한 인삼류에 한해 자체검사업체에 검사를 허용하였음. 자체검사업체는 현재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인삼공사를 포함하여 현재(2016년 5월 기준) 33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

음. 자체검사업체는 시설과 검사기구, 조직 및 인력, 검사실적을 기준으로 지정됨.

- 자체검사제도 도입의 배경은 자체품질관리 능력이 있는 인삼류 제조업체에 대해 수입개방화 시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되, 고품질 인삼제품을 브랜드화 하고 자체품질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임. 1995년 12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홍삼전매제 폐지’와 ‘국정검사 전환시’ 자체검사제 도입을 결정하였음.
- 인삼의 검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인삼검사소의 실적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음. 전체 인삼검사물량에서 농협 인삼검사소의 검사물량 비중은 2003년 62%에서 2015년 38%로 크게 감소하였음. 반면, 한국인삼공사를 포함한 자체검사업체의 검사물량 비중은 같은 기간 38%에서 63%로 증가하였음. 이는 농협 인삼검사소의 예산과 인력, 장비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적자경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3.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인삼류 지리적표시 등록관리, 자체검사업체 지정관리, 부정 인삼류 유통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인삼산업법 제정(1995.12.6)이후 5년근 이상 인삼류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게 되었음. 4년근 이하 인삼류의 검사는 인삼류검사기관에서 수행하였음. 이후 인삼류에 대한 국정검사업무가 민간기관으로 이관되었고, 농관원은 사후관리 검사에 치중하게 되었음.
- 농관원은 자체검사업체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은 자체품질관리 능력이 있는 인삼류 제조업체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표 2-18. 인삼검사 실적

단위: 톤

연도	농협중앙회	한국인삼공사	자체검사업체	합계
2003	428	166	95	689
2004	535	246	104	885
2005	481	270	125	876
2006	651	226	179	1,056
2007	635	279	329	1,243
2008	677	255	352	1,284
2009	695	254	378	1,327
2010	566	267	527	1,360
2011	506	409	355	1,270
2012	322	217	326	865
2013	329	190	305	824
2014	285	208	279	772
2015	293	189	300	782

주: 1) 국내산 실적임.

2) 자체검사업체는 한국인삼공사를 제외한 29개 업체임(2015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인삼 통계자료집』, 2016.

- 또한, 농관원 품질관리과에서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삼류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검사품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중인 인삼류를 확인검사하며, 인삼의 부정유통(미검품,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을 수행하고 있음. 검사품의 사후관리(확인검사)는 분기 1회 이상 실시됨. 이와 함께 농관원은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서(위생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검사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인삼류 수출 장려에 이바지하고 있음.

### 3.2.5. 인삼 관련 연구기관

- 인삼의 품종 개발 및 육성은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의 인삼특작부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음. 2008년 ‘농촌진흥청 직제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전 인삼약초연구소가 인삼특작부로 개편되었음. 채소,

과수 등이 원예작물부하에 관리되고 있는 반면, 인삼은 단일 품목으로서 유일하게 인삼특작부라는 전담 부서가 존재함. 인삼특작부는 인삼과, 약용작물과, 버섯과, 인삼특작이용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표준인삼경작방법을 고시하고 있음.

- 인삼의 효능 및 성분 탐색·제품에 대한 연구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전통식품 연구센터 내 인삼연구팀에서 수행되고 있음. 한국식품연구원은 건강한 국가 실현에 기여하고자 1987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으로 설립되었음. 2004년 9월 한국식품연구원으로 개명되었으며, 2013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소속이 변경되었음.
- 한국식품연구원의 인삼연구팀은 고려인삼 등 특용자원의 첨단 소재화를 위한 표준 가공 공정 개발, 신규 활성 성분 발굴 및 효능 평가 연구, 고려인삼의 우수성 구명 및 글로벌 상품화 연구를 중점으로 수행하고 있음.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고려인삼의 질환예방 및 다양한 기능성 구명, 진세노사이드 등 유용 성분의 신속, 동시 분석법 개발, 백삼 및 저년근 홍삼의 품질 특성 구명 및 표준화 등이 있음.
- 한국인삼연구원은 한국인삼공사 소속으로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신소재 발굴 및 홍삼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을 하는 등 원료에서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있음. 1937년 전매국 연구소에서 출발하여 1981년 재단법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로 개편되었으며, 2002년 한국담배인삼공사 중앙연구원 인삼연구소로 흡수되었음. 2010년에 KGC인삼 공사 소속의 연구원으로 분리되어 현재 KGC인삼공사 한국인삼연구원으로 개명되었음.
- 정부 소속의 연구기관 이외에 지자체 인삼약초기관에서도 다양한 인삼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강원도 농업기술원 소속의 인삼약초연구소와 충남농

업기술원의 금산인삼약초 시험장 등이 있음. 2007년 지식경제부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하에 충남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와 전북 진안군 진안홍삼연구소 등이 설립되었음. 향후 지자체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인삼 종자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3.3. 인삼산업 행정체계의 문제점

#### 3.3.1. 인삼산업 행정의 분리

- 현재 인삼의 원형삼(뿌리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공식품은 식약처에서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산양산삼은 산림청에서 임산물로 관리하고 있음. 이와 같이 뿌리삼의 경우 용도에 따라 적용받는 법이 상이하여 행정적·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존재함. 이와 같이 인삼산업에 관련된 행정이 통일되지 않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음.
- 따라서 생산자단체(조합)를 중심으로 인삼산업 전반의 행정적 일원화가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생산자단체의 역할은 인삼경작신고 업무, 연근확인서 발급, 인삼경작 지도사업 등이 있음.

#### 3.3.2. 인삼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부족

- 현 인삼산업법 제3조2항에서 생산자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종묘, 경작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적지조사 및 인삼제품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와 같은 연구 수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농진청은 생산 분야에만 연구가 치중되어 있으며, 타 연구기관은 연구역량이 미흡하므로 인삼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이 필요함. 한국인삼연구원은 과거 정부 연구기관이었으나, 민영화가 되면서 인삼산업전반에 대한 연구기관이 상실된 상태임. 한국인삼연구원은 한국인삼공사의 지원을 받아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6년근 홍삼에 대한 연구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연구의 성격보다 사적인 연구 성격이 강해 인삼산업 전반에 대한 균형적인 연구발전이 어려움. 따라서 인삼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의 통합 연구기관이 필요함. 농림축산식품부가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3.3.3. 인삼협동조합의 기능 미흡

- 인삼협동조합은 홍삼전매제 폐지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으면서 생산자단체로서의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음. 또한 경제사업에 치중하면서 생산자단체의 지도 기능이 약화되었음. 인삼산업법 ‘제10조9 계약경작·11조 수매 비축 및 출하 조절’에 제시된 인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이라는 조합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농협중앙회 인삼특작부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하고, 지역인삼농협에 대한 지원체계도 부족함. 지역인삼농협은 지도사업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하여 점차 기능과 역할이 약해지고 있음. 또한, 인삼농협 간 중복투자, 출혈경쟁, 선심성 수매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3.3.4. 인삼 관련 연구기관 간의 협력관계 미흡

- 현재 국내 인삼 관련 연구는 농촌진흥청, 한국인삼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지자체연구소 등에서 각 연구기관별 고유분야에 대해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다른 품목에 비해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연구결과들이 통일되지 못하고 중복되는 과제들 또한 많은 실정임. 따라서 각 기관별 연구결과의 공동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나아가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결과가 축적·활용되어야 할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역할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권한을 특정 국책 연구 기관에 부여함으로써, 다수의 연구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연구 컨트롤 타워 부재로 공공 연구기관들의 방향성 및 기능이 모호함. 각자 별도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각 연구기관별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조정자 역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공동 학회 등을 통한 연구기관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인삼 관련 연구의 가치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4. 최근 인삼 관련 정책 동향

-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인삼 중주국 위상 회복, 민간주도의 자율적 인삼산업 성장기반 조성’ 이라는 비전과 ‘2020년까지 생산액 1조 5천억 원, 수출 3억 달러로 확대’라는 목표를 기반으로 민간역량 강화, 수출·소비 확대, R&D 확대, 생산·안전 관리, 제도개선 측면에서 대책을 수립함.

#### 4.1. 민간 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

- 2015년 농산물 최초로 출범한 인삼의무자조금을 제조·가공·유통 업체 및 수출업체까지 확대하여, 소비 촉진과 수출시장 개척 등 범인삼업계의 공동 이익을 위한 인삼 의무자조금 연착륙 유도 및 2단계 가입 확대를 추진 중에 있음.
- 2015년 1단계에서는 경작농가, 생산자단체, 자체검사업체가 참여하여 목표액 대비 109%인 1,547백만 원을 거출하였으며, 2016년 2단계에서는 제조·가공업체, 유통업체(수삼센터 등), 수출업체가 참여하여 자조금 조성액을 2015년 15억에서 2016년 25억, 2018년 50억까지 확대할 계획임.
- 「고려인삼의 날」을 제정하고 전국인삼한마당대축제 등을 도입하고자 하며, 민간주도의 산·관·학이 참여하는 고려인삼정책포럼을 반기별로 정례화하여 고려인삼의 전통성 계승 및 인삼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적 인식과 참여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 4.2. 인삼 R&D의 산업화 연계 강화

- 종전의 R&D 전문가그룹에서 산업계를 포함·확대하여, 현장의견 수렴 등 현장 중심의 R&D 기획·선정·평가를 통한 산업화 연계 강화를 위한 ‘인삼 R&D·산업기획단’으로 확대 및 체계를 재편함.
- 인삼 소비촉진 및 수출증대의 실질적 기여를 위해 인삼분야 R&D의 기획·선정·평가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연구과제의 제안·선정·평가 시, 현장애로 과제가 충분히 반영·포함되도록 인삼 전문가그룹의 참여를 확대하

고, 기획과제 채택 시 인삼 R&D 산업기획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제 선정 시에는 현장위원이 2인 이상 참여하는 등의 체제 개편을 계획함.

- 승열작용 불식과 약물 상호작용 등의 국제공동연구 및 WHO 국제약전의 기능성 등록을 추진하기 위한 고려인삼 산업화와 연계된 국제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또한 인삼 신소재·임상·재배실증 연구 기반을 확대하여 신기능성 효능 검증, 기능성 원료 표준화, 고정식 재배시설 실증 연구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4.3.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유통 기반 조성

- 종자 수매·저장시설 및 개갑장 설치, 묘삼 생산·유통시설 등을 일괄 보급시스템으로 만든 인삼종자 수매 및 개갑·묘삼생산시설 ONE-STOP 기반 구축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꾀할 수 있음. 또한 인삼농협의 종자 계약수매 및 보급체계 구축으로 종자의 불법유출을 차단할 수 있으며, ICT를 활용한 도난 및 야생동물피해 방지(CCTV, 경보음), 온·습도 및 관수 자동제어 등의 스마트팜 재배 도입을 위해 지역 및 농가별 현장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에 있음.
-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 및 재배이력시스템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유림사용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약사법 특례적용으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한 인삼검사소를 지원하고, 검사역량 강화 및 위생환경 개선 등을 위한 검사기기·시설·인력 등의 추가 확보를 계획 중에 있음.

#### 4.4. 수출·소비시장 및 6차 산업화 확대

- 각 수출국별 통관 애로사항 및 수입등록기준 등과 관련한 양국 간의 농업 통상회의 및 정부관계자 면담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등 비관세장벽 국가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자 함.
- 고려인삼 수출 교섭력 및 단일화를 통한 수출확대 및 신규 시장개척을 위해 2017년 신규로 추진 예정인 ‘수출용 원료삼 구매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중국 ‘신자원식품제도’상의 수입등록이 용이하도록 관련 기관·업체 간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지역별로 다른 행정절차와 반복적인 서류 요구 등으로 장시간 소요되는 절차를 해소·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직·간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현재 중국 정부 관계자, 학계, 바이어 등을 초청하여 양국 간의 인삼포럼을 개최하는 등 상호 이해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
- 현재 규정보다 과도한 샘플채취(관행상 규정보다 3배 이상)로 비용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지만 개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량만 채취하여 업계의 비용부담이 경감되도록 한·중 통상협력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을 모색하고 있음.
- 또한 주요 수출국별 소비성향·식문화 등에 대한 현지 선호도를 aT 해외지사 및 수출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하여 자료를 취합하고, (사)한국인삼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종합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중화권·동남아, EU, 미주지역 등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제품개발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4.5. 현장 애로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 경작신고 의무화를 통한 연근 보장, 안전성·품질 관리 강화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현행 4~5년근의 6년 근 둔갑유통 관행을 개선하고, 연근별 시장 차별화, 안전성 담보, 자조금 무임승차 차단 등을 도모하기 위해 4년근 이상 수삼 연근확인서 발급 등 연근 표시 의무화를 확대 도입하고자 함.
- 또한 국내외 소비 환경 변화, 인삼산업의 자율적 성장을 위해 검사 및 표시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되 불법유통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도입하고자 하며, 현행 습점·압착 캔포장을 날개 PET팩 포장으로 개선하여 판매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 제 3 장

### 국내 인삼산업 실태 분석과 과제

#### 1. 인삼 생산 및 경작 실태 분석

##### 1.1. 인삼 생산 및 경작 동향

- 2000년 이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0년 이후 신규경작지 확보 곤란,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가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호수 모두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음(표 3-1).
- 인삼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19,010ha에 이르렀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015년에는 14,213ha로 감소(1995년 제외)하였음. 신규식재면적은 2000년 4,216ha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5년에는 2,840ha 까지 감소함. 전체 인삼 재배면적이 감소한 요인으로는 2005년을 기점으로 한 신규 식재면적의 감소로 볼 수 있음. 이는 인삼산업 외연 성장 정체에 따른 소비수출 감소, 재배적지 확보의 어려움 등 인삼 재배여건의 악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인삼 생산량은 2010년 26,944톤을 정점으로 신규 식재면적 감소와 생산비 증가로 감소하였음. 인삼 생산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이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됨. 농가호수는 생산량과 마찬가지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0년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최근 감소하였음.

표 3-1. 인삼 생산 현황

단위: ha, 톤, 백만 원, 호

연도	재배면적		생산		농가호수
	전체	신규	생산량	생산액	
1970	3,041	1,215	1,877	-	-
1975	7,727	2,197	6,939	-	-
1980	6,839	2,716	4,768	-	25,017
1985	11,117	3,419	11,362	-	-
1990	12,184	3,664	13,889	197,849	36,404
1995	9,375	2,564	11,971	283,902	23,172
2000	12,445	4,216	13,664	372,752	23,011
2005	14,153	3,862	14,561	580,256	15,793
2010	19,010	3,372	26,944	938,540	23,857
2011	17,601	3,078	26,737	1,066,600	23,578
2012	16,174	3,125	26,057	1,083,111	23,795
2013	15,824	3,647	21,968	913,144	24,376
2014	14,652	2,844	20,978	845,260	22,986
2015	14,213	2,840	21,043	816,407	21,08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인삼 통계자료집』, 2016.

- 인삼의 재배형태별 재배면적은 <표 3-2>와 같으며, 신고포의 재배면적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지정포의 비중은 증가함을 볼 수 있음. 인삼 재배 형태는 계약재배 면적(지정포<sup>4</sup>)와 미계약재배 면적(신고포<sup>5</sup>)로 구성되며 재

4 지정포(전매제 당시 홍삼포로서 이하에서는 지정삼포라 한다)는 5년근 이상의 인삼 경작지로서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계약재배(전매제 당시 전매품)로 구매되는 수삼을 생산하는 포장

5 신고포(전매제 당시 백삼포로서 이하에서는 신고삼포라고 한다)는 4년근 이하의 인삼경작지로서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계약재배하지 않고 생산자가 자유롭게 재배하여 시

배면적은 총재배면적과 당해 연도 신규 식재면적으로 분류됨. 인삼 총 재배면적 중 지정포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 50%이상 차지하였으며 2012년 59.4%(9,604 ha)까지 증가하였음. 2015년 지정포와 신고포의 비중은 각각 55.2%, 44.8%로 지정포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신고포 보다는 많은 비중을 차지함. 계약재배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판로개척 부담이 큰 인삼 재배농가가 계약재배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계약재배 인삼은 엄격한 이력관리를 수반하기 때문에 향후 인삼 경쟁력 확보의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3-2. 인삼 재배형태별 재배면적 및 신규 식재면적 현황

단위: ha, %

연도	계		지정포		신고포	
	전체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신규
1970	3,041	1,215	812(26.7)	268(22)	2,229(73.3)	947(78)
1975	7,727	2,197	2,091(27.1)	550(25)	5,636(72.9)	1,647(75)
1980	6,839	2,716	2,354(34.4)	765(28)	4,485(65.6)	1,951(72)
1985	11,117	3,419	3,369(30.3)	817(24)	7,748(69.7)	2,602(76)
1990	12,184	3,664	3,229(26.5)	805(22)	8,955(73.5)	2,859(78)
1995	9,375	2,564	3,733(39.8)	890(35)	5,642(60.2)	1,674(65)
2000	12,445	4,216	2,634(21.2)	637(15)	9,811(78.8)	3,579(85)
2005	14,153	3,862	5,297(37.4)	1,448(37)	8,856(62.6)	2,414(63)
2010	19,010	3,372	9,268(48.8)	1,796(53)	9,742(51.2)	1,576(47)
2011	17,601	3,078	9,955(56.5)	1,810(59)	7,646(43.4)	1,268(41)
2012	16,174	3,125	9,604(59.4)	1,769(57)	6,570(40.6)	1,356(43)
2013	15,824	3,647	9,360(59.2)	1,837(50)	6,464(40.8)	1,810(50)
2014	14,652	2,844	8,409(57.4)	1,369(48)	6,243(42.6)	1,475(52)
2015	14,213	2,840	7,849(55.2)	1,132(40)	6,364(44.8)	1,70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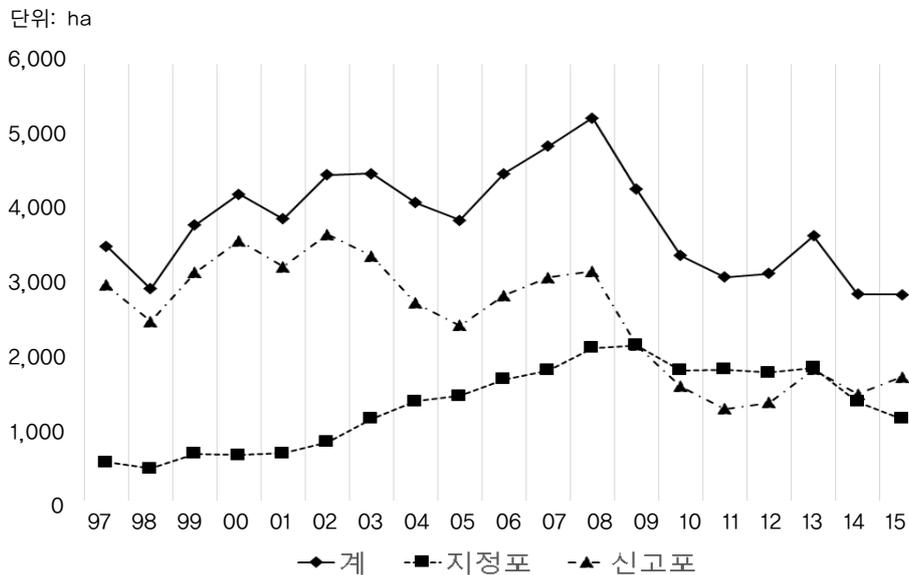
주: ( )는 전체 수확면적 중 재배형태별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인삼 통계자료집』, 2016.

장에 판매할 수 있는 포장

- 점차 지정포의 비중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신고포의 비중이 40%가 넘는 상황이며 4년근이 대부분인 신고포가 유통단계에서 불확실한 연근표시로 소비자의 신뢰문제 및 유통질서 확립을 방해 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부분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 총 신규식재면적은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신규 식재면적의 재배 형태별 비중을 보면 총 재배면적과 동일하게 2011년까지 신고포 비중은 감소하고 지정포 비중은 증가함(그림 3-1). 2011년 지정포와 신고포의 신규식재면적 비중은 각각 59%, 41%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였으며, 2015년 총 신규 식재면적의 40%는 지정포, 60%는 신고포로 신고포의 비중이 역전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 인삼 재배형태별 신규 식재면적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인삼 통계자료집』, 2016.

- 1990년 전체 인삼 생산량의 83.7%가 신고포에서 생산되었으나, 꾸준히 지정포 생산량이 증가하여 2015년 국내 생산된 인삼의 55.6%가 지정포에서

생산됨. 이는 전체 인삼 생산량 중 계약재배에 의한 수매량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시사하고 있음.

표 3-3. 인삼 재배형태별 생산량 추이

단위: ha, 톤, %

연도	계		지정포		신고포	
	수확면적	생산량	수확면적	생산량	수확면적	생산량
1990	3,863	13,889	490 (12.7)	2,270 (16.3)	3,373 (87.3)	11,619 (83.7)
1995	2,959	11,971	473 (16.0)	2,251 (18.8)	2,486 (84.0)	9,720 (81.2)
2000	2,872	13,664	521 (18.1)	2,725 (19.9)	2,351 (81.9)	10,939 (80.1)
2005	2,776	14,561	564 (20.3)	3,284 (22.6)	2,212 (79.7)	11,277 (77.4)
2010	4,516	26,944	1,443 (32.0)	8,673 (32.2)	3,073 (68.0)	18,271 (67.8)
2011	4,791	26,737	1,741 (36.3)	9,538 (35.7)	3,050 (63.7)	17,199 (64.3)
2012	4,689	26,057	2,166 (46.2)	12,229 (46.9)	2,523 (53.8)	13,828 (53.1)
2013	3,856	21,968	2,084 (54.0)	11,296 (51.4)	1,772 (46.0)	10,672 (48.6)
2014	3,422	20,978	1,751 (51.2)	10,835 (51.6)	1,671 (49.6)	10,143 (48.4)
2015	3,204	21,043	1,788 (55.8)	11,692 (55.6)	1,416 (44.2)	9,351 (44.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인삼 통계자료집』, 2016

○ <표 3-4>는 연근별 경작면적을 나타냄. 2015년 6년근 경작면적은 2,128ha로 전체면적의 14.9%를 차지하고 있음. 이중 지정포가 78.4%, 신고포가 21.6%를 차지하고 있음.

표 3-4. 연근별 경작 동향

단위 : ha

구 분		연근별					
		계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
1995	백삼포	5,642	1,674	1,797	1,984	159	34
	홍삼포	3,733	890	862	870	594	517
	계	9,375	2,564	2,653	2,854	753	551
2000	신고포	9,811	3,759	3,222	2,456	489	65
	지정포	2,634	637	590	461	478	468
	계	12,445	4,216	3,812	2,917	967	533
2005	신고포	8,856	2,414	2,804	2,643	726	269
	지정포	5,297	1,448	1,361	1,063	850	575
	계	14,153	3,862	4,165	3,706	1,576	844
2010	신고포	9,742	1,576	2,347	3,526	1,674	619
	지정포	9,268	1,796	2,118	2,096	1,741	1,517
	계	19,010	3,372	4,465	5,622	3,415	2,136
2011	신고포	7,646	1,268	1,534	2,329	1,770	745
	지정포	9,955	1,810	1,880	2,232	2,243	1,790
	계	17,601	3,078	3,414	4,561	4,013	2,535
2012	신고포	6,570	1,356	1,328	1,556	1,301	1,029
	지정포	9,604	1,769	1,762	1,860	2,115	2,098
	계	16,174	3,125	3,090	3,416	3,416	3,127
2013	신고포	6,464	1,810	1,450	1,426	955	823
	지정포	9,360	1,837	1,806	1,884	1,801	2,032
	계	15,824	3,647	3,256	3,310	2,756	2,855
2014	신고포	6,243	1,475	1,869	1,361	973	565
	지정포	8,409	1,369	1,836	1,749	1,768	1,687
	계	14,652	2,844	3,705	3,110	2,741	2,252
2015	신고포	6,364	1,708	1,504	1,876	817	459
	지정포	7,849	1,132	1,427	1,896	1,725	1,669
	계	14,213	2,840	2,931	3,772	2,542	2,12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인삼 통계자료집』, 2016

- 2015년 시도별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금산 등 주요 인삼재배지로 알려진 충남이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표 3-5). 그 뒤로 재배면적은 충북, 전북, 경기, 강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량은 충북, 경기, 강원, 전북 순으로 나타남. 6년근 생산 재배면적은 전체 면적의 66.7%,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67.9%를 차지함.

표 3-5. 2015년 시·도별 생산량 현황

단위: ha, 톤

시도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		합계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합계	15	83	528	3,175	522	3,476	2,138	14,309	3,203	21,043
인천	0	0	0	0	5	23	23	128	28	151
광주	0	0	0	0	0	0	1	10	1	10
대전	0	0	3	23	0	0	0	0	3	23
세종	0	0	11	71	6	41	6	39	23	151
경기	0	0	3	14	16	111	529	3,415	548	3,540
강원	0	0	1	5	8	50	499	3,176	508	3,231
충북	2	8	105	564	172	1,141	281	2,192	560	3,905
충남	13	75	181	1,326	165	1,226	241	1,671	600	4,298
전북	0	0	219	1,151	138	811	201	1,195	558	3,157
전남	0	0	0	0	1	5	136	796	137	801
경북	0	0	3	18	9	58	217	1,642	229	1,718
경남	0	0	2	3	2	10	4	45	8	58

주: 서울, 부산, 대구, 울산의 경우 생산량이 없어 제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인삼 통계자료집』, 2016

- 수삼의 수매실적 현황은 다음의 <표 3-6>과 같음. 1990년대 이후 수삼의 수매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음. 1990년 13.2%였던 수매비율이 2010년 37.2%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50%를 넘어섰음.

표 3-6. 연도별 수삼 수매실적

단위: 톤, %

년도	생산량	수매	
		수매량	비율
1990	13,889	1,837	13.2
1995	11,971	2,039	17.0
2000	13,664	2,118	15.5
2005	14,561	3,121	21.4
2010	26,944	10,025	37.2
2011	26,737	10,080	37.7
2012	26,057	12,415	47.6
2013	21,968	11,296	43.4
2014	20,978	10,501	50.1
2015	21,043	11,692	55.6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연보』, 각 연도별

## 1.2. 인삼 경작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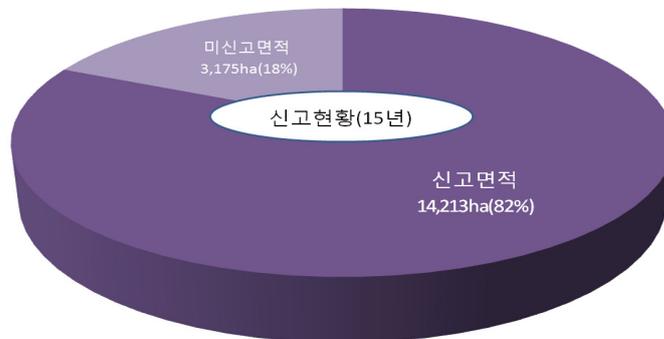
- 농업경영체 등록 DB 기준으로 2015년 인삼재배 경영체의 재배면적은 <표 3-7>과 같이 17,388ha로 나타남.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인삼 통계자료집 자료의 재배면적은 14,213ha로 두 자료 간 재배면적 차이가 3,175ha로 나타나 경영체에서 등록한 면적과 기존 통계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3,175ha만큼이 2015년 미신고면적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3-7. 경영형태별 인삼 재배 경영체 및 재배면적, 2015

시·도	농업 경영체 등록수 (호)	재배면적 (ha)	경영형태별 재배면적			
			자경(공유포함)		임차	
			농업경영체 등록수(호)	재배면적 (ha)	농업경영체 등록수(호)	재배면적 (ha)
합계	16,982	17,388	9,953	4,634	10,104	12,754
서울	4	0	2	0	2	0
부산	4	1	4	1	-	-
대구	5	4	3	0	2	4
인천	357	164	233	72	157	92
광주	6	6	1	0	5	6
대전	103	45	51	14	55	31
울산	6	0	5	0	1	0
세종	217	136	138	47	99	89
경기	1,932	2,163	1,226	613	971	1,550
강원	1,460	2,768	850	536	991	2,232
충북	3,082	2,915	1,703	710	1,928	2,205
충남	4,589	2,984	3,031	1,140	2,423	1,843
전북	3,499	3,134	1,871	831	2,338	2,304
전남	462	1,189	175	197	351	992
경북	998	1,620	523	360	638	1,260
경남	254	250	135	106	141	144
제주	4	9	2	5	2	4

주: 경영형태별 경영체수 합과 농업경영체 등록 수는 같지 않음.(중복 집계 존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15년 기준)

그림 3-2. 2015년 미신고면적 추정 비율



○ 2016년의 경우에도 농업경영체 DB 기준 인삼 재배면적은 총 19,174ha이나,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재배면적은 14,856ha로 추정되어 두 수치 간에 약 4,320ha 만큼의 차이가 발생함. 따라서 4,320ha만큼이 2016년 미신고면적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표 3-8). 2015년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최근 들어와 미신고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

표 3-8. 경영형태별 인삼 재배 경영체 및 재배면적, 2016

시·도	농업 경영체 등록수 (호)	재배면적 (ha)	경영형태별 재배면적			
			자경(공유포함)		임차	
			농업경영체 등록수(호)	재배면적 (ha)	농업경영체 등록수(호)	재배면적 (ha)
합계	19,180	19,174	11,299	5,112	11,306	14,062
서울	3	0	2	0	1	0
부산	4	1	4	1	0	0
대구	7	0	5	0	2	0
인천	492	246	334	126	206	120
광주	9	6	4	0	5	5
대전	123	48	62	16	64	32
울산	6	1	5	1	1	0
세종	252	147	160	58	113	89
경기	2,100	2,324	1,319	663	1,078	1,661
강원	1,519	3,125	867	566	1,063	2,559
충북	3,707	3,418	2,083	896	2,294	2,522
충남	5,070	3,193	3,416	1,262	2,590	1,931
전북	3,882	3,479	2,068	902	2,579	2,577
전남	487	1,055	177	166	374	889
경북	1,228	1,871	635	338	778	1,533
경남	286	251	155	112	156	139
제주	5	10	3	6	2	4

주: 경영형태별 경영체수 합과 농업경영체 등록 수는 같지 않음.(중복 집계 존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16년 기준)

### 1.3. 인삼 경작 관련 제도 및 과제

#### 1.3.1. 표준인삼경작방법

- 표준인삼경작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준비기이며, 그 중에서도 예정지 선정과, 예정지 관리가 안전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음. 예정지 선정의 경우 선정요건은 크게 형태적,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음. 형태적 또는 물리적 특성은 인삼 생육상태 및 수량성의 양부에 따라 최적조건, 적지조건, 가능조건, 부적조건으로 구분 할 수 있음. 토양 화학성은 검정치의 범위에 따라 적합, 부족, 허용범위 및 과다로 구분되며 허용범위 까지는 안정적으로 인삼을 생산 할 수 있음. 따라서 토양 형태·물리적 특성이 부적조건이거나 화학성분이 부족·과다 시에는 예정지를 다시 선정하거나 토양개량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예정지 선정이 끝나면 보통 1년간 예정지를 관리하는 예정지 관리 단계로 넘어감. 권장 기간은 1~2년 정도이나, 보통 1년간 예정지 관리를 하고 있음. 그러나 다비성작물 재배지나 개간한 척박지 등 토양 조건이 다소 미흡한 포장은 2년간 관리를 하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판단됨.
- 예정지 관리 단계 중에서도 검정용 토양시료 채취 및 검정에 대한 부분은 안전성과 직결된 부분이므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음. 먼저 예정지 시료 채취 시기는 전작물 수확 직후 채취해야 하며, 검정결과에 따라 예정지 관리 후 다시 채취하여 검정해야 함. 채취한 시료는 깨끗한 비닐이나 종이위에 골고루 펴서 그늘에서 서서히 건조시켜야 함. 채취한 시료에 대한 검정은 농업기술센터 및 토양검정기관(도 농업기술원, GAP인증기관)등에 의뢰를 해야 하며, 검정 분석 결과는 반드시 보관해야 함.

- 광산 인근지역, 생활하수 유입지역, 공사장 주변 토사, 공장폐수 유입 우려 지역 및 환경 오염지 또는 우려지역의 경우에는 인삼 재배에 부적합하므로 예정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제외시킴. 또한 대단위로 인삼을 재배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토양 중금속 오염도 검정과 수질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가로 분석할 수 있음.

### 1.3.2.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 GAP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생산 및 취급과정에서의 위해요소 차단 규범을 의미하는 것임.
- GAP은 환경에 대한 위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축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의 화학제·중금속·미생물에 대한 관리 및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음. GAP의 핵심사항은 농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의 관리체계임.
- 농촌 진흥청 GAP 관련 설명서에 따르면, 인증의 필수 요건으로 GAP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의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맞게 생산·관리되어야 함. 또한 안전성 문제 발생 시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과정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회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 등록이 되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 일반농산물에 대한 GAP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인삼과 약용작물 중 일부의 경우 3년으로 지정되어 있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에 의해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수확 후

관리를 한 것,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등록기준을 준수 한 것 등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함. GAP를 단지 농축산물만이 아닌 약용작물에 적용한 사례는 유럽,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sup>6</sup>.

- 인삼의 경우 GAP 인증 유효기간이 3년이기는 하지만 인삼의 특성상 4~6년의 긴 생육기간으로 인해 3년마다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음. 보통 예정지 관리시기에 인증을 받으면 3년 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4~6년간의 경작 기간 동안 두 번의 GAP 인증을 받게 됨. 이에 따라 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농가에 전해지는 상황임.
- 또한 인삼의 GAP 인증기관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인삼과 관련 없는 기관에서도 인증을 진행하다보니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삼 비전문가가 인삼 GAP 인증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또한 발생하고 있음.
- 최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GAP제도 외에도 식품 안전성 관리가 도입된 여러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 특히 농산물과 관련하여 GAP와 친환경 농산물 간의 비교는 다음의 <표 3-9>와 같음.

<sup>6</sup> 유럽의 경우, 약용작물 생산자협회(EUROPAM)에서 약용 및 향신작물 GAP를 처음으로 운용하고 있음. 유럽연합 기구(EMEA)는 EUROPAM의 GAP를 기초로 하여 별도의 GAP를 만들어 발표하기도 하였음. 국립독성연구원 형질전환식물유래의약품 자료집(2006)에 따르면, 중국의 한약재 GAP는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SFDA)이 1998년 1차 검토를 시작하여 2002년 국령으로 공포하였음. GAP 제도의 시행은 SFDA가 시설과 자격을 갖춘 회사에 GAP 실시권을 부여하고, 회사가 직접 생산하거나 농가와 계약재배를 하는 방식임. GAP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설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품목별로 인증을 받아 해당 품목의 재배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승인 받아야 함. 이 외에 일본의 경우엔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생약부 및 산하 약용식품재배시험장 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약용작물 표준재배기술 지침서를 작성하였으며 약용작물 GAP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 미국과 캐나다는 각 년 2억불, 1억불 이상의 화기삼을 아시아 시장에 수출하는 국가로서 약용작물 GAP 제정을 시도하고 있음.

표 3-9. GAP·친환경농산물과의 비교

구분	GAP		친환경농산물	
근거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법	
도입시기	2006년		2001년	
핵심가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환경적가치	
법률상 정의	친환경농어업(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통하여 얻은 것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	
대상품목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 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 제외)		모든 농산물 가능(농가 또는 작목반 인증)	
규격	표준 규격의 특·상·보통		규격제한 없음	
인증구분	단일 인증		농산물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기타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유효기간	2년(인삼 등 일부 3년)		1년	
인증현황 (2015년)	농가수	53,583호	85,165호	
	면적	65,410ha	100,046ha	
	생산량	1,068,167톤	825,482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GAP 제도 확산을 위한 인증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16

### 1.3.3. 안전성 검사

-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국내산 수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안전관리가 취약한 비 계약 농가와 부적합 발생 우려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협, 한국인삼공사 계약재배 농가가 포함되어 있음. 계약재배 농가 중 농약 검출 등으로 계약 해지된 농가에 대한 내역을 농협, 한국인삼공사 등에서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가를 생산 단계 조사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조사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은 189성분 이상의 농약이며 조사 물량은 면적, 부적합률, 계약재배 등의 근거로 배정한 1,000건 정도임. 그동안 실시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부적합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함.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최근 3년을 기준으로 2014년 39건, 2015년 24건, 2016년 19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함. 그러나 여전히 잔류농약 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3년 평균 2.4%정도로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2015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재배 중인 수삼을 대상으로 실시한 969건의 안전성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작 신고농가의 부적합률은 1.3%(9건 부적합/692건 조사)인데 반해, 경작 미신고농가의 부적합률은 5.7%(15건 부적합/277건 조사)로 나타나 경작 미신고농가의 안전의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단될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라 조치하며, 등록 폐지된 부정농약 사용 및 인삼에 안전사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 키토젠, BHC 등 등록 폐지된 부정농약 검출 시 농진청 등에 내역을 통보함.

- 한국인삼공사에서는 경작 단계별 안전성관리 및 정부기준 대비 강화된 안전성기준 적용으로 안전성을 보증하고 있음. 생산단계별 경작관리 및 생육기간 중 최대 6회의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계약농가 안전성 교육 및 청정삼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총 12회에 걸쳐 연구원합동 농한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농한기 교육에는 총 1,198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5~8월에는 지역순회 현장 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또한 경작기술 지원센터를 상시운영하고 인삼 재배 사례 도감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음.

## 2. 인삼 유통 실태 분석

### 2.1. 수삼 유통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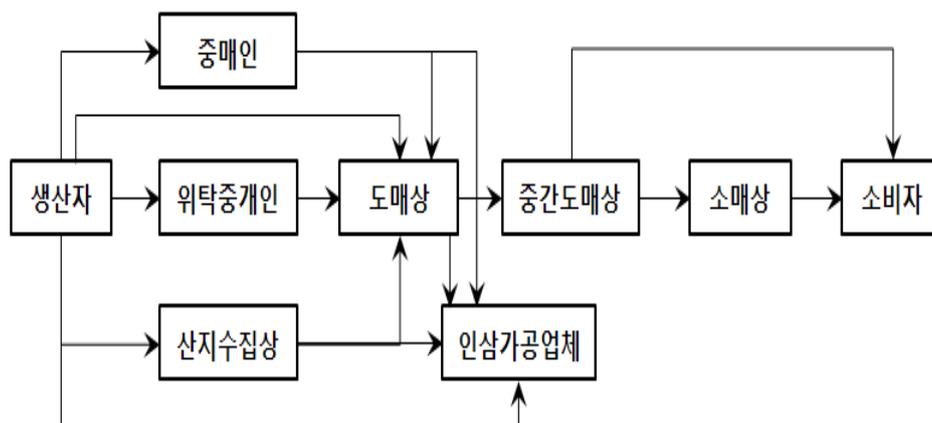
#### 2.1.1. 산지 수삼 유통체계

- 계약재배(지정포) 인삼의 판매형태는 계약서 상 등급별 가격수준, 계약수량 등이 사전 결정되기 때문에 농가의 판로는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현재 계약재배의 수매등급은 5등급으로 등급 간 가격차이가 크지만, 실제 등급별 수매량 비중은 고가품인 1등급과 2등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3등급과 등외품 중심으로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비해 미계약 재배(신고포) 인삼은 개별생산자가 수확 후 대부분 주산지의 농협판매장, 수삼 집산지인 금산지역의 도소매시장을 통하여 시장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직거래 형태(농가-소비자, 농가-가공업자 등)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금산 지역에는 3개

소의 수삼도매시장에서 전국 미계약 재배 수삼의 60% 정도가 반입되어 도소매 형태로 거래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수삼의 거래물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미계약 재배 수삼의 유통경로는 크게 ① 생산자가 위탁중개인을 통하여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경로, ② 산지수집상이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경로로 구분되며, 그 외 ③ 생산자가 직접 도매상(도매시장)에 판매하는 경로, ④ 생산자-가공업체 경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위탁중개상의 경우 재배농가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도매시장에 출하하거나, 직접 수확하는 년도에 포전거래 형태의 매취를 통하여 소유권을 확보하는 상인으로 대부분의 위탁중개상은 도매시장 내 도매상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산지수집상 경로는 개별 수집상이 수확 시기에 농가로부터 물량을 매취·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중간상인으로 취급물량은 위탁중개상보다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그림 3-3. 미계약 재배 수삼의 주요 유통경로



자료: 전창곤, 김동훈, 이은혜, 『금산인삼약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연구』, 2012.

- 전국 인삼 재배농가에 대한 조사결과 미계약 재배 수삼의 판매처는 계약재배 납품처(인삼농협, 한국인삼공사)를 제외하면 금산 지역 3개 인삼도매시장이 17.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일반 소비자 직접 판매(8.5%), 산지수집상(7.0%), 금산 지역 외 인삼시장(2.8%), 인삼제품가공업자(2.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10. 인삼 조사농가의 수삼 판매처별 비중

단위: %

금산지역 도매시장	금산 이외 도매시장	산지 수집상	인삼제품 가공업자	계약재배처 납품	일반소비자 직접 판매	기타	계
17.1	2.8	7.0	2.4	60.4	8.5	1.8	100

자료: 전창곤, 김동훈, 이은혜, 『금산인삼약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연구』, 2012.

## 2.1.2. 수삼 도매유통 현황

- 국내 미계약 재배 수삼 도매거래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수삼도매시장은 금산 인삼약령시장 내 생산자조합이 운영하는 농협수삼랜드, 민간인이 개설한 금산수삼센터, 금산수삼시장 등 3개소가 대표적임.
- 현재 금산 인삼약령시장 외 수삼의 도매거래 기능이 이루어지는 공영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은 없으며, 이들 3개소의 도매시장은 전국 미계약 재배 인삼(수삼)의 최대 집산지로서 국내 수삼 도매유통의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금산 수삼도매시장은 국내 최대 규모로 수삼 도매거래의 집중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표 3-11. 금산 수삼도매시장 현황

단위: m<sup>2</sup>, 개소

구 분	개설일	대지면적	매장면적	점포 수
금산수삼센터	1988. 09. 05	7,719	3,927	229
농협수삼랜드	2008. 08. 26	2,641	1,374	78
금산수삼시장	2011. 09. 01	3,722	4,595	162

자료: 금산시장 현지조사

- 미계약 재배 수삼의 기준 도매가격은 금산 인삼약령시장 내에 있는 3개소의 도매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일반적인 기준가격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수삼 도매가격 형성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금산지역 3개의 도매시장이 전국 수삼도매가격의 기준가격을 형성시키는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삼의 도매가격 결정은 대부분 출하자(개별수집상, 위탁중개인, 생산자)와 도매상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의매매 방식이며, 경매방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수삼 도매시장의 주요 구매자는 대부분 수삼도매시장 내 중간도매와 소매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중간상인과 소규모가공업체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삼의 도매거래는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1월초까지 전국 미계약 재배 수삼의 40% 정도는 금산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나머지 60% 정도는 전국 주산지 농협판매장에서 도·소매로 거래되거나 직거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중간상인·도매상 등의 저장물량으로 연중 거래되고 있음.
- 금산 지역 3개소 수삼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의 분산은 도매시장 내 소매상이나 인삼약령시장의 소매상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약 70%는 금산 지역 외 전

국으로 반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금산 지역 수삼유통은 추석 전에는 수삼 중심(수삼 70%, 제품용 30%)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추석 이후 11월 초까지는 주로 제품용(가공 등) 비중(60%)이 수삼용 비중(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삼의 가격형성은 일반 농산물과는 달리 모양, 크기, 산지, 토양, 색깔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금산 수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삼 등급 수는 약 40개 정도로 등급 수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 상인들조차 등급별 상품을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들의 경우 거의 구분할 수도 없는 실정임. 수삼의 등급 수가 매우 많고 등급별 명확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등급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삼가격은 상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등급별 판매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임.
- 구매자의 경우 구매 시 가격결정의 객관적 기준과 관련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적정가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실정임. 수삼의 수많은 등급과 표준규격화의 어려움은 수삼거래가 경매가 아닌 수의매매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수삼의 등급 간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등급별 기준가격이 제시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수삼거래에서 거래교섭력이 거의 0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같은 현상은 재배농가도 마찬가지인데, 농가가 수삼을 수의매매로 판매할 경우 적정 판매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재배농가 역시 수삼거래에서는 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교섭력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12. 수삼 도매거래 시 일반적 거래등급 실태

구분	거래등급 종류	거래등급 수
원삼	별대(2), 왕왕왕대(3), 왕왕대(4), 왕대(5), 특대(7), 대(9), 중(11), 소(13), 믹서(17), 대삼계(30), 중삼계(40), 소삼계(60), 잔삼계(100), 짬잔이(150), 실실이(200)	15
난발삼	왕왕왕대난(3), 왕왕대난(4), 왕대난(5), 특대난(7), 대난(9), 중난(11), 소난(13), 잔난, 콩난	9
황삼	황왕왕왕대(3), 황왕왕대(4), 황왕대(5), 황특대(7), 황대(9), 황중(11), 황소(13), 황믹서(17), 황대삼계(30), 황중삼계(40)	10
기타	파삼, 대동가리, 중동가리, 소동가리, 대절삼, 중절삼, 소절삼	7
계		41

주: ( )내는 1채(750g)당 뿌리 수를 나타냄.  
 자료: 금산지역 상인에 대한 현지조사자료

- 수삼의 소매기능은 금산지역의 경우 주로 수삼도매시장 내 중간도매와 소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전국의 약령시장 내 소매상이나 주산지 시장의 상인에 의해 소매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음. 수확철인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는 전국적으로 수삼의 소매거래가 이루어지지만, 비수확기의 소매거래 물량은 주로 금산 지역 도매상이나 주산지 수집상의 저장물량으로 공급되고 있음.

### 2.1.3. 수삼 검사

- 수삼에 대한 검사는 인삼류(홍삼, 백삼, 태극삼, 흑삼 등)나 인삼제품(농축인삼류, 인삼분말류, 농축홍삼류, 홍삼분말류, 당침인삼 등)이 아닌 수확 후 원형삼 형태로 유통되는 수삼의 경우 특별한 검사 규정은 없음. 다만, 인삼경작자가 5년근 이상의 수삼을 수확할 경우 조합에 연근 확인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연근확인 신청도 의무사항은 아니며 원할 경우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연근확인만 신청할 수 있음.

- 수삼 연근검사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79종) 및 중금속 기준(2종) 등 수삼의 안전성 기준은 있으나, 의무적인 안전성 검사 규정은 없음.
- 수삼 수확입회 2015년 연근 검사 실적은 수확량 기준으로는 5년근 1,621.9톤, 6년근 15,063.5톤으로 2015년 생산량 21,043톤의 71.6% 수준임. 2015년 수삼의 수확 검사 실적은 총 5년근 204.5ha, 6년근 1,899.1ha이며, 6년근 중 1,253.9ha는 한국인삼공사 검사실적임. 수확검사 면적은 2015년 총 수확면적 3,204.0ha의 65.3% 수준임.

## 2.2.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 유통실태

### 2.2.1. 수삼의 이용형태

- 2015년 인삼(원형 수삼)의 이용 형태별 비중을 보면 전체 인삼 생산량 중 수삼용과 가공용이 각각 34.3%와 65.7%로 가공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수삼의 가공용 이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 가공용 수삼의 이용형태를 보면 전체 가공용 65.7% 중 인삼류별 수삼의 이용 비중은 홍삼용이 62.8%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 백삼용과 태극삼용은 각각 2.7%와 0.2% 수준임.
- 전체적으로 수삼의 용도별 이용 비중은 수삼용은 감소추세, 가공용은 증가추세이며, 가공용의 경우 홍삼 또는 홍삼제품류의 사용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이 같은 현상은 1996년 홍삼전매제가 폐지되면서 홍삼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고 홍삼가격의 인하로 홍삼시장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그러나 홍삼 전매제의 폐지가 홍삼 가공제품의 다양화와 홍삼시장의 경쟁구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인삼가공업체 수가 급증하여 홍삼산업의 영세성과 홍삼제품 유통질서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음.

표 3-13. 인삼의 용도별 이용 비중

단위: 톤

구 분	2005		2012		2015		비고(%)
	이용량	비중	이용량	비중	이용량	비중	
수삼용	7,400	50.0	13,289	51.0	7,225	34.3	전량 내수
홍삼용	3,404	23.0	11,596	44.5	13,209	62.8	수출 15.6, 내수 84.4
태극삼용	296	2.0	104	0.4	37	0.2	수출 24.3, 내수 75.7
백삼용	3,700	25.1	1,068	4.1	572	2.7	수출 2.9, 내수 97.1
합 계	14,800	100.0	26,057	100.0	21,043	100.0	수출 9.9, 내수 90.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인삼 통계자료집』, 각 년도.

-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 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2015년 현재 전국의 인삼류 가공업체는 660개소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삼제품류 제조업체는 672개소가 있음.
- 인삼류 제조업체의 경우 백삼업체가 257개소로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태극삼·백삼 13.9%(92개소), 홍삼·백삼 12.1%(80개소), 홍삼 12.0%(79개소), 홍삼·백삼·태극삼 11.5%(76개소), 홍삼·백삼·태극삼·흑삼 4.5%(30개소)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인삼류 가공업체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금산을 중심으로 충청남지역에 전체의 78.8%(520개소)가 분포되어 있음.
- 인삼제품류 제조업체의 경우 충남에 입지한 업체 수는 309개소로 전체의 46.0%이며, 다음으로 전북 126개소(18.8%), 경기 50개소(7.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14. 인삼류 제조업체의 지역별 입지 현황

단위: 개, %

지역	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	홍삼 백삼 태극삼	홍삼 백삼 태극삼 흑삼	홍삼 백삼	백삼 태극삼	홍삼 백삼 흑삼	기 타	계
충남	22 (27.8)	2 (100.0)	252 (98.1)	-	38 (50.0)	26 (86.7)	63 (78.8)	90 (97.8)	18 (100.0)	9 (39.1)	520 (78.8)
전북	17	-	-	-	16	1	4	2	-	2	42
경북	9	-	2	-	9	1	12	-	-	10	43
기타	31	-	3	3	13	2	1	-	-	2	55
계	79 (100.0)	2 (100.0)	257 (100.0)	3 (100.0)	76 (100.0)	30 (100.0)	80 (100.0)	92 (100.0)	18 (100.0)	23 (100.0)	6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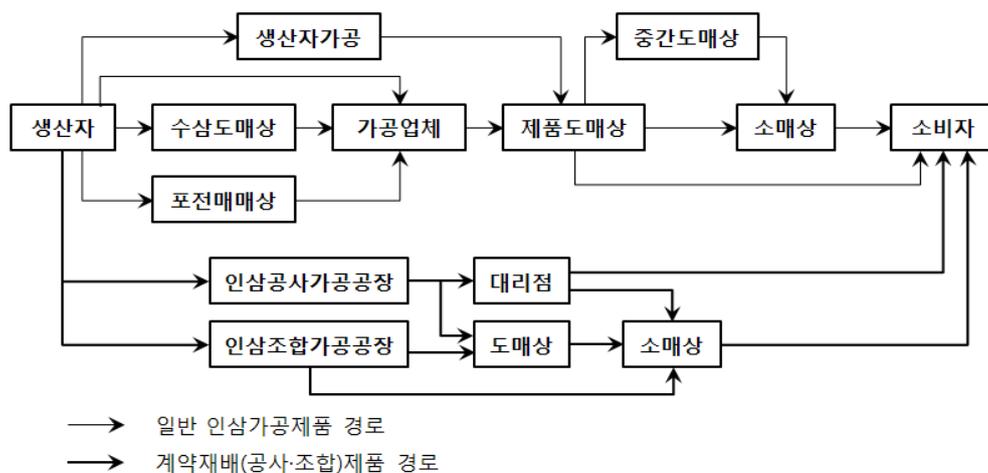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인삼 통계자료집』, 2016.

## 2.2.2.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 제조업체의 유통체계 현황

- 금산지역 100개소의 인삼류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업체의 약 78%가 개별 생산농가나 비법인 영세 가공업체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체 종사자 수가 4인 이하인 제조업체 수의 비중이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음(전창곤 외, 2012).
- 2015년 현재 약 660여개소의 인삼 가공업체 중 개별 생산농가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가내 수공업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수가 전체 가공업체의 52%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전창곤 외, 2012).
- 인삼 재배농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생산자가 인삼을 수확하여 수삼 형태로 계약물량을 납품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직접 가공하는 물량 비중은 전체 수삼판매 비중의 5.4%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인삼공사와 일부 인삼농협 및 민간 가공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자체적인 판매망 조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 가동률이 낮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음.

- 인삼가공제품(인삼류와 인삼제품류)의 유통체계는 수삼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유통경로와 많은 경로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인삼제품의 유통경로는 크게 한국인삼공사와 인삼조합의 계약재배 제품의 유통경로와 생산자 및 일반 민간업체의 제품경로로 구분되고 있음.
- 홍삼제품 중심의 한국인삼공사 제품의 유통경로는 주로 직영점과 대리점 경로가 주류 경로이며, 그 외 백화점, 대형마트 내 입점을 통한 경로 등이 있으며, 그리고 인삼조합 제품의 유통경로는 일부 직영점과 대리점 경로와 함께 전국의 농협유통이 운영하는 대형마트(하나로마트 등) 경로가 중심경로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비해 민간 영세업체나 농가 제품의 경우 자체 직영점이나 대리점 경로는 거의 구축되어 있지 못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오픈마켓에 입점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영세업체 제품의 주 유통경로는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경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영세업체의 일반적인 유통경로는 6~8단계로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3-4. 인삼 가공제품의 주요 유통경로



자료: 전창곤, 김동훈, 이은혜, 『금산인삼약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연구』, 2012.

- 인삼 생산자가 수삼을 직접 가공한 경우 판매처는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비중이 68.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인삼제품 가공업자의 주문생산·납품 12.0%, 인삼시장 상인 5.5%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공제품 생산량은 전체 수삼생산량의 5.4%로 영세한 수준이지만, 가공제품의 판매방식 역시 공동판매가 아니고 개별판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 개별 생산자 중심의 판매는 생산자별 가공제품도 다를 뿐만 아니라 동일 제품이라도 레시피나 가공시설이나 설비가 달라 제품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영세 업체들의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2.3. 인삼제품의 제조·검사 및 사후관리

-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 제조업의 신고는 제조장 소재 시장·군수에 신고해야 하며, 일정 시설을 구비해야 됨. 경작자가 자가 생산 수삼을 원료로 자가 제조한 인삼류를 도매·수출 목적의 수집업자에게 판매할 경우 신고가 불필요함. 인삼류 제조업자가 인삼제품류 제조·가공 시에는 제조제품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제조업의 시설기준은 건물, 기계·기구, 품질관리기구별로 공통사항(작업실, 세척실, 관리실, 창고시설, 건조실, 검사실 등), 제품별 기준(증삼실, 열탕실 등)으로 구분됨. 인삼류는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고, 해당 제품에 연근 및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제조기준을 준수해야 됨.
- 인삼류 검사의 경우 인삼류의 판매·수출 목적의 제조업자, 수출·도매 목적의 수집업자, 판매목적의 수입업자는 자체검사 또는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단, 자가제조자와 제조자·수집자가 인삼류에 일정 기준의 표시(원산지, 무게, 제조자와 판매자의 이름) 후 인삼제품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

- 자체검사업체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장으로부터 인삼 종류별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아야 됨. 자체검사업체는 수삼을 원료로 자신이 직접 제조한 인삼류에 대해 자체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출용인 경우 타인 제조 인삼류에 대해 자가 상표를 붙이고 자체검사를 할 수 있음.
- 2015년 말 현재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주)한국인삼공사 외 32개 업체가 있으며, 업체별 종업원 수는 업체당 평균 32명 정도이며 업체당 종업원 분포는 2~635명으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인삼류 연간생산량은 업체당 평균 103톤이며 업체당 생산량 분포는 1~2,256톤으로 매우 큰 차이가 나고 있음.
- 인삼류 검사실적은 2010년 전체 1,360톤(이중 764톤 자체검사)를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2015년 실적은 782톤이며, 이 중 30개 업체의 자체검사실적은 489톤으로 전체 검사실적의 62.5%를 차지하고 있음. 업체별 자체검사실적은 0.1~189톤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음.
- 검사의 종류에는 검사는 연근검사, 품질검사, 포장검사, 표시검사로 구분되며, 검사 합격품에 대해서는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 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해야 됨(수출품은 제외). 검사기준, 방법 및 품질보증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2015년 인삼류 품질검사 실적은 5회(표본수거 4회, 현장 1회)에 걸쳐 260점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실시 결과 기준미달 비율은 9.2%(24점)으로 나타났으며, 조치 결과는 대부분 주의(시정) 등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검사는 일반검사와 개별검사로 이루어지고 있음. 일반검사 항목은 수분, 벤조피렌(흑삼), 중금속, 회분, 잔류농약허용기준, 이물, 보존료·인공색소·표백제, 세균수, 대장균군, 내용량·표시량, 인삼성분, 묽은 에탄올추출물 함량, 진세노사이드함량(흑삼제외) 등이 포함됨.
- 개별검사 중 연근검사 항목은 4년근 이상 판별(홍삼, 태극삼, 흑삼), 2년근 이상 판별(백삼)이며, 기준은 머리, 몸통 및 표피형태, 다리부분 발달정도, 절단시 나이트 등이 포함됨.
- 개별검사의 품질검사 항목은 홍삼(직삼, 원형삼, 기타), 태극삼(직삼, 원형삼 기타), 백삼(본삼류, 백미삼류, 기타, 잡삼류), 흑삼(직삼원형삼, 기타, 흑미삼류) 등 제품 종류에 따라 직경, 길이, 균열, 내공·내벽, 수분, 이형심 혼입률, 피해삼 등을 검사함.
- 개별검사 중 포장검사는 포장의 흡습도나 충격도, 품질관리 영향도, 단위포장의 재포장 불가 봉합도, 포장내용의 충만도, 제품 종류별 지별 도는 편급별 구분 등이며, 제품별·편급별 뿌리 수 등이 포함됨.
- 개별검사의 표시검사는 품목, 원료삼의 생산년도, 원산지, 연근, 등급, 중량, 뿌리수, 크기, 제조자 정보, 지리적표시, 품질보증기간, 검사연월일, 검사자 기재 여부, 허위 또는 소비자 기만여부 표기, 중량 이상여부, 표시사항 위조 또는 변조 여부 등이 포함됨. 검사방법은 전수 또는 추출한 표본에 대하여 관능검사 또는 검사기기에 의한 검사를 함.

표 3-15. 인삼류의 검사종류별 주요 검사 항목과 내용

구분	주요 내용(검사 항목)	
일반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분, 벤조피렌(흑삼), 중금속, 회분, 잔류농약허용기준, 이물, 보존료·인공색소·표백제, 세균수, 대장균군, 내용량·표시량, 인삼성분, 묽은 에탄올추출물 함량, 진세노사이드함량(흑삼제외)</li> </ul>	
개별 검사	연근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년근 이상 판별(홍삼, 태극삼, 흑삼), 2년근 이상 판별(백삼)</li> <li>기준은 머리, 몸통 및 표피형태, 다리부분 발달정도, 나이테 등</li> </ul>
	품질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삼류(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의 제품종류별(직삼, 원형삼, 기타, 잡삼류 등으로 구분)</li> <li>검사항목은 제품종류별 직경, 길이, 균열, 내공·내벽, 수분, 이형삼 혼입율, 피해삼 등</li> </ul>
	포장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흡습도나 충격도, 품질관리 보호도, 단위포장의 재포장 불가 봉합도, 포장내용의 충만도, 제품종류별 지별 또는 편급별 구분 등</li> <li>제품별·편급별 뿌리수 등</li> </ul>
	표시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과 원료삼의 생산년도, 원산지, 연근, 등급, 중량, 뿌리수, 크기, 제조자 정보, 지리적표시, 품질보증기간, 검사연월일, 검사자 등</li> <li>허위 또는 소비자 기만여부 표기, 중량 이상여부, 표시사항 위조 또는 변조여부 등</li> </ul>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인삼산업법령집』, 2016.

- 검사 사후관리는 필요 시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가 가능하며, 재검사 결과 검사기준 미충족 시 해당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할 수 있으며(국립농산물검사기관장), 따르지 않을 경우 제품의 압류가 가능함.
- 유통 중이거나 판매목적의 보관·진열 중인 검사 합격품을 수거하여 확인검사가 가능함. 판매자는 연근표시를 제거해서 판매하거나 보관·진열할 수 없으며, 미검사품이나 불합격 제품은 해당 제품의 압류나 제품 검사를 명할 수 있음.
- 2015년 인삼류 미검사품 단속은 총 7,029kg으로 전체 인삼류 생산량의 0.03%에 불과하나, 2010년(24.335kg)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제품별 미검사품은 백삼 59.5%(4,182kg), 홍삼 40.5%(2,846kg)를 차지함.

### 3. 국내 인삼산업의 문제점과 과제

#### 3.1. 인삼 경작 부문의 문제점과 과제

##### 3.1.1. 안전성 관리 미흡

- 인삼의 연도별 GAP 인증실적은 <표 3-16>과 같음. 현재 인삼 GAP 인증농가는 전체 인삼농가 21,087호 중 472농가로 전체 농가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며, 전체 재배면적의 2%에 불과함(2015년 기준). 2009년 인증농가수 356호, 인증건수 355건에서 2014년 농가수 560호, 인증건수 47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주춤하였음.
- GAP 인증농가가 크게 늘지 않는 이유는 GAP 인증이 복잡하고 GAP인증에 관련된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임. 농가는 생산 및 출하시 가격 반영을 기대하나 GAP인증품과 비인증품에 대한 가격차가 없어 GAP 인증에 대한 유인이 부족함. 인삼의 특성상 4~6년의 긴 생육기간이 요구되나,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GAP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초기 위험부담이 상당히 큰 문제점

표 3-16. 인삼의 연도별 GAP 인증실적

연도	인증건수	농가수(호)	인증면적(ha)	생산계획량(톤)
2009	355	356	177	1,519
2010	390	411	218	4,009
2011	393	434	345	4,776
2012	410	478	503	2,600
2013	468	546	309	2,793
2014	473	560	322	2,787
2015	394	472	314	2,463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연보』, 각 연도별

이 있음. 또한, GAP 인증은 개별 농가를 기준으로 부여되고 있어 일부 재배지가 GAP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전체 재배지가 취소되는 문제점으로 농가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 또한 일반 소비자가 GAP 인증을 받은 인삼제품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일부 채소 및 과일 등에서 농약이 과다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되는 가운데, 인삼의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한 소비자 신뢰도 또한 낮은 현실임. 인삼 종주국의 위상 회복을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최근 소비자들은 농약, 중금속 등 화학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먹거리를 선호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 확산이 필요함.
-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의무화를 통해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경작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그러나 인삼은 이동경작, 미신고 농가 등으로 농가현황 파악이 어려우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한 재배단계 안전성 관리에 한계가 있음.

### 3.1.2. 생산이력제

- 생산이력제란 농·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문서화하거나 전산형태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생산자, 농약사용량, 유통·가공 과정, 출고일자 등 각종 정보를 수집, 축적할 수 있음. 따라서 농산물 안전성 문제 발생 시 단계별 정보의 역추적을 통해 사고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사태 확산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농·축산물에 대한 다양하고 연속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현재 인삼의 경우 생산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GAP 시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안전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생산이력제는 GAP제도의 필수항목으로 생산자에게 각 생산단계별 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며 소비자들로부터 생산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시행될 필요성이 있음.
- 생산단계의 GAP 관리체계와 생산 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한다면 생산부터 유통·가공·판매에 이르는 일관화 된 인삼의 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음. GAP를 통해 생산이력제가 정착이 된다면 인삼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국내 인삼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음. 특히, 생산이력제 도입에 앞서 중국삼의 오인을 막을 수 있는 생산자 표시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성이 있음.
- 정부와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약재 생산이력 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한약재에 실시되고 있는 이력추적관리제도의 경우 한약 생산, 수입, 제조, 유통 업체 가운데 이력 추적 관리를 원하는 업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식약처장에게 이력추적업체로 등록해 관리를 받아야 하며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에 이력추적 표시를 하거나 한약재를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경우에는 2004년 10월부터 일부 관련 업체 및 시·군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음. 2007년 12월 제정·공포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8년 12월 22일부터 사육 단계에 시행된 데 이어 2009년 6월부터 유통 단계까지 확대하여 전면 시행되었음.
- 이에 따라 기존의 소와 새로 태어난 송아지, 수입된 소 등은 모두 위탁 기관에 신고하고 12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부착하며, 이력추적 시스템에 정보가 입력됨. 따라서 소비자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개별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소의 출생일·종류·성별·소유주·사육지·도축일자·등급·브

랜드명 등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음. 귀표가 부착되지 않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는 양도·양수 또는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 또한 철갑상어, 다금바리 등 값비싼 어종관리를 위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는 연평균 2,000마리에 달하는 경주마의 목덜미에 경기 직전 RFID칩을 삽입함으로써 경기 직전에 마필의 개체 확인과 도핑검사, 경주기록, 건강기록 등을 체크하는 과정을 자동화하였음.
- 향후 인삼의 이력추적제 시행 시 위에서 언급한 한약재나 소고기 등과 같이 현재 이미 시행중인 타 품목의 이력추적제도를 잘 분석하여 이점은 유지하고 문제점은 수정·보완 후 인삼의 특성에 맞추어 적용할 필요가 있음.

### 3.1.3. 표준인삼경작법 적용 강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GAP 제도는 인삼의 특성과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함. 따라서 GAP 제도는 인삼재배에 적용 가능하도록 향후 단계별로 수정, 보완이 필요하므로 GAP 인증제도의 확산을 위해 생산, 수확 후 관리 등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인삼경작방법 기준을 보완하여 GAP 제도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함.

### 3.1.4. 연근표시 미흡

- 인삼의 재배형태별 생산량 추이를 보면 신고포 비중은 감소, 지정포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표 3-3). 점차 지정포의 비중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신고포의 비중이 40%가 넘는 상황이며 4년근 인삼이 유통단계에서 불확실한 연근표시로 소비자의 신뢰문제 및 유통질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따른 수삼의 연근표시제도 도입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3.2. 수삼 유통의 문제점과 과제

- 수삼 유통부문은 현재 인삼산업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로 인삼유통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문으로 판단됨. 수삼 유통부문의 특성을 요약하면 한 마디로 기존 상인 중심의 전통적 수삼 유통체계가 시스템과 고객 중심의 체계적 유통(Orderly Marketing)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수삼 유통부문의 현안으로는 최근 많은 인삼제품들이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를 활성화 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수삼의 경우 다른 인삼제품과는 달리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미흡하다는 점과, 공정하고 투명한 수삼 거래를 위한 관련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거래제도가 취약하다는 것임. 수삼 유통부문의 취약성은 급변하는 인삼 소비 및 구매환경 변화에 대한 기존 수삼 유통시장 참여자의 상황인식과 대처능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경영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동시에 수삼 도매거래 시설의 난립으로 공정한 경쟁체제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시설과 구매자 니즈의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음. 그리고 수삼 거래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자나 소비자의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한 실정임.
- 특히, 비체계적인 수삼 도매유통체계는 수삼유통의 가장 큰 현안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수삼의 도매거래에서 공정한 가격형성, 거래의 투명성 유지, 거래정보의 공개 등 질서 있는 도매유통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여 생산자나 구매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수삼 도매유통의 개선 목표는 수삼의 공정가격 형성, 유통비용 절감, 소비자 신뢰확보, 수삼의 등급 표준화와 품질인증제 도입, 현대적 유통시스템 전환 등으로 요약 될 수 있음.

- 수삼 출하 및 유통과정의 안전성 확보시스템 미흡은 수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수삼의 출하 및 유통과정 상의 안전성 확보시스템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못하여 수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이 낮은 실정임. 수삼의 안전성(잔류농약 및 중금속) 기준(잔류농약 79종, 중금속 2종)은 있으나, 재배와 수확과정에서 체계적인 검사시스템이 확립되지 못하여 인삼류와 인삼제품류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수확 전 및 유통 중 안전성 검사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의 수삼 유통체계는 소비자보다는 판매자 중심의 체계로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삼유통에 대한 신뢰도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수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거래기반 구축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수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형성 및 거래 관련 정보공개를 위한 표준규격화가 확립되지 못하고 관행적 등급규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출하자와 구매자보다는 상인중심의 거래체계가 형성되어 있음. 거래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수삼 판매용기 및 규격이 표준화되지 못하여 거래가격과 규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저하 요인이 되고 있음.
- 수삼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부재 현상도 수삼구매자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수삼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중 모양, 크기, 색깔 등은 구매자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산지와 연근 요소의 경우 가격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산지와 연근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인증이나 정보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실정임. 수삼의 거래규격도 대부분 채단위(750g)로 판매되고 있어 규격화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판매 시에는 저울로 계근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표준화된 포장규격, 포장재, 포장방법도 없는 실정임.

표 3-17. 수삼 유통부문의 문제점과 현안

문제점 및 현안	주요 내용
▪ 수삼의 체계적 유통시스템 미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의 비공개성, 거래과정의 불투명성</li> <li>• 가격형성의 공정성 미흡</li> <li>• 시장정보의 비대칭성과 일방통행</li> <li>• 안전성 및 품질 인증제도 미확립</li> </ul>
▪ 수삼 및 거래의 표준규격화 미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의 구매가격에 대한 낮은 신뢰성</li> <li>• 등급과 표시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성</li> <li>• 규격과 등급에서의 관행적 거래 지속</li> </ul>
▪ 수삼의 안전성 확보시스템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배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시스템 미흡</li> <li>•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li> </ul>
▪ 수삼 유통시설 및 거래제도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근대적 민간도매시장 중심 도매시설</li> <li>• 출하자와 도매상과의 큰 거래교섭력</li> <li>• 도매가격결정 방식의 폐쇄성, 제약성</li> </ul>

### 3.3. 인삼제품 유통의 문제점과 과제

- 인삼제품류의 표준규격화 미흡으로 제조업체 간 인삼 제품류의 사용원료, 배합비율, 성분, 제조방법 등에 대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상품화로 공동브랜드화가 어려운 실정임. 그 결과 영세 제조업체들이 제품판매를 위한 주류 유통경로나 판매시장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중간상인이나 판매 대리상에게 판매를 대부분 위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공정 유통행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영세 제조업체의 조직화·공동화·규모화 전략 수립과 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영세 제조업체들의 시장지배력과 거래교섭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 결과 영세업체나 농가의 경우 판로확보가 매우 어려워 대부분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간상인 중심의 유통과정에서 인삼제품의 불공정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인삼제품에 대한 객관적 유통정보의 획득과 접근의 어려움은 구매자의 구매 접근성과 용이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수삼과 마찬가지로 인삼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비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구매자가 많은 종류의 인삼제품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영세 제조업체 인삼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구매자의 낮은 신뢰도는 국내 인삼제품 시장 확대를 위한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영세 제조업체들의 다양한 인삼제품류 생산과 안정적인 판로확보의 어려움은 인삼제품 장외유통과 소비자의 신뢰성 저하요인으로 작용함.
- 현재 국내 인삼제품시장 특히 홍삼시장의 경우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이 시장점유율을 약 70% 이상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중소·영세업체들의 경우 제품의 판로 확보와 수출시장 개척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 경쟁력 측면에서 대기업과의 경쟁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표 3-18. 인삼제품류의 제조·유통부문 현안과 문제점

문제점 및 현안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체의 영세성과 낮은 경쟁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체별 개별적 제품 생산구조</li> <li>• 중간상인 위탁판매 및 장외거래 중심 판매구조</li> <li>• 브랜드화 미흡과 오픈마켓 입점 및 판로확보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유통의 조직화·규모화·공동화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업체의 조직화를 통한 공동화·규모화의 한계</li> <li>• 제품의 낮은 인지도 및 불공정거래의 요인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제품의 객관적 유통 정보 접근성 제한과 정보의 비대칭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영세업체 생산구조로 제품의 비표준화</li> <li>• 구매자의 제품구매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장외거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제품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낮은 신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기준 부재</li> <li>• 제품의 안전성 제고, 품질 보증제도 미흡</li> <li>• 장외유통과 불공정거래(사기판매)로 신뢰성 저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구조의 양극화와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지배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일부 조합)과 영세업체로 시장구조 양극화</li> <li>• 영세업체의 낮은 시장지배력과 가격결정권</li> <li>• 수출시장 확보의 어려움과 수출한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농협의 비조직화와 브랜드 난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시장에서 인삼조합의 낮은 경쟁력</li> <li>• 개별브랜드 난립으로 낮은 인지도 및 시장개척 한계</li> <li>• 인삼조합의 경영적자 누적과 악순환 요인 작용</li> </ul>



## 제 4 장

### 인삼 소비 실태와 트렌드 분석

#### 1.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 실태

##### 1.1. 인삼 및 인삼제품 시장 동향

- 인삼의 소비형태는 크게 수삼, 홍삼, 백삼으로 구분되며, 2015년 기준 수삼 34.3%, 홍삼 62.8%, 백삼 2.7%, 태극삼 0.2% 순으로 소비되고 있음. 특히 홍삼의 소비는 2012년 44%에서 2015년 6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홍삼 소비 증가는 전매제 폐지이후 4, 5년근 중저가 홍삼의 제조가 활성화된 것이 그 요인으로 판단됨.
- 인삼 용도별 이용은 수삼용과 가공용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인삼의 용도별 이용량을 살펴보면 인삼의 용도가 점차 수삼용에서 가공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표 4-1). 국내에서 생산된 인삼 중 수삼용으로 소비된 비중은 2012년 51%에서 2015년에는 34.3%까지 급감함. 2012년 이후 국내 인삼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한 수삼용 인삼은 점차 가공용으로 전환되어 2015년에는 국내 인삼 생산량의 65.7%가 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인삼 가공용 중에서 대부분 홍삼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홍삼용은 2012년 44.5%에서 2015년에는 62.8%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홍삼용 중 홍삼가공 제품용의 비중이 2015년 전체 이용량의 3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태극삼과 백삼용은 전체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약 2.9% 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 인삼 용도별 이용 현황

단위: 톤, %

구분	2012		2013		2014		2015		
	이용량	비중	이용량	비중	이용량	비중	이용량	비중	
수삼	13,289	51.0	7,645	34.8	7,487	35.7	7,225	34.3	
홍삼	뿌리삼	3,711	14.2	6,598	30.0	6,362	30.3	4,827	23.0
	제품류	7,885	30.3	6,978	31.8	6,287	30.0	8,382	39.8
태극삼	뿌리삼	104	0.4	176	0.8	98	0.5	37	0.2
백삼	뿌리삼	591	2.3	164	0.7	451	2.1	402	1.9
	제품류	477	1.8	407	1.9	291	1.4	170	0.8
합계	26,057	100	21,968	100	20,978	100	21,043	100	

주: 인삼농협의 판매자료를 기준으로 추정된 결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인삼 통계자료집』, 각 년도

- 인삼제품별 판매는 다음 <표 4-2>와 같으며 총 인삼제품의 판매량은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가 2014년 급격하게 증가함. 특히 인삼 제품 중에서 홍삼음료의 판매량의 급격한 증가가 인삼제품 판매량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이는 선물용으로 적정한 가격대의 제품 중 하나로 홍삼음료가 주목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임.
- 인삼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중에서 시·군·구 허가 대상 인삼제품은 크게 과자류, 다류, 음료류, 절임식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과자류에는 캔디류, 추잉껌을 포함 그리고 다류에는 고행차, 액상차, 침출차로 구성됨.

표 4-2. 인삼제품별 판매량

단위: 톤

연도	과자류	다류		음료류		절임식품		계
		인삼	홍삼	인삼	홍삼	인삼	홍삼	
2009	587	415	1,301	1,382	30,306	33	306	34,330
2010	1,784	166	1,210	1,539	32,385	39	345	37,468
2011	2,419	91	1,405	1,036	27,465	37	349	32,802
2012	2,038	139	1,474	945	18,578	83	366	23,623
2013	1,670	147	661	280	18,251	69	272	21,350
2014	751	90	369	329	59,589	34	322	61,484

주: 시·군구 허가품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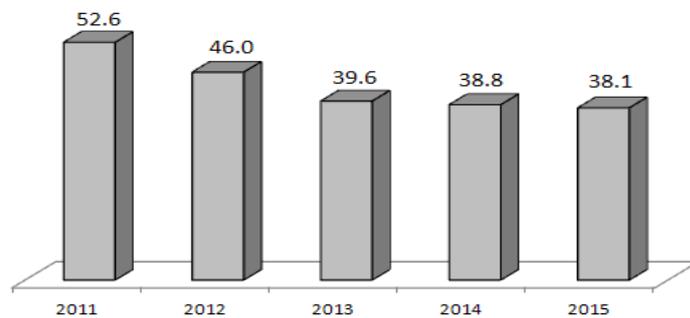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년도

-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고령화 및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로 2011년 이후 연평균 7.4% 성장하였음.<sup>7</sup> 품목별로는 2015년 기준 홍삼제품의 생산실적이 6,943억 원으로 전체 생산실적(1조 8,230억 원)의 38.1%를 차지하였고, 인삼제품의 경우 307억 원으로 1.7% 정도를 차지하면서 인삼 관련 제품이 전체 산업에서 39.8%를 차지하였음. 건강기능식품 중 홍삼제품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여 왔으나, 2011년 이후에는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홍삼제품 다음으로는 개별인정형 17.5%(3,195억 원), 비타민·무기질 11.4%(2,079억 원), 프로바이오틱스 8.7%(1,579억 원), 밀크씨슬추출물 3.9%(705억 원) 제품 순으로 나타났음. 특히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면역기능 개선 제품이나 비타민 등과 같은 영양보충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확대되었음.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는 수입에서도 나타나는데, 2015년 수입액은 2,791억 원으로 전년대비 43.5%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건강기능식품 수입액 중 46.8%를 차지하였음. 또한, 소비자 요구에 따

7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참조(2016.8.11).

른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도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4-1. 건강기능식품 생산액 중 홍삼제품의 점유율



- 향후 소득 증가에 따른 건강중시형 소비가 증가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꾸준한 전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소비자 수요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더욱 발전·육성시키고 더불어 안전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인삼(홍삼)제품 또한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건강기능성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인삼의 효능 및 기능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안전을 중요시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대응하여 인삼제품 또한 생산단계부터 제조·가공 부문에까지 향후 안전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소비자들에게 인삼제품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안전성 강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행정처분 총 64건 중 홍삼이 16건, 인삼이 0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해 가장 많았음(영업정지 3건, 영업과징금 1건, 품목정지 6건).

## 1.2.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형태 변화

- 소비자의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행태의 변화와 최근 소비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최근 몇 년간 인삼 및 인삼제품을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소비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소비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소비행태 및 소비트렌드를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함.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전체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수준의 표본 수 확보와 여러 기간에 걸친 소비행태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확보한 표본 수의 유지가 중요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 자료의 요건을 갖춘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자료를 사용함.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패널 표본 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1,000가구이지만 소비자패널 자료 중에서도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에 대해 최근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가공하여 분석에 활용함. 총 534명의 소비자패널이 인삼소비에 대해 작성한 가계부를 원자료로 하여 분석에 필요한 패널자료를 구축하였고, 자료에는 소비자패널의 고유 식별 번호와 함께 연도별로 구입한 인삼 및 인삼제품의 종류 및 구입액, 구입처 등이 기입되어 있으며, 더불어 소비자패널의 인구사회적 특성변수로 나이, 학력수준, 주거형태, 소득수준 등이 포함됨.
- 연도별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액 비중은 <표 4-3>과 같음. 인삼제품 소비액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삼 및 인삼제품 전체 소비액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큼. 수삼 소비액은 전체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액에서 2010년에 비해 2014년 약 4.5%p 감소한 34.6%를 차지함. 미삼 소비액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고, 2014년에 다시 소폭 상승하였으나 절대적인 비중이 1%도 되지 않는 적은 비중을 차지함.

- 5개년 소비액의 평균 비중을 살펴보면 인삼제품이 65.2%로 가장 많았고 수삼이 34.5%, 미삼이 0.3% 순으로 나타남. 인삼 및 인삼제품 시장에서 인삼제품 소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삼 소비액의 약 1.9배에 달해 인삼제품의 소비가 인삼 및 인삼제품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삼제품 소비액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수삼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앞으로 인삼 및 인삼제품 시장에서는 인삼제품의 소비액 비중이 점차 커지고, 반면 수삼의 소비액 비중은 점차 작아질 것으로 전망됨.

표 4-3. 연도별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액 비중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5개년 평균
미삼	0.5	0.3	0.3	0.2	0.2	0.3
수삼	39.1	34.0	26.5	37.8	34.6	34.5
인삼제품	60.4	65.7	73.2	62.0	65.2	65.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자료

- 인삼 및 인삼제품의 주요 구입처별 소비액 비중은 <표 4-4>와 같이 무점포 판매형을 제외한 대형마트와 전문점에서는 수삼보다 인삼제품의 소비액 비중이 더 큼. 무점포 판매형에서는 2013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 수삼의 소비액 비중이 인삼제품의 소비액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형마트에서의 수삼 및 인삼제품 소비액 비중을 살펴보면 인삼제품의 소비액 비중이 수삼의 소비액 비중보다 크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 무점포 판매형은 수삼과 인삼제품 소비액의 비중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이는 점포가 없이 간헐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전문점의 경우 인삼제품의 소비액 비중이 수삼에 비

해 월등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수삼에 비해 홍삼제품과 같은 인삼 제품 전문점이 다수 생겨난 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4-4. 주요 구입처별 가구당 인삼 및 인삼제품 평균소비액

단위: %

구입처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형마트	수삼	15.2	22.3	37.9	40.3	27.2
	인삼제품	84.8	77.7	62.1	59.7	72.8
무접포 판매형	수삼	73.0	63.8	28.7	45.8	52.5
	인삼제품	27.0	36.2	71.3	54.2	47.5
전문점	수삼	15.6	12.3	3.0	17.9	27.6
	인삼제품	84.4	87.7	97.0	82.1	72.4

자료: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자료

- 응답자의 연령대별 가구당 인삼 및 인삼제품 평균소비액은 <표 4-5>와 같음. 2014년을 기준으로 인삼 및 인삼제품 평균 소비액이 가장 큰 연령대는 40대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50대, 60대, 30대 이하 순으로 소비액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40대의 경우 최근 들어 전체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짐. 60대 이상 연령대의 경우 과거에는 인삼 및 인삼제품에 대한 소비액의 비중이 크지 않았으나 점차 그 비중이 커지며 최근에는 30대 이하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반면 30대와 50대의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액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따라서 향후 인삼 및 인삼제품의 주요 고객 연령층은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40대와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한 후인 60대 이상 연령대가 될 것으로 전망됨.

표 4-5. 응답자 연령대별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액 비중

단위: %

연령대	2010	2011	2012	2013	2014
30대 이하	26.3	31.1	18.4	12.7	7.9
40대	31.0	23.4	42.4	54.7	44.9
50대	34.2	37.1	28.7	23.9	24.7
60대 이상	8.5	8.4	10.5	8.7	22.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자료

- 가구원수별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액 비중은 모든 기간에 걸쳐 3~4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4-6).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에서는 3~4인 가구의 소비액 비중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함.

표 4-6. 가구원수별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액 비중

단위: %

가구원수	2010	2011	2012	2013	2014
1~2인	13.0	18.6	14.8	9.1	19.2
3~4인	69.9	59.4	64.7	63.2	60.7
5인 이상	17.1	22.0	20.5	27.8	20.1

자료: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자료

## 2. 인삼 및 인삼제품 선호 속성 및 수요 조사 분석

### 2.1. 조사 개요

- 인삼산업법 개정 필요사항과 유망 인삼 및 인삼제품 선호 속성 및 수요 분석에 필요한 소비자 설문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패널을 활용하여 인터넷조사로 진행함.<sup>8</sup>
- 설문조사 결과 총 69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진행된 분석에 따라 유효한 응답을 한 표본에 대해서만 각각 분석을 실시함. 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659명(95.5%)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31명(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표 4-7).

표 4-7. 응답자 성별 구성비

단위: 명, %

성별	빈도	비중
남성	31	4.5
여성	659	95.5
합계	690	100.0

- 연령은 40대가 297명(4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대가 259명(38.1%)로 많았으며. 나머지 30대 63명(9.3%), 60대 56명(8.2%), 20대 3명(0.4%), 70대 이상 1명(0.1%) 순으로 나타남.

<sup>8</sup>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소비자패널은 최근 농축산물 유통 환경과 소비자의 구매패턴 및 선호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수요부문의 관측정보 생산이 중요해짐. 도시가계의 농축산물 소비행태를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본을 설계하여 소비자패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됨. 소비자패널의 표본은 통계청 2004년 주민등록상 세대수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그리고 수도권 일원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고양시 일산구의 세대를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별 인구 크기에 비례하도록 비례할당방식을 사용하여 추출됨. 최종적으로 1,000명의 소비자패널을 구축하여 수요부문의 관측정보 생산에 활용하고 있음.

표 4-8. 응답자 연령별 구성비

단위: 명, %

연령	빈도	비중
20대	3	0.4
30대	63	9.3
40대	297	43.7
50대	259	38.1
60대	56	8.2
70대 이상	1	0.1
합계	690	100.0

○ 응답자의 가족구성원 수를 살펴보면 4인 가구가 343명(51.5%)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3인이 162명(24.3%), 5인이 79명(11.9%), 2인이 62명(9.3%), 6인이 17명(2.6%)으로 나타났고, 1인 가구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3명(0.5%)으로 조사됨.

표 4-9. 응답자 가족구성원 수

단위: 명, %

가족구성원 수	빈도	비중
1명	3	0.5
2명	62	9.3
3명	162	24.3
4명	343	51.5
5명	79	11.9
6명	17	2.6
합계	666	100.0

주: 무응답 24명 제외

○ 응답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319명(47.0%)로 가장 많았고, 500~70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166명(24.4%)로 나타나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100~300만원 미만이 108명(15.9%), 700만원 이상이 84명(12.4%), 100만원 미만이 2명(0.3%)으로 나타남.

표 4-10. 응답자 가구 월 평균 소득

단위: 명, %

가구 월 평균 소득	빈도	비중
100만원 미만	2	0.3
100~300만원 미만	108	15.9
300~500만원 미만	319	47.0
500~700만원 미만	166	24.4
700만원 이상	84	12.4
합계	679	100.0

주: 무응답 11명 제외

- 응답자의 학력수준은 대학 졸업이 455명(66.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졸 189명(27.6%), 대학원 졸업 이상 37명(5.4%), 중졸 이하 3명(0.4%) 순으로 나타남.

표 4-11. 응답자 학력수준

단위: 명, %

학력수준	빈도	비중
중졸 이하	3	0.4
고졸	189	27.6
대학 졸업(전문대 포함)	455	66.5
대학원 졸업 이상	37	5.4
합계	684	100.0

주: 무응답 6명 제외

- 응답자들의 인삼제품 구매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인삼제품 구매 횟수를 설문한 결과 1~3회 정도 구매한 응답자가 477명(6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6회 구매한 응답자가 98명(14.3%), 7~9회 구매한 응답자가 21명(3.1%), 10회 이상 구매한 응답자가 15명(2.2%)로 나타난 반면 한 번도 구매하지 않은 응답자도 75명(10.9%)으로 나타남.

표 4-12. 지난 1년간 인삼제품 구매횟수

단위: 명, %

구매횟수	빈도	비중
0회	75	10.9
1~3회	477	69.5
4~6회	98	14.3
7~9회	21	3.1
10회 이상	15	2.2
합계	686	100.0

주: 무응답 4명 제외

- 인삼제품의 주요 구매 목적에 대해 설문한 결과 자가소비용으로 구매한다는 응답자가 493명(77.9%)로 많았고, 선물용이라 응답한 응답자가 140명(22.1%)로 나타남.

표 4-13. 인삼제품 구매 목적

단위: 명, %

구매목적	빈도	비중
자가소비용	493	77.9
선물용	140	22.1
합계	633	100.0

주: 무응답 57명 제외

- 응답자들의 인삼제품 주요 구매처를 살펴보면 인삼제품 전문매장을 이용하는 응답자가 224명(37.7%)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인터넷이 각각 135명(22.7%)과 115명(19.4%)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백화점이 67명(11.3%), 산지인삼 농협이 53명(8.9%)으로 나타남.
- 가정 내에서 구매한 인삼제품을 주로 섭취하는 가족구성원이 누구인지 설문한 결과 본인이 섭취한다는 응답이 206명(39.5%)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섭취하는 경우가 168명(32.1%)로 두 번째로 많음. 특히 자녀가 섭취한다고 응답

표 4-14. 인삼제품 주요 구매처

단위: 명, %

구매처	빈도	비중
대형 유통업체	135	22.7
인삼제품 전문매장	224	37.7
백화점	67	11.3
인터넷	115	19.4
산지인삼 농협	53	8.9
전체	594	100.0

주: 무응답 96명 제외

한 경우 중 세부적으로 중고등학생 자녀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 대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이 섭취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48명(28.4%)을 차지함.

표 4-15. 인삼제품 가정 내 주요 섭취자

단위: 명, %

주요 섭취자	빈도	비중
부모님	148	28.4
본인	206	39.5
초등학생 자녀	33	6.3
중고등학생 자녀	72	13.8
대학생 이상 자녀	63	12.0
전체	522	100.0

주: 무응답 168명 제외

- 인삼제품의 선호 브랜드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정관장(한국인삼공사)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492명(8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나머지 한삼인(농협)과 영농조합법인은 51명(8.7%)과 46명(7.8%)으로 비슷한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16. 인삼제품 선호 브랜드

선호 브랜드	빈도	비중
정관장(한국인삼공사)	492	83.5
한삼인(농협)	51	8.7
영농조합법인	46	7.8
전체	589	100.0

주: 무응답 101명 제외

## 2.2. 인삼제품(홍삼토닉)의 선호 속성 분석

### 2.2.1 분석방법

- 기존 홍삼토닉 제품의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선택형 실험(Choice Experiment; CE)을 이용함. 선택형 실험은 여러 속성의 여러 수준별로 구성된 가상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하게 하는 기법임. 응답자들이 선택한 대안을 통해 선호를 파악하고 속성의 수준변화에 따른 화폐가치를 추정할 수 있음.
- 선택형 실험법을 이용하여 홍삼토닉 제품의 속성별 소비자의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존재하지 않는 몇 가지 대안들을 가상적으로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응답자로부터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프로파일을 선택하게 함. 이 때 각 대안은 홍삼토닉 제품의 속성들과 속성별 수준에 의해 설정되며,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속성별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할 수 있음. 다항로짓모형은 다음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1) \quad P_{ij} = \frac{\exp(\mu V_{ij})}{\sum_{k=1}^K \exp(\mu V_{ik})}$$

- 여기서  $P_{ij}$ 는 응답자  $i$ 가 대안  $j$ 를 선택할 확률이며,  $\mu$ 는 비례모수로 1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함.
- $V_{ij}$ 는 간접효용함수의 비확률적 부분으로 다음의 식(2)와 같이 선형의 형태로 가정함.

$$(2) \quad V_{ij} = \sum_{m=1}^M \beta_m X_{ijm}$$

- 여기에서  $\beta_m$ 은 파라미터이며,  $X_{ijm}$ 은  $i$ 응답자의  $j$ 대안에 대한  $m$ 번째 속성을 나타냄.
- 이렇게 설정된 다항로짓모형의 추정은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활용되며, 추정을 위한 로그-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는 다음의 식(3)과 같음(Greene, 2000).

$$(3) \quad \ln L = \sum_{i=1}^N \sum_{j=1}^K [D_{ij} \ln(P_{ij})]$$

- 식(3)에서  $D_{ij}$ 는  $i$ 응답자  $j$ 대안을 선택할 경우 1, 선택하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가지게 됨.

## 2.2.2. 분석자료

- 홍삼토닉 제품의 주요 속성으로는 인삼연근,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여부, 1일 섭취량 기준 당류 함량, 소비자가격이 포함됨.
- 인삼연근의 경우 저년근 인삼의 성분이 6년근에 비해 크게 차이나지 않음에도 가격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원예산업신문, 2011. 11. 30.), 6년근 인삼의 경우 최근 경영비가 상승하고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6년근을 생산함에도 수매가격이 4년근 평균도매가격보다 낮은 문제가 발생하여(충

남 인삼산업 발전대책, 2015), 이에 소비자 측면에서 저년근을 이용한 홍삼 토닉에 대한 WTP 추정이 필요함.

-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여부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2016년 『인삼산업 발전대책(2016~2025년)』 주요 내용에서 생산 안전 관리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미이행자에 대해 정책지원 배제 등 시행에 따라 농가의 GAP인증시행에 따른 소비자들의 한계지불의사금액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표 4-17).

표 4-17. 인삼산업 발전대책(2016~2025년까지) 주요내용

사업 분류	기존 및 보완과제	신규과제
민간역량 강화 및 생산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 의무자조금 가입 확대</li> <li>- 산양삼 협업·협력 체계강화</li> <li>- 인삼계열화사업 참여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li> <li>- 생산·유통기반시설 현대화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급·경작신고·GAP 미이행자 정책지원 배제</li> <li>- 민간 주도 고려인삼정책포럼 운영</li> <li>- 인삼 단체 간 생산적 협력 관계 구축 및 운영</li> <li>- ICT활용, 인삼 스마트팜 도입·확대</li> </ul>
수출·소비 및 6차 산업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별 비관세장벽 대응</li> <li>- 고려인삼 국제세미나 정례화</li> <li>- 할랄식품 인증 및 안테나숍 운영</li> <li>- 중국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수입 국가별 모니터링 강화</li> <li>- 인삼을 주제로 6차산업화 확대</li> <li>- 국가별 소비성향·식문화 등 현지선호도 조사 및 정보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용 원료삼 수매 지원사업 도입</li> <li>- 가칭 ‘고려인삼 홍보·판매관’ 건립</li> <li>- 비관세장벽 해소 T/F팀 운영</li> <li>- 고려인삼 종합정보망 구축 및 홈페이지 게재(영어·중국어 번역판 제공)</li> </ul>
인삼 R&D확대 및 산업화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 브랜드 통합 및 마케팅 강화</li> <li>- 인삼 R&amp;D 산업 기획단확대 재편 및 투자확대</li> <li>- 융복합 제품개발 및 기능성 상품개발 등 다양한 소비시장 창출</li> <li>- WHO 국제약전 기능성 등록 추진</li> <li>- 인삼 계열화 사업 참여농가 GAP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검사소 검사역량 강화</li> <li>- 기계화가 가능한 고정식 하우스 재배시설 및 환토 방법 실증연구</li> <li>- 고려인삼 승열작용 오인식 및 약물상화작용 등 국제 공동연구 강화</li> <li>- 기능성 소재 탐색 및 개발을 위한 기초기반 연구</li> </ul>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 재배농가 경작신고 및 연근표시 의무화</li> <li>- 인삼 소비·수출 확대를 위한 포장규제 완화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환경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인삼산업법』 전면 개정 추진</li> <li>- 중차 국외불법유출 차단을 위한 불법거래 공익신고제 확대</li> <li>- 인삼재해보험 및 표준인삼경작 방법 개정 등 제도개선</li> </ul>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인삼산업 발전대책』, 2016.

○ 또한 소비자들의 당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에서도 가공식품 당류 저감을 위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인삼제품인 홍삼토닉 내 당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 역시 분석될 필요가 있음(표 4-18).

표 4-18. 국내 당류 정책 동향

일시	정책 및 사업	내용
2012. 10.	당류 줄이기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류 등 영양성분 표시 확대, 매장 내 당류 섭취 줄이기 홍보물 비치, 당 함유량이 적은 레시피 및 신제품 개발 등 진행</li> <li>- 총 22개 업체 12,500여 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제빵점 등 참여</li> </ul>
2012	당류 저감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와 청소년의 당류 섭취 저감을 위해 영양·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 평가</li> <li>- 대상별 교육 교재, 교사용 지침서, 교육 동영상, PPT 등 멀티 미디어자료 개발</li> </ul>
2013	당류 저감 전략개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측면에서의 전 국민(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가정, 직장, 사업장)과 생산자 측면에서의 식품업계(유통·제조·외식업계), 환경 및 기반조성 분야로 구성하여 추진 전략 제시</li> </ul>
2013	당류 저감을 위한 추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양표시·식생활 교육프로그램 및 당류 저감 모델 등 기술지원 방안 개발 연구(2013~)</li> <li>- 가공식품 및 외식에서의 영양표시제도 지속 확대</li> <li>- 당류 저감 기술 지원 및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li> <li>- 소비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 추진</li> </ul>
2015. 11.	국민 다소비 식품의 당류 DB 확보 및 조사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섭취량 자료에 나타난 가공식품의 총 당류 및 첨가당 함량 DB 구축</li> <li>- 우리나라 국민의 당류 섭취량 분석</li> </ul>
2016. 4. 7.	제1차 당류 저감 종합 계획('16~'20)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섭취열량의 10% 이내 목표</li> </ul>
2016. 9. 9.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g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함.</li> <li>- 2018년부터는 식품 표시에 당류의 함유량과 함께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에 대한 비율(%)도 표시 의무화</li> </ul>

자료: 박미성, 신성철, 『당류 저감 정책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과제』, 2016.

- 홍삼토닉 제품의 속성별 소비자의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기 위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함. 응답자들이 홍삼토닉 제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표제품인 정관장(한국담배인삼공사)의 ‘홍삼톤’제품을 예로 들어 설문을 진행함. 홍삼토닉 제품의 속성과 속성별 수준을 정리하면 <표 4-19>와 같음.
- 홍삼토닉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는 제품을 만드는데 원료로 사용된 인삼의 연근과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여부, 1일 섭취량 기준의 당류 함량, 그리고 가격에 따라 상이해질 것임. 먼저 인삼연근 속성은 4년근, 5년근, 6년근 3단계로 구분하였고, GAP 인증여부는 미인증과 인증 2단계로 구분함. 1일 섭취량 기준 당류 함량은 1g, 4g, 7g 3단계로 구분하고, 소비자 가격은 홍삼토닉 1개월분에 대해 8만원, 10만원, 13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의 6단계로 구분함.

표 4-19. 홍삼토닉 제품의 이용 속성 및 속성별 수준

속성	속성별 수준					
	인삼연근(년근)	4		5		6
우수농산물 인증 여부	미인증			인증		
1일 섭취량 기준 당류 함량(g)	1		4		7	
소비자가격 (원/1개월분)	80,000	100,000	130,000	<b>160,000</b>	200,000	250,000

주: 정관장 ‘홍삼톤 골드’의 속성별 현재 상태는 진하게 표기

- 조사일시는 2016년 8월이며, 총 응답자 수는 690명이었음. 이 중 불충분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449명의 응답자로부터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홍삼토닉 제품의 선호 속성 분석을 실시함.

- 홍삼토닉 제품에 대한 선택형 실험에서 <표 4-19>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4개의 속성과 각각의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그림 4-2>와 같이 프로파일을 설계할 경우 가능한 프로파일 수는 매우 많음.
- 가능한 모든 프로파일을 활용하여 설문을 작성하는데 비효율이 존재하여 직교설계(orthogonal design)를 통해 36개의 효율적인 프로파일을 구성하였고, 36개 프로파일을 4개씩 9개 블록으로 구분하여 조사에 사용함. 또한 36개의 프로파일에는 베이스에 해당하는 현재상태의 속성 수준별 조합이 공통적으로 포함함. 따라서 응답자 1명에게 <그림 4-2>와 같이 속성별 수준의 조합이 다른 프로파일 4개가 주어지고, 응답자는 4개의 프로파일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속성의 조합을 각각 선택하게 됨.

그림 4-2. 선택형 실험 설문 예시

Q. 귀하께서 아래의 3가지 (현재, A, B)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을** 골라 □안에 v해주시시오.

	재배연근	GAP인증	당류함량	가격 (50ml*30포)	선택(v)
현재 상태					<input type="checkbox"/>
	6년근	미인증	7g	16만원	
A					<input type="checkbox"/>
	5년근	인증	1g	20만원	
B					<input type="checkbox"/>
	5년근	미인증	4g	8만원	

### 2.2.3. 분석결과

-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 4년근과 5년근은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계수값을 가지며, 4년근의 경우 5년근보다 계수의 절대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기준이 되는 6년근을 사용한 제품에 비해 4년근과 5년근을 사용한 제품을 상대적으로 덜 선호함을 의미함.
- GAP는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계수값을 가지며, 이는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인증을 받은 경우를 소비자들이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함.
- 당류함량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계수값을 가지며, 이는 당류함량이 적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함.
- 가격은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값을 가지므로 소비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4-20).

표 4-20.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

변수	계수	표준오차	유의확률
4년근( $\beta_1$ )	-1.065***	0.093	0.000
5년근( $\beta_2$ )	-0.837***	0.080	0.000
GAP( $\beta_3$ )	0.749***	0.067	0.000
당류함량( $\beta_4$ )	-0.043***	0.014	0.002
가격( $\times 10^{-6}$ )( $\beta_5$ )	-8.680***	0.743	0.000

주: \*p <0.1, \*\*p <0.05, \*\*\*p <0.01

- <표 4-20>의 계수 추정치를 이용하여 홍삼토닉 제품의 속성별 한계지불의 사금액(marginal willingness to pay)을 식(4)와 같이 계산할 수 있음.

$$(4) \quad MWTP_t = -\frac{\beta_t}{\beta_5}, \quad t = 1, 2, 3, 4$$

- <표 4-20>의 추정결과와 식(4)를 이용하여 홍삼토닉 제품의 속성별 한계지불의사금액을 계산한 결과는 <표 4-21>과 같음.
- 인삼연근에서 현재 6년근 인삼을 사용하여 홍삼토닉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4년근 인삼을 사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1개월분에 대해 121,083원만큼 지불의사금액이 감소하여 6년근에 비하여 매우 낮은 금액으로 나타남. 마찬가지로 6년근 인삼 대신 5년근 인삼을 사용할 경우에도 94,266원만큼 지불의사금액이 감소하는데 이는 기존에 홍삼토닉 제품에서 6년근 인삼에 대한 마케팅이 소비자들의 선호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따라서 6년근 미만의 인삼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함.
- GAP 인증여부에 있어서 기존 미인증인 상태의 홍삼토닉 제품에 비해 인증된 상태의 홍삼토닉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88,989원만큼 추가적으로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제품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삼법 개정과 관련하여 인삼제품에 대한 GAP 인증 도입 장려 방안이 필요함.
- 1일 섭취량 기준 당류 함량은 기존 7g의 상태에서 1g씩 줄일 때 마다 4,905원만큼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류 함량을 줄인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한계지불의사금액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당 섭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보편화된 것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홍삼토닉 제품을 제조할 때 기존에 사용되었던 6년근 인삼을 원재료로 하되 원료인 인삼의 우수농산물 인증에 대한 장려 및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당류함량을 줄인 프리미엄 제품의 고려가 필요함.

- 이와 함께 기능성 소재 및 제품개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인삼을 소재로 한 식품의 기능성 입증 연구,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 민간 R&D를 유인하는 정책 R&D 등이 요구 됨(이용선, 이선령, 2010).

표 4-21. 홍삼토닉 제품의 속성별 수준 변화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

속성	한계지불의사금액			
	수준 변화			금액(원/1개월분)
인삼연근	6년근	→	4년근	-121,083
	6년근	→	5년근	-94,266
우수농산물 인증여부	미인증	→	인증	88,989
1일 섭취량 기준 당류 함량	1g 감소			4,905

## 2.3. 유망 인삼 및 인삼제품의 수요 분석

### 2.3.1. 분석방법

- 유망 인삼 및 인삼제품의 경우 이에 대해 대다수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거나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움. 따라서 가상가치평가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라는 대안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유망 인삼 및 인삼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가상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가상가치평가법은 조건부가치평가법으로 현실에서 관찰 불가능한 가상적인 상황을 응답자에게 조건으로 제시하고 의사결정을 이끌어내 실제 시장(market)이 존재하지 않는 비시장재화(nonmarket goods)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는 통계적 기법을 말함. 따라서 가상가치평가법은 기본적으로

설문의 과정이 필요하고 응답자의 선택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 개입의 가능성이 높아짐. 이러한 편의(bias)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계량경제학적인 모형과 조사 방법이 고안되어 왔고, 실제 활용에 있어서 설문 형태에 따른 비용이나 계량모형의 복잡성, 표본의 확보 등에서 서로 다른 장단점을 보임.

- 그 중에서 폐쇄형 이산선택형(dichotomous choice) 가상가치평가법은 가상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응답자는 이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실제 의사결정과정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출발점 편의(starting point bias)가 발생하지 않고 응답자의 가상적 상황에 대해 진의를 드러내지 않는 전략적 편의(strategic bias)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유망 인삼 및 인삼제품으로 발효홍삼 농축액, 진생베리 추출액 2가지 종류에 대해 CVM을 이용한 수요 분석을 실시하고, 파마톤정과 새싹인삼에 대해서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유망 인삼 및 인삼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개략적으로 분석함.

## 2.3.2. 분석 결과

### 가. 발효홍삼 농축액

- 발효홍삼 농축액의 수요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표 4-22>와 같음. 종속변수는 발효홍삼 농축액을 구매할 의사가 있으면 1, 없으면 0의 값으로 정의됨. 설명변수로는 발효홍삼 농축액 1개월분에 대해 제시한 가격과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 최근 1년간 인삼제품 구매 경험, 학력 수준, 미성년 자녀 여부가 사용됨.

표 4-22. 발효홍삼 농축액 변수 정의

구분	변수명	정의
종속 변수	Choice	발효홍삼 농축액 구매 의사 0=없음, 1=있음
설명 변수	Price	발효홍삼 농축액 1개월분의 제시된 가격 10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35만원
	Income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 0=500만원 미만, 1=500만원 이상
	Experience	최근 1년 인삼제품 구매경험 0=없음, 1=있음
	Education	학력 수준 0=대졸 미만, 1=대졸 이상
	Child	미성년 자녀 여부 0=없음, 1=있음

- 발효홍삼 농축액의 구매 의사는 평균 0.47로 구매 의사가 있는 응답자 수가 전체 응답자 수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보다 50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더 많고, 지난 1년간 인삼제품을 구매해본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약 90%에 달함.
-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인 응답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응답함(표 4-23).

표 4-23. 발효홍삼 농축액 기술 통계량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Choice	0.47	0.50	0	1
Price	220,985	82,923	100,000	350,000
Income	0.36	0.48	0	1
Experience	0.89	0.31	0	1
Education	0.73	0.45	0	1
Child	0.52	0.50	0	1

- 발효홍삼 농축액 구매 의사결정에 대한 로짓모형을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통해 추정한 결과는 <표 4-24>와 같음. 제시된 금액과 소득 수준은 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최근 1년간 인삼제품 구매여부가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학력 수준과 미성년 자녀 여부는 발효홍삼 농축액 구매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상적으로 제시된 발효홍삼 농축액 가격이 낮아질수록,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인삼 구매 경험이 있는 경우 발효홍삼 농축액 구매 의사가 커짐을 의미함.

표 4-24. 발효홍삼 농축액에 대한 로짓추정결과

변수 명	계수	표준오차	유의확률
ln(Price)	-1.711***	0.256	0.000
Income	0.576***	0.209	0.006
Experience	0.652**	0.332	0.049
Education	-0.240	0.229	0.296
Child	0.151	0.202	0.455
Intercept	20.115***	3.146	0.000
Log-likelihood			-292.953
Prob>chi2			0.000

주: \*p <0.1, \*\*p <0.05, \*\*\*p <0.01

- 발효홍삼 농축액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1개월분에 대해 가구당 평균 160,107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발효홍삼 농축액의 가격대별로 잠재시장규모를 예측하여 정리한 것이 <표 4-25>임. 잠재시장규모는 가격에 수용확률을 곱하고 2010년 전구 총 가구수

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음. 2010년 전국 총 가구수가 17,574,067가구이고, 여기에 각 가격수준별 수용확률을 곱하면 해당 제품의 수용 가구수를 계산할 수 있음. 수용 가구수에 대응하는 가격을 곱하여 잠재시장규모를 계산함.

- CVM을 활용한 수요분석의 많은 경우에 가상적 편익이 발생되고, 가상의 상황에서 응답자들의 WTP는 실제 상황보다 과다하게 추정되는 현상이 나타남. 따라서 가상적 편익이 존재하는 경우의 WTP가 실제 상황에서의 WTP보다 약 2배가량 과다하게 추정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에 따라(한상열·최관, 1998),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으로 예측한 잠재시장규모를 최종적으로 도출함.
- 수용확률을 고려한 발효홍삼의 잠재시장규모는 1개월분 가격이 25만원일 때 가장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시장규모는 약 8,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4-25. 발효홍삼 농축액 가격에 대한 잠재시장규모 예측

가격(원) [A]	수용 확률(%) [B]	수용 가구수 [C]	잠재시장규모(백만 원) [(A×C)/2]
50,000	90.83	15,962,525	399,063
100,000	75.16	13,208,669	660,433
150,000	60.20	10,579,588	793,469
200,000	48.04	8,442,582	844,258
250,000	38.69	6,799,407	849,926
300,000	31.60	5,553,405	833,011
350,000	26.19	4,602,648	805,463
400,000	22.02	3,869,810	773,962
450,000	18.75	3,295,138	741,406
500,000	16.16	2,839,969	709,992

## 나. 진생베리 추출액

- 진생베리 추출액의 수요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표 4-26>과 같음. 종속변수는 진생베리 추출액을 구매할 의사가 있으면 1, 없으면 0의 값으로 정의됨. 설명변수로는 진생베리 추출액 1개월분에 대해 제시한 가격과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 최근 1년간 인삼제품 구매 경험, 중고등학생 자녀 여부가 사용됨.

표 4-26. 진생베리 추출액 변수 정의

구분	변수명	정의
종속 변수	Choice	진생베리 추출액 구매 의사 0=없음, 1=있음
설명 변수	Price	진생베리 추출액 1개월분의 제시된 가격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Income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 0=500만원 미만, 1=500만원 이상
	Experience	최근 1년 인삼제품 구매경험 0=없음, 1=있음
	Teenager	중고등학생 자녀 여부 0=없음, 1=있음

-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면 진생베리 추출액의 구매 의사는 평균이 0.5로 구매 의사가 있는 응답자 수가 전체 응답자 수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가구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보다 50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더 많았고, 지난 1년간 인삼제품을 구매해본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약 90%에 달하며, 34% 정도의 응답자가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함(표 4-27).

표 4-27. 진생베리 추출액 기술 통계량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Choice	0.50	0.50	0	1
Price	170,985	82,923	50,000	300,000
Income	0.36	0.48	0	1
Experience	0.89	0.31	0	1
Teenager	0.34	0.47	0	1

○ 진생베리 추출액 구매 의사결정에 대한 로짓모형을 최우추정법을 통해 추정 한 결과는 <표 4-28>과 같음. 제시된 금액은 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소득 수준이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1년간 인삼제품 구매여부와 중고등학생 자녀 여부는 10%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가상적으로 제시된 진생베리 추출액 가격이 낮아질수록,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인삼 구매 경험이 있는 경우, 중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 진생베리 추출액 구매 의사가 커짐을 의미함.

표 4-28. 진생베리 추출액에 대한 로짓추정결과

변수 명	계수	표준오차	유의확률
ln(Price)	-1.161***	0.180	0.000
Income	0.407**	0.206	0.048
Experience	0.543*	0.325	0.095
Teenager	0.350*	0.209	0.093
Intercept	13.067***	2.147	0.000
Log-likelihood			-296.060
Prob>chi2			0.000

주: \*p <0.1, \*\*p <0.05, \*\*\*p <0.01

- 진생베리 추출액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된 결과 1개월분에 대해 가구당 평균 107,721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9>는 진생베리 추출액의 가격대별로 잠재시장규모를 예측하여 정리한 것임. 발효홍삼과 마찬가지로 진생베리 추출액의 잠재시장규모는 가격에 수용확률을 곱하고 2010년 전국 총 가구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음. 2010년 전국 총 가구수가 17,574,067가구이고, 여기에 각 가격수준별 수용확률을 곱하면 해당 제품의 수용 가구수를 계산할 수 있음. 수용 가구수에 대응하는 가격을 곱한 것이 최종적인 잠재시장규모가 됨. 이때 잠재시장규모는 발효홍삼 농축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수적으로 예측된 잠재시장규모를 산정
- 수용확률을 고려한 진생베리 추출액의 잠재시장규모는 1개월분 가격이 50만원일 때까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시장규모는 약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4-29. 진생베리 추출액 가격에 대한 잠재시장규모 예측

가격(원) [A]	수용 확률(%) [B]	수용 가구수 [C]	잠재시장규모(백만 원) [(A×C)/2]
50,000	73.42	12,902,880	322,572
100,000	55.26	9,711,429	485,571
150,000	43.55	7,653,506	574,013
200,000	35.58	6,252,853	625,285
250,000	29.89	5,252,889	656,611
300,000	25.65	4,507,748	676,162
350,000	22.39	3,934,834	688,596
400,000	19.81	3,481,423	696,285
450,000	17.73	3,115,882	701,073
500,000	16.01	2,813,608	703,402

### 다. 파마톤정

- 파마톤정 1개월분의 제시 가격별 응답자의 구매의사를 살펴보면 모든 가격에 대해서 구매의사가 없다는 응답보다 구매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전체 응답자 중 유효한 응답을 한 467명에 대해 72%에 달하는 336명이 파마톤정에 대해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모든 가상적 가격에 대해 구매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이유는 해당제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다른 인삼제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게 느껴졌기 때문으로 추측됨.
- 그러나 실제로 국내 파마톤정 시장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제품 광고 및 홍보 증가로 해당제품의 인식이 제고될 경우 현재 형성된 수요 이외에 잠재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표 4-30. 파마톤정 가격별 구매의사

가격(원)	구매 안함(명) [A]	구매함(명) [B]	구매의사 비율(%) [B]/([A]+[B])*100]
10,000	18	56	76
20,000	23	60	72
30,000	29	62	68
40,000	30	52	63
50,000	15	51	77
60,000	16	55	77
합계	131	336	72

### 라. 새싹인삼

- 새싹인삼도 파마톤정과 마찬가지로 10뿌리에 대해 제시된 모든 가격에서 구

매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모든 가상적 가격에 대해 구매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이유는 해당식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다른 인삼제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게 느껴졌기 때문으로 추측됨.

- 전체 응답자 중 유효 응답자 467명에 대해 79%에 달하는 370명이 구매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새싹인삼 역시 재배방법과 성분 및 효능 등에 대한 광고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표 4-31. 새싹인삼 가격별 구매의사

가격(원)	구매 안함 [A]	구매함 [B]	구매의사 비율(%) [B]/(A+B)*100]
3,000	15	59	80
6,000	15	68	82
9,000	17	74	81
12,000	16	66	80
16,000	17	49	74
20,000	17	54	76
합계	97	370	79

### 3. 요약 및 시사점

- 국내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변화하는 소비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액에서 인삼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인삼제품의 소비액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반해 수삼의 소비액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인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비액 비중이 큰 인삼제품에 있어 기존 인삼제품의 개선 및 새로운 신소재 인삼 및 인삼제품의 개발 및 수요분석이 필요함. 소비액 비중이 높은 인삼제품 중 대표적인 홍삼토닉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 선호 속성을 분석한 결과 당류 저감과 **GAP** 인증에 대해 소비자들의 상당한 선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당류섭취에 대한 우려로 인삼제품에 포함된 당류를 획기적으로 줄여가는 데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존재함. 또한 제품 및 원료관리와 직결된 **GAP** 인증여부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추가적인 지불의사를 보임.
-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삼제품에 있어 당류 저감과 같은 소비자 기호 측면에서의 제품 개선과, **GAP** 인증여부와 같은 제품 및 원료관리 측면에서의 제품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 또한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써 신소재 인삼 및 인삼제품의 소비자 선호 분석을 실시하여 발효홍삼 농축액, 진생베리 추출액, 파마톤정, 새싹인삼에 대한 소비자 수용 확률과 잠재시장규모를 산정함. 발효홍삼 농축액, 진생베리 추출액의 잠재시장규모는 각각 8,500억 원, 7,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됨. 파마톤정과 새싹인삼의 경우 소비자들은 제시된 대부분의 단위가격에 대해 구매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진입할 시 기존 제품과의 경합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추정된 잠재시장규모는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

## 제 5 장

### 중장기 인삼수급 전망 및 육성 방안

#### 1. 중장기 인삼 수급 성장 잠재력 전망

##### 1.1. 인삼 수급 전망 모형 개요

- 인삼 수급 전망 모형은 크게 생산, 소비, 무역 부문으로 구성됨. 인삼제품시장의 성장을 고려하여 인삼 가공품 시장규모를 중장기 인삼 수급 모형 구축에 반영함.
- 인삼 생산부문은 면적, 단수, 생산량으로 구성됨. 인삼 식재면적은 신규 식재면적과 수확면적으로 구분하여 인삼의 생산주기를 반영함. 인삼 식재면적은 지정포와 신고포로 구성되며 신규 식재면적은 농가판매가격, 과거 해당 면적 그리고 인삼가공품 시장규모에 의해 결정됨(표 5-1). 수확면적은 2년생 인삼을 신규로 식재하여 4~6년 사이에 수확하는 인삼의 생산주기를 반영하여 과거 2, 3년 신규식재면적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함. 농가판매가격은 신고포는 인삼 농가판매가격, 지정포는 kg당 평균 수매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인삼 가공품 시장규모는 인삼제품 판매액을 적용함.

- 인삼 소비부문의 변수는 <표 5-2>와 같이 총 소비량은 생산량과 순수입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함. 소비자가격은 총 소비량과 인구에 의해 산출된 1인당 소비량으로 설명됨.
- 인삼 무역부문은 수입과 수출로 구성되고, 수출입량은 다양한 수출입 품목과 가공제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수율을 감안하여 수삼기준 환산값을 적용함. 인삼 수출량을 결정하는 변수로 과거 수출량, 수출단가, 환율, 인삼 소비자가격이 있음. 수입량을 결정하는 변수는 <표 5-3>과 같이 인삼가공품시장 규모를 수입량 결정변수로 설정함.
- 중장기 수급 전망 모형에서 사용된 시계열 자료는 <표 5-4>와 같음. 1999~2015년의 시계열 자료를 모형추정에 이용됨.

표 5-1. 생산부문 변수설정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신규식재면적	신고포	실질 농가판매가격, 과거 신규식재면적, 실질 인삼제품시장 판매액
	지정포	실질 수매가격, 과거 신규식재면적, 실질 인삼제품시장 판매액
수확면적		과거 신규식재면적
단수		과거 단수
생산량*		수확면적, 단수

주: \*는 항등식을 나타냄

표 5-2. 소비부문 변수설정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소비량	생산량, 순수입량
1인당 소비량	소비량, 인구
소비자 가격	1인당 소비량

표 5-3. 인삼 무역부문 변수설정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수출량	과거 수출량, 수출단가, 환율, 인삼 소비자가격
수입량	수입단가, 관세율, 환율, 인삼 소비자가격, 1인당 가처분소득, 실질 인삼제품시장 판매액

표 5-4. 인삼 수급 모형 관련 시계열 자료 및 출처

자 료	단 위	출 처
신규식재면적	ha	농협중앙회
수확면적	ha	농협중앙회
생산량	톤	농협중앙회, (주)KGC인삼공사
GDP 디플레이터	2010=100	통계청(KOSIS)
환율	원/달러	통계청(KOSIS)
수출입량	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금액	천 달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인삼 제품 판매액(음료류)	천 원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인삼가격	원/750g	농협중앙회
1인당 가처분소득	천만 원	통계청(KOSIS)
생산자물가지수	2010=100	통계청(KOSIS)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통계청(KOSIS)

## 1.2. 수급 모형 추정

### ○ 신규식재면적 추정

$$(1) \ln NA_{r,t} = -7.2000 + 0.8266 \ln NA_{r,t-1} + 0.7621 \ln P_{r,t} + 0.0197 \ln S_t$$

(-1.51)    (5.59)                      (1.74)                      (0.14)

$$R^2 = 0.9227$$

- $NA_r$ : 지정포 신규식재면적,  $P_r$ : 실질 구매가격,
- $S$ : 인삼제품시장 규모

$$(2) \ln NA_{w,t} = -10.2641 + 0.5715 \ln NA_{w,t-1} + 1.0807 \ln P_{w,t} + 0.1174 \ln S_t$$

(-1.18)      (2.82)                      (1.76)                      (0.62)

$$R^2 = 0.8115$$

- $NA_w$ : 신고포 신규식재면적,  $P_w$ : 실질 농가판매가격,  
 $S$ : 인삼제품시장 규모

○ 수확면적 추정

$$(3) \ln HA_{r,t} = -1.6841 + 0.0243 \ln NA_{r,t-2} + 1.1897 \ln NA_{r,t-3}$$

(-2.08)      (0.07)                      (4.03)

$$R^2 = 0.9529$$

- $HA_r$ : 지정포 수확면적,  $NA_r$ : 지정포 신규식재면적

$$(4) \ln HA_{w,t} = -5.1413 + 0.2264 \ln NA_{w,t-2} + 0.1143 \ln NA_{w,t-3}$$

(2.99)      (0.52)                      (0.22)

$$R^2 = 0.2532$$

- $HA_w$ : 신고포 수확면적,  $NA_w$ : 신고포 신규식재면적

○ 단수 추정

$$(5) \ln HD_{r,t} = 1.6678 + 0.7359 \ln HD_{r,t-1}$$

(1.83)      (5.07)

$$R^2 = 0.4970$$

- $HD_r$ : 지정포 10a당 수확량

$$(6) \ln HD_{w,t} = 0.3556 + 0.9455 \ln HD_{w,t-1}$$

(0.73)      (11.97)

$$R^2 = 0.8465$$

- $HD_w$ : 신고포 10a당 수확량

## ○ 수출량 추정

$$(7) \ln EX_t = 37.7347 + 0.2202 \ln EX_{t-1} - 2.4603 \ln P$$

$$(2.29) \quad (0.84) \quad (-1.67)$$

$$- 0.6211 \ln((P_{EX} * EXCH) / GDP * 100)$$

$$(-3.32)$$

$$R^2 = 0.8343$$

- $EX$ : 인삼 수출량,  $P$ : 실질 소비자가격,  $P_{EX}$ : 수출단가,  
 $EXCH$ : 환율,  $GDP$ : GDP 디플레이터

## ○ 수입량 추정

$$(8) \ln IM = -26.7508 + 3.8280 \ln P - 0.9761 \ln I + 0.5147 \ln S$$

$$(3.99) \quad (3.82) \quad (-1.10) \quad (1.10)$$

$$- 0.9491 \ln((P_{IM} * (1 + TE/100) * EXCH) / GDP * 100)$$

$$(-3.85)$$

$$R^2 = 0.9339$$

- $IM$ : 인삼 수입량,  $P$ : 실질 소비자가격,  $I$ : 1인당 가처분소득,  
 $S$ : 인삼제품시장 규모,  $P_{IM}$ : 수입단가,  $TE$ : 관세,  
 $EXCH$ : 환율,  $GDP$ : GDP 디플레이터

## ○ 소비자가격 추정

$$(9) \ln P_t = 9.6814 - 0.4794 \ln Qd_{t-1}$$

$$(132.99) \quad (-6.83)$$

$$R^2 = 0.4970$$

- $P$ : 실질 소비자가격,  $Qd$ : 1인당 소비량

### 1.3. 시나리오

#### 1.3.1. 중장기 인삼 수급 전망 결과

- 중장기 인삼 수급을 전망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 수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현재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가정함.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 농가판매가격과 구매가격은 과거 3년 평균값을 적용함. 수출입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관세는 20%로 일정하게 유지, 수출입단가, 환율, GDP 디플레이터는 과거 3년 평균값을 적용함.
- 다음의 <표 5-5>는 인삼제품시장 규모가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가정하였을 경우(베이스라인) 인삼의 중장기 수급을 전망한 결과임.
- 인삼 수요량은 2025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임. 2017년 인삼 수요량은 22,340톤에서 2025년에는 19,164톤까지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2018년 이후 공급량은 약 19,000톤 내외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임.
- 국내 소비량은 2017년 19,134톤에서 2018년 16,000톤 수준으로 감소하여 이후 약 16,600톤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현재 소비량(2015년 17,314톤)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 국내 생산량은 2017년 21,910에서 2018년 약 18,800톤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 국내 인삼의 식재면적이 축소되어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2025년 수출량은 2,497톤까지 감소하겠으나, 수입량은 증가하여 2025년에는 598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생산비 증가 등으로 인해 인삼 생산량

은 감소하나, 소비량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출입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인삼가격을 포함한 주요 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나, 전반적인 인삼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삼제품시장의 확대가 계속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증가하는 인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입 인삼으로의 대체 소비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 인삼 공급량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5-5. 중장기 인삼 수급전망 결과(베이스라인)

단위: 톤, kg/인

연도	수요				공급		
	소비량	1인당소비량	수출량	계	생산량	수입량	계
2017	19,134	0.38	3,206	22,340	21,910	430	22,340
2018	16,057	0.31	3,231	19,288	18,843	445	19,288
2019	16,989	0.33	2,555	19,543	18,919	624	19,543
2020	16,780	0.33	2,596	19,376	18,810	566	19,376
2021	16,688	0.32	2,573	19,261	18,681	579	19,261
2022	16,721	0.32	2,530	19,252	18,662	589	19,252
2023	16,676	0.32	2,525	19,201	18,611	590	19,201
2024	16,659	0.32	2,511	19,170	18,575	594	19,170
2025	16,667	0.32	2,497	19,164	18,566	598	19,164

### 1.3.2. 시나리오 설정 및 전망 결과

- 시나리오별 인삼수급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인삼제품시장의 규모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와 인삼산업법 개정 이후 인삼제품시장의 규모가 세 가지 형태로 변한다는 가정 하에 수급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작성함. 베이스라인은 현재의 인삼시장 여건, 즉 현행 자율적인 경작신고와 의무검사제도를 2025년까지 유지한다는 가정임. 그러나 경작신고나 검사제도와 같은

제도적인 변화를 전망모형의 함수식에서 구현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이러한 제도 변화의 효과를 인삼시장의 규모 변화로 대체하여 살펴봄.

- 인삼산업법의 경작신고제도가 자율에서 의무로 전환되고 인삼류 검사제도는 선택 검사제도로 완화된다는 가정 하에 인삼제품시장의 규모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전망함. 시나리오 1은 인삼에 대한 소비자 선호 하락 등으로 인삼 생산량과 소비량이 감소하여 인삼제품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임. 최근 3개년(2012~2014)간 인삼시장규모가 연평균 10.6% 감소하였기 때문에 시장규모가 매년 10%씩 축소되는 것으로 가정함.
- 시나리오 2는 인삼경작신고 의무화로 안전성 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 향상으로 소비량이 늘어나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가정함. 인삼시장규모 확대는 시나리오 3의 중간 수준으로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시나리오 3은 인삼산업법 개정으로 인삼검사제도가 완화되면서 인삼제품류의 생산비가 절감됨으로써 인삼제품가격이 하락하고, 제품생산과 유통이 활성화되어 인삼제품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가정함. 인삼제품시장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던 지난 3년간(2004~2006) 매년 19.3%씩 확대되었기 때문에 인삼시장규모가 20%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 <표 5-6>은 2025년 시나리오별 수급분석 전망 결과로 시나리오 1과 2의 경우 2013~ 2015년 평균 수급량보다 다소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시나리오 3의 경우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국내 생산량은 인삼제품시장의 규모 변화와 관계없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인삼제품시장 규모가 매년 10% 또는 20%씩 상승할 경우 생산량은 다소 감소하지만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인삼제품시장의 규모가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생산량은 약 19,000톤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시나리오 1은 17,000톤 내외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소비량 또한 인삼제품시장 규모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축소될 경우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매년 10% 또는 20%씩 상승할 경우 소비량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수출량은 감소하고 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3,678톤에 달하는 수출량은 시나리오 1의 경우 2,296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시나리오 2와 3의 경우 각각 2,713톤, 2,953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수입량은 인삼제품시장 규모가 감소한다고 설정한 시나리오 1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인삼의 국내생산량 감소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시장의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5-6. 시나리오별 2025년 인삼 수급 전망 결과

항목별	단위	2013~15 평균	2025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수요량	톤	21,706	19,164	17,659	20,794	22,613
- 국내소비	톤	18,028	16,667	15,363	18,081	19,660
- 1인당 소비	kg/인	0.36	0.32	0.30	0.38	0.38
- 수출	톤	3,678	2,497	2,296	2,713	2,953
공급량	톤	21,706	19,164	17,659	20,794	22,613
- 국내생산	톤	21,330	18,566	17,322	19,769	20,935
- 수입	톤	376	598	337	1,026	1,678

- <표 5-7>은 인삼에 대한 소비자 선호 하락 등으로 인삼제품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시나리오1)의 중장기 수급 전망 분석 결과임. 인삼의 전체 수요는 2017년 2만 2천 톤 수준에서 1만 7천 톤까지 감소하겠으며, 생산량 및 수입량 감소로 전체 공급량 또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표 5-7. 중장기 인삼 수급전망 결과(시나리오1)

단위: 톤, kg/인

연도	수요				공급		
	소비량	1인당소비량	수출량	계	생산량	수입량	계
2017	19,033	0.37	3,206	22,239	21,874	366	22,239
2018	15,866	0.31	3,211	19,077	18,719	358	19,077
2019	16,627	0.32	2,519	19,145	18,670	476	19,145
2020	16,293	0.32	2,531	18,824	18,416	409	18,824
2021	16,041	0.31	2,485	18,526	18,130	396	18,526
2022	15,910	0.31	2,415	18,325	17,943	382	18,325
2023	15,701	0.30	2,381	18,082	17,720	362	18,082
2024	15,517	0.30	2,338	17,855	17,509	346	17,855
2025	15,363	0.30	2,296	17,659	17,322	337	17,659

○ <표 5-8>은 안전성 확보로 인삼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경우(시나리오2)의 인삼 중장기 수급을 전망한 결과임. 전체 수요량은 소비량 감소로 2018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겠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2만 794톤 수준으로 전망됨. 공급 측면에서는 국내 생산량의 변화는 크지 않겠으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공급량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5-8. 중장기 인삼 수급전망 결과(시나리오2)

단위: 톤, kg/인

연도	수요				공급		
	소비량	1인당소비량	수출량	계	생산량	수입량	계
2017	19,235	0.38	3,206	22,441	21,943	498	22,441
2018	16,246	0.32	3,251	19,497	18,956	541	19,497
2019	17,355	0.35	2,590	19,945	19,148	797	19,945

(계속)

연도	수요				공급		
	소비량	1인당소비량	수출량	계	생산량	수입량	계
2020	17,272	0.35	2,662	19,934	19,175	760	19,934
2021	17,350	0.35	2,662	20,012	19,195	817	20,012
2022	17,562	0.36	2,649	20,211	19,339	873	20,211
2023	17,698	0.36	2,675	20,373	19,456	917	20,373
2024	17,874	0.37	2,693	20,567	19,596	971	20,567
2025	18,081	0.38	2,713	20,794	19,769	1,026	20,794

○ <표 5-9> 또한 검사제도 완화로 제품생산 및 유통이 활발해 지면서 인삼의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경우(시나리오3)의 인삼 수급 전망 결과임. 시나리오 2와는 다르게 공급부문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2018년에는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수입량 또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수요 측면에서는 2018년 전년 대비 감소하나,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9. 중장기 인삼 수급전망 결과(시나리오3)

단위: 톤, kg/인

연도	수요				공급		
	소비량	1인당소비량	수출량	계	생산량	수입량	계
2017	19,337	0.38	3,206	22,543	21,973	570	22,543
2018	16,436	0.32	3,272	19,707	19,060	647	19,707
2019	17,731	0.35	2,626	20,357	19,360	997	20,357
2020	17,777	0.35	2,731	20,508	19,514	994	20,508
2021	18,040	0.35	2,754	20,795	19,677	1,118	20,795
2022	18,452	0.36	2,774	21,227	19,978	1,249	21,227
2023	18,798	0.36	2,836	21,633	20,261	1,372	21,633
2024	19,205	0.37	2,892	22,097	20,577	1,519	22,097
2025	19,660	0.38	2,953	22,613	20,935	1,678	22,613

## 2. 인삼산업의 환경 변화와 SWOT 분석

### 2.1. 인삼산업의 환경 변화

- 인삼산업을 둘러싼 대내적 환경 변화에는 인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지속적 감소추세, 인삼제품의 소비·수요환경 변화, 인삼제품 유통환경 및 구매자 니즈 변화, 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인삼 경작의 특성인 연작장애 등으로 국내에서 점차 재배적지 확보가 어려워져 2009년 이후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감소 추세로 전환됨.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국내 수요량에 대한 공급능력이 저하되면서 인삼의 수입량 증가요

표 5-10. 인삼산업의 대내적 환경 변화

변화 여건	변화 내용
▪ 생산·재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배적지 확보의 어려움과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소 추세</li> <li>• 이동경작 패턴의 고착화와 품질저하 우려</li> <li>• 국내 수요량 대응능력 저하와 수입량 증가 전망</li> <li>• 노동력 부족과 경영비 상승으로 경영여건 악화</li> </ul>
▪ 소비·수요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의 고품질·안전 상품에 대한 니즈 급증</li> <li>• 잔류농약, 중금속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요구 증대</li> <li>• 신뢰성 있는 브랜드에 대한 절대적 충성도 심화</li> </ul>
▪ 유통환경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삼거래의 공정성·투명성, 관련 정보의 공개 필요성 급증</li> <li>• 인삼제품 유통경로의 다원화와 경쟁심화</li> <li>• 쾌적하고 안락한 구매환경에 대한 니즈 급증</li> </ul>
▪ 인삼제품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제품의 일반 및 건강식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 증가</li> <li>• 첨단 제조방법과 배양삼 등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li> <li>• 인삼제품의 규격, 표시, 인증 등에 대한 요구 증대</li> </ul>
▪ 법·제도적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삼의 재배·수확전 안전성 검사(확보)체계 구축 필요 등</li> <li>• 인삼제품의 안전성 강화, 품질보증, 표준규격화 등에 대한 요구 증대 등</li> </ul>

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인삼재배의 노동력 고령화와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삼 생산의 경영비(생산비) 상승과 인삼 실질가격의 정체 또는 하락으로 경영여건과 수익성이 악화추세임.

- 인삼수요의 소비자 니즈 및 구매태도가 빠른 변화로 소비자의 안전·고품질 상품에 대한 니즈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인삼에 대한 수요는 수삼과 인삼제품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달려있을 것으로 전망됨. 소비자의 다양한 유통기구 확산과 분화로 전통적인 인삼제품 유통경로가 더욱 분화되고 다원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인삼산업의 대외적 환경변화 역시 인삼시장 개방의 가속화와 중국 인삼산업의 육성정책과 성장, 국제 인삼시장의 구조변화와 고려삼 경쟁력의 지속적 하락 추세 등 국내 인삼산업에 부정적 측면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1995년 이후 인삼시장의 지속적 개방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한·중 FTA 협상타결은 국내 인삼산업에 대해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표 5-11. 인삼산업의 대외적 환경 변화

변화 여건	변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개방 가속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5년 이후 지속적 시장개화 추진과 국내 인삼산업 영향</li> <li>• 한-중 FTA 타결의 점진적인 국내 인삼산업 영향이 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인삼산업 육성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정부(길림성 등)의 인삼산업육성정책 활성화</li> <li>• 중국 동북3성의 인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추세</li> <li>• 중국의 인삼품종 개량 및 상품개발에 대한 집중적 지원</li> <li>• 동북3성의 인삼가공시설 현대화 등 인삼을 주력산업화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인삼시장의 구조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시장에서의 중국·미국·캐나다삼과의 경쟁심화</li> <li>• 중국시장에서 고려삼에 대한 잘못된 인식 고착화</li> <li>• 화기삼과 중국삼에 비해 국제시장 가격경쟁력 열세</li> <li>• 홍콩과 중국의 고부가가치 인삼제품 역수출현상 증가</li> </ul>

- 국제 인삼시장의 구조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홍콩 등 국제 인삼시장에서 중국, 미국, 캐나다삼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열세로 나타나 시장점유율 확대나 새로운 시장개척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2.2. 인삼산업의 SWOT 분석

- 인삼산업에서의 기회요인으로는 소비자의 건강과 건강식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시장 확대 전망, 시장개방화와 수출기회 확대 등이 있음. 소비자의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 고조로 향후 인삼 소비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인삼을 원료로 하는 고품질 건강식품 산업화와 최첨단 제약산업화의 활성화 추세와 고부가가치 시장 확대, 지속적 시장개방화 추진으로 인삼제품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위협요인으로는 재배환경 악화와 생산량 감소추세, 재배농가의 경영여건 악화, 비체계적인 인삼 유통체계와 소비자 신뢰성 저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추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음. 국내 재배적지의 부족으로 인한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소 추세 전환 등 국내 생산·재배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재배농가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경영비 상승 등 경영여건 및 수익성 또한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비체계적이고 폐쇄적인 수삼 및 인삼제품 유통질서에 따른 신뢰성 하락과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특정 브랜드 중심의 수출시장 구조에 따른 영세 및 중소기업체의 수출증대의 한계와 국제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한·중 FTA 협상 타결 후 중국 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인삼산업 육성정책으로 동북 3성 지역 인삼(장백산인삼) 재배면적 확대와 수출산업으로서의 육성정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중국, 캐나다, 미국삼의 국제시장 빠른 잠식과 고려삼의 가격경쟁력 열세에 따른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임.

- 강점요인으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고려삼의 기능성과 약효, 우수한 재배 및 제품제조 기술과 인력 확보, 인삼재배의 적지와 우수한 품질 등을 내세울 수 있을 것임. 국제시장에서 고려삼에 대한 전통적 약효와 고품질 의약품 및 건강식품으로서의 높은 인지도와 약효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확보되어 있음. 장구한 국내 재배역사로 국내 생산자들의 우수한 재배기술 확보, 다양한 인삼제품 제조기술 및 시설과 우수한 인력 자원의 확보가 용이함. 다양한 인삼제품 개발과 품질의 우수성 및 연구개발 분야(R&D)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토양 및 기후조건에서 우수한 고려삼 재배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음.

표 5-12. 국내 인삼산업의 SWOT 분석

기회요인(O)	위협요인(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의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고조와 안전성이 확보된 인삼의 소비증대 전망</li> <li>▪ 인삼의 고품질 식품산업화 추세</li> <li>▪ 다양한 인삼제품 개발과 수요 확대</li> <li>▪ 지속적 시장개방화로 시장 및 수출확대 기회</li> <li>▪ 국제시장에서 고려삼 인지도 증가 추세</li> <li>▪ 정부의 인삼산업발전에 적극적 지원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배적지의 부족 등 재배환경 악화추세</li> <li>▪ 경영비 상승 등 경영여건 악화 추세</li> <li>▪ 국내의 비체계적인 인삼유통질서와 시장구조</li> <li>▪ 한·중 FTA 타결로 인삼산업 위축우려</li> <li>▪ 국제시장에서의 고려삼의 경쟁여건 악화</li> </ul>
강점요인(S)	약점요인(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시장에서 고려삼의 약효 및 고품질 인식</li> <li>▪ 우수한 재배기술 및 제품개발 인력 확보</li> <li>▪ 약품·식품으로서 다양한 인삼제품 개발분야</li> <li>▪ 인삼제품을 국가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li> <li>▪ 토양 및 기후조건에서 인삼재배의 최적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브랜드 중심의 인삼제품 시장구조</li> <li>▪ 국제시장에서 고려삼의 잘못된 인식 고착화</li> <li>▪ 국내 수많은 제품브랜드 난립과 충돌</li> <li>▪ 인삼 재배농가 및 제조업체의 영세성</li> <li>▪ 주요 수출시장의 제도적 시장진입 규제</li> </ul>

- 약점요인에는 취약한 인삼제품 시장구조, 브랜드 난립, 영세업체의 조직화·규모화·공동화 전략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특정 브랜드 중심의 인삼제품 시장구조와 중소기업체의 위축으로 전체 산업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수많은 제품 브랜드 난립과 특정 브랜드를 제외하면 국제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로 평가받고 있음. 인삼 재배농가 및 제조업체의 영세성으로 재배농가 및 가공업체의 경영여건과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요 수출시장(중국, 미국)의 제도적 시장진입 규제문제 해결의 어려움과 시장개척 확대의 애로사항이 있음.

### 3. 인삼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안

#### 3.1. 수삼유통체계의 개선

- 수삼의 안전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삼의 검사시스템이 체계화되면 수삼을 원료로 하는 인삼류와 인삼류를 원료로 하는 인삼제품류의 경우에는 자율적 검사시스템의 강화와 함께 사후에 발생 가능한 안전성과 신뢰성 문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수삼 구매자들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수삼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동시에 수삼의 안전성 및 연근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인식하고 있음. 소비자로부터 수삼 구매 시 등급별 가격, 연근, 산지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표시제(가격, 연근, 원산지 등)를 도입해야 함. 또한, 수확 전후 일정 시기에 표본 수삼을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2. 수삼유통의 규격화

- 오랜 시간 상인 주도의 발매기가 관행처럼 이어져 온 수삼의 경우 재래시장은 물론 대형유통센터에서도 규격화된 포장품을 찾기 힘든 실정임. 이에 수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또한 낮은 상황.
- 또한 수삼은 가격의 형성에 있어 공정성이 부족하며 거래의 투명성과 거래 정보의 공개성 또한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기존의 복잡한 수삼 등급을 조정하고 등급별 기준을 명확하게 표준화 할 필요가 있으며, 등급별 가격, 연근, 산지 등에 대한 표준화된 표시제를 도입해야 함. 거래단위와 거래규격 또한 조정하여 전반적인 유통 기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
- 현재 수삼의 경우 밭에서 구매 시 80kg 단위로 유통이 되고 있음. 이런 식의 대량 유통단위를 20kg 또는 40kg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포장 규격도 소규모 단위로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거래 단위는 1kg, 2kg, 3kg, 5kg 등으로 하여 골판지 등을 이용한 포장재로 소포장 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음.
- 품목, 원산지, 중량, 연근, 등급, 크기, 뿌리수 등의 사항을 표지에 일괄 표시할 필요도 있음.

### 3.3. 재해보험제도 확대 도입

-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해보험에 가입

을 하면 예상치 못한 자연 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삼의 경우 몇몇 시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해 보험 가입 작목에 포함되지 않아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손해보험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 보험은 사과, 배, 단감, 고추, 밤, 포도 등 30종의 경우에는 농가에서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벼, 시설작물(배추, 가지, 과,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인삼, 표고버섯 등은 특정 지역을 지정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재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인삼의 경우에도 적용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자연 재해 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인삼의 경우에도 다른 식물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험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다른 식물과 달리 수확까지 4~6년이 걸리는 인삼의 경우엔 매년 보험을 갱신하다보니 보험료가 생산비용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인삼에 대해서는 농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
- 인삼 재해보험의 경우엔 가입시기의 문제점도 계속 제기되고 있음. 재해보험은 보통 싹이 나면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인삼은 가입시기가 11월이다 보니 항상 마지막에 정부지원금이 부족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였음. 따라서 다년생 작물의 특수성이 고려된 상품개발이 필요하며, 적어도 6월~8월에는 가입을 하도록 가입시기의 조정이 필요함.

### 3.4. 후계자 육성 정책

- 최근 우리나라 농업은 고령화라는 문제에 직면한 상황임. 이러한 현실에서 영농 후계자 육성을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시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 종합센터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영농 후계자 육성 정책은 만18세~만50세 미만이면서 영농종사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농업관련 대학, 학과, 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영농후계자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되며 생산기술, 경영, 마케팅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기도 함. 또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1억 원이하의 대출에 한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해 주기도 함.
- 그러나 인삼의 경우 일반 농산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 육성 또한 기술센터 등에서 별도로 운영을 해야 하지만 일반 농산물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효과가 없는 상황임.
- 또한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이 영농 후계자가 무엇인지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따라서 영농 후계자 정책에 대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나 인삼의 영농 후계자 육성에 있어 더욱더 활발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함. 후계자 육성을 통해 인삼 산업이 직면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 인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꼭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3.5. 신성장동력 발굴

- 인삼제품의 효능 및 재배환경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한 개선 방안 도출과 주요 인삼재배지역의 신산업동력 발굴 및 투자 촉진, 기능성 인삼제품을 위한 R&D 투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
- 맞춤형·복합형 제품은 최근 헬스케어 산업을 이끄는 주요 트렌드인 ‘맞춤 의료’와 유사함 개념으로서 향후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의 연령과 성별,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제품이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제품군 개발에 추가적으로 당류 함량을 줄인 다거나 발효 등의 기술 적용으로 당뇨환자 등 개별 소비자의 건강상태가 고려된 ‘맞춤형’ 제품 개발이 수요를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짐. 이처럼 개별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한 인삼제품의 개발은 인삼시장의 성장동력원이 될 수 있음.
- 또한 인접 영역 간 융합의 활성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미 식품 이외에 인삼 및 인삼제품과 관련된 제약 및 화장품 기업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의 신성장동력원 발굴도 매우 중요함. 특히나 인접 영역인 제약분야와의 융합 활성화는 바이오 신약 개발 등을 통해 인삼시장의 신성장동력 발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현재 독과점 상태인 인삼제품시장에서 판매 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제품 시장의 경쟁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효용과 인삼재배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짐.

표 5-13. 미래 유망기술 관련 농업 미래 산업

순위	기술명	관련 농업 미래산업
1	BT 기술 활용 수출품종 개발	종자
2	바이오 신약 개발	약용작물, 의약품
3	식품 안정성 신속 판정용 바이오센서 개발	측정 및 분석기기, 자동 조정 및 제어기기
4	유비쿼터스 식품 유통 시스템 기술	도매, 소매, 정보서비스 등
5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및 시스템 개발	식물성 유지, 기타화학제품(폐기물 에너지)
6	식량작물 및 원예작물 우수품종 육성	종자
7	식품부산물 고부가가치화	육가공품, 장류 유지, 기타 식료품
8	친환경 생물농약/유기비료 생산기술	농약, 비료
9	건강 맞춤형 기능성 식품 개발	음식료품
10	노동저감형 농기계 개발 기술	농업용 기계, 로봇산업

자료: 김동환, 이희재, 김유용, 이영은, 이주량, 류상모, 이미숙, 『농업분야 미래 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연구』, 2014.



## 제 6 장

### 인삼산업법 개정 방안

#### 1. 인삼산업법 개정 이유 및 방향

##### 1.1. 인삼산업 주요 쟁점 도출과정

○ 본 연구는 ‘현행 인삼산업법의 개정안 도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삼의 경작·제도·유통·검사·판매 관련 실무자들과 수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여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였음. 또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인삼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 및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농가 및 관련 기관 부처들과 논의를 진행하였음. 이를 통해 현 인삼산업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 인삼산업의 전반적인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음. 대부분의 토론 참가자들은 현행 인삼산업법이 인삼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규제 완화 방향으로 인삼산업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일부 소수 참가자들은 인삼산업법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였음.

표 6-1.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내용

날짜	장소	참석인원	토의 내용
11.02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농림축산식품부·학회·인삼농협 조합장 등 17명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른 인삼생산 농가의 견’, ‘인삼 유통실태와 유통체계 개선방안’, ‘한국인삼이 가야할 정책방향’,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인삼산업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되었음. 이후 토론에서는 김영란 법 등으로 현재 인삼산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국내 인삼산업의 발전 방안으로 경작신고의무화의 필요성, 생산의 안전성 및 지속성 문제, 수출 시 경쟁력 강화 등이 제기되었음.
11.21	서울역 대회의실	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연합회,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T한국농식품유통공사, 농협인삼검사소 관계자 등 38명	인삼산업법 개정에 관한 현장토론회가 진행되었으며, 생산 부문의 안전성 강화, 현 의무검사제의 폐지, 경작신고의무화, 연근제 폐지, 수삼의 용어 변경, 미검사품의 유통활성화, 인삼유통관행의 개선, 흑삼의 정의 추가, 태극삼 검사 규격 추가 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제기되었음.
12.06	서울 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인삼협회, 인삼검사소, 한국인삼공사 관계자 등 14명	인삼산업법의 구체적인 법조항 수정 및 신설에 대해 논의하였음. 인삼자조금단체 정의 추가, 경작신고의무화, 인삼류 색깔의 범위, 수확입회인의 범위, 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 인삼의 검사(필수검사에는 안전성검사, 표시검사, 선택검사에는 외형검사, 연근검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음.
12.20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각 인삼조합농협,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인삼공사, 한국인삼협회, 금산군청 관계자 등 27명	인삼재해보험의 문제점, 검사원의 자격 기준(인삼류검사기관 추가), 수삼유통의 규격화 필요성, 인삼 검사 교육 기관, 외형검사(현 품질검사) 기준 완화,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 포장검사 폐지 여부, 홍미삼류 등급 완화 등에 대해 각 관계부처들과 실행 가능성 여부를 논의하고 전반적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함.

## 1.2. 주요 쟁점 도출 결과: 경작 단계 안전성 강화, 유통 단계 규제 완화

-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경작 부문의 안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음. 포전에서부터 안전한 비료와 농약의 사용이 보장된다면 유통 부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신뢰 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이에 대한 해결 방향으로 현재 자율화인 경작신고제를 의무화로 전환할 것을 제기하였음. 이를 통해 정확한 인삼 재배농가의 파악이 이루어지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 할 것이라고 의견이 수렴되었음. 또한, 많은 참가자들이 ‘검사제도’ 부문을 유통 부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급하였음. 지나치게 외형위주로 이루어지는 검사제도로 인해 시간·비용적인 낭비가 큼을 호소하였으며, 검사의 기준을 대폭 완화시킬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였음. ‘연근제’의 경우 폐지를 원하는 관계자들이 많았으며, ‘연근제’를 인삼제품의 부정 유통을 조장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았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으며, 6년근 위주의 불균형 성장 등 인삼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언급하였음. 일부 관계자들은 ‘연근제’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연근 표시를 희망하는 관련업자들도 다수 존재하였음.
- 이밖에도 수삼의 정의 변경(생삼), 흑삼의 정의 추가, 태극삼 규격 기준 추가, 미검사품의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기되었음.

표 6-2. 인삼산업법의 주요 쟁점

구 분	주 요 쟁 점
인삼류의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의 연근검사, 포장검사, 품질검사의 필요성 여부</li> <li>•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성 검사의 의무화 필요성 대두</li> </ul>
경작부문의 안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작신고자율화를 의무화로 전환</li> <li>• 인삼표준경작법을 적극 권장하여 인삼의 안전 및 품질 제고 필요</li> </ul>
연근표시제 및 수삼 연근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근표시제 필요성 여부</li> <li>• 6년근이 고품질이라는 오인으로 저년근 산업시장의 발전 저해 및 부정 유통을 조장</li> </ul>

-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인삼공사, 농협인삼검사소, 인삼자조금단체, 각 인삼농협 등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삼산업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음.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을 놓고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1차 전문가간담회에서는 전반적인 인삼산업법 틀에 관해 토론을 하였음. 인삼의 색상 표현 수정, 인삼자조금단체 정의 추가, 경작신고 의무화, 검사원의 교육기관 등 주제별로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 또는 수정하였으며, 특히 인삼의 검사제도 부문과 검사증지의 부착·인쇄 기준의 개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음. 2차 간담회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개정을 놓고 개정 방향성 및 실행 가능성 여부 등을 토론하였음. 특히 시행규칙 제18조의3과 관련된 ‘별표3의2 검사의 기준방법’과 시행규칙 제15조와 관련된 ‘별표2 인삼류의 제조기준’의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별표3의2 인삼류의 검사기준’ 부문에서 안전성검사(현행 일반검사)와 표시검사는 필수검사로, 외형검사(현행 품질검사)는 선택검사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큰 이견은 없었으나, 포장검사 폐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부처별로 의견이 상충되었음. 또한, 홍미삼류 등급 구분을 대미·중미·세미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1등·2등·3등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별표2 인삼류의 제조기준’을 별표3의2 인삼류의 검사기준에 따르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음.

### 1.3. 인삼산업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 인삼산업법은 자율 경쟁을 통한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추구할 목적으로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목적과는 달리 엄격한 규제로 작용하여 인삼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과도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킴. 특히 생산자 및 제조업자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 인삼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수삼의 연근확인, 인삼류의 연근표시, 인삼류의 검사 기준 완화가 불가피함. 특히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는 검사부문의 연근검사, 품질검사, 포장검사를 현행 의무검사에서 선택검사로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안전성검사(현행 일반검사)는 현재처럼 의무검사로 하여 안전성은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표 6-3. 자체검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단위: 톤, %

연도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 받은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검사정지	경고	벌점부과	계	비중
2011	32	2	1	-	19	22	68.8
2012	36	1	5	-	11	17	47.2
2013	33	6	4	5	11	26	78.8
2014	30	4	2	-	9	15	50.0
2015	32	2	2	-	16	20	62.5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연보』, 2016.

- 인삼류의 검사를 통해 고품질의 인삼제품을 제공하기 위함에도 불구하고, 자체검사업체(전체 인삼의 검사실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38%)의 행정처분 실적을 살펴보면 지정취소, 검사정지, 경고,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비중이 대체로 50%를 초과함. 이는 기존 검사제도의 미흡함을 시사하며, 검사제도의 개정이 필요함.
- 국내인삼의 삼종별 검사 실적을 살펴보면 홍삼의 검사 비중이 가장 큼. 이는 1966년 홍삼전매제가 폐지되면서 홍삼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가공제품의 원료로 홍삼의 수요가 가장 크기 때문임. 태극삼, 흑삼의 경우 검사물량이 미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삼산업법에 따라 품질·

연근·포장·표시검사 모두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시간·비용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표 6-4. 삼종별 검사 실적

단위: 톤

연도	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
2001	240	65	428	-
2006	481	50	525	-
2011	823	65	382	-
2013	461	74	282	7
2015	479	82	210	11

주: 국내산 실적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인삼 통계자료집』, 2016.

- 또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공중과 방송을 통해 인삼의 농약잔류실태가 공개되면서 인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음.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인삼 및 인삼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현행 신고제인 인삼의 경작신고를 의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아가 수급 관리 및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경작신고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이를 통해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15년 잔류농약 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체 농가 중 미신고 농가의 비중이 62.5%(24건 중 16건)을 차지하였음. 이는 미신고 농가에서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함. 또한, 인삼자조금단체에 경작신고 내용을 제공하여 경작신고에 관한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미신고 농가의 무임승차문제가 완화되고 자조금의 거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인삼산업법은 인삼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경제적 자율성 확대를 통한 인삼산업의 발전을 도

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함. 또한, 인삼산업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은 강화함으로써 고려 인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현 인삼산업법이 개정되어야 함.

## 2. 주요 쟁점별 개정 방향

### 2.1. 인삼 경작신고제

- 현 인삼산업법은 인삼 경작자가 경작지 관할 지자체·조합에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규칙에 따라 경작신고를 희망하는 자는 매년 6월 1일까지 조합 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은 신고인, 경작지 주소, 식재면적, 식재연월일, 수확예정연근, 계약경작 여부 등임.
- 2015년 미신고 인삼 재배면적은 전체 인삼 재배면적의 약 18% 수준으로 추정되며 미신고 농가의 안전성 부적합률(5.7%, 262건 중 16건)이 신고농가(1.3%, 683건 중 9건)보다 더 높았음.
- 또한, 2015년 5월 인삼의무자조금단체가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농가는 자조금 납부 없이 업계 공동의 홍보·관측활동에 따른 이익만 누리고 있어 업계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토론회 및 간담회 의견수렴 결과, 경작농가 및 업계는 경작신고의무화에 대부분 찬성하였으며, 경작신고의무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청정한 인삼의 생산을 기대하고 있음.

- 따라서 경작신고 자율화 체제인 현 인삼산업법은 향후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경작신고를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신고 내용을 인삼의무자조금단체에 제공하여 자조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수행되어야 함.

## 2.2. 인삼류 검사제도

- 현 인삼산업법은 판매·수출 목적의 인삼류 제조자·수집자, 또는 수입자는 자체검사 또는 인삼류검사기관(농협인삼검사소)의 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음.
- 고려인삼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품질 관리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인삼의 검사가 의무화되었지만, 현 품질기준이 지나치게 외형 중심으로 등급·세부품명을 구분하고 있어 불필요한 시간·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엄격한 검사 제도는 고려인삼의 성가 유지에는 기여하였으나, 불필요한 검사항목까지 검사를 의무화하여 재배농가·업계에서는 규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현 인삼산업법은 일반검사기준, 개별검사기준(연근·품질·포장·표시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음.
- 따라서 모든 검사항목을 의무화하는 현 인삼산업법을 일부 검사항목의 선택 검사제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시간·비용을 절약하고 인삼류의 유통을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일부 지역 및 유통업계 관련자들이 토론회 및 간담회에서 검사제 전면 폐지 또는 희망검사제 전면 도입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수입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로 인해 불가피한 것으로 의견을 수렴함.
- 향후 인삼산업법은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검사항목을 선택검사제로 전환하여 인삼류 제조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유통을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음.

### 2.3. 연근 표시제 및 수삼 연근확인

- 현 인삼산업법은 인삼류 제조자가 인삼을 연근별로 구분·제조하고, 해당 제품이나 용기 또는 포장에 연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5년근 이상의 수삼 수확 시에는 인삼조합에 연근 확인 신청이 가능함.
- 연근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6년근 수삼만이 고품질의 수삼인 것으로 오인시켜 저년근 인삼류의 부정 표시·유통을 조장하여 왔음. 수삼의 연근확인은 경작자의 신청을 받아 인삼조합에서 수행하여야 하나, 인력부족으로 실수요업체가 사실상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6년근에 집중된 인삼시장을 보다 다양화시키기 위하여 저년근 시장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수삼의 연근확인 부문을 내실화 하여야 함. 즉, 현 인삼류 연근표시 의무제를 제조업체 자율사항으로 전환하고, 수삼 연근확인은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 2.4. 인삼산업법상 흑삼의 정의 추가

- 현 인삼산업법에서는 흑삼을 정의·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홍삼, 백삼, 태극삼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인삼’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 2009년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법 개정(2011.7) 및 시행규칙 개정(2012.1) ‘그 밖의 인삼’의 하나로 흑삼을 포함시켰음.
- 이후에도 관련업계에서 흑삼을 인삼의 정의로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었으나, 역사성 및 대중성 부족으로 시기상조로 판단되어 반영되

지 못하였음. 그러나 기존 인삼류인 홍삼·태극삼·백삼 시장은 포화상태이며 소비트렌드는 점차 다양해지는 환경에 노출되었음.

-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인삼산업 발전을 지원하여 전체 인삼시장의 규모를 확장·발전시킬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함. 즉, 인삼시장의 확대·발전을 위해 인삼산업법 상 흑삼의 정의를 추가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흑삼 지표성분 기준 신설 및 제조방법 표준화 등을 시행규칙 등에 반영하여야 함.

### 3. 인삼산업법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3.1. 인삼산업법 개정 주요 내용

##### 3.1.1. 인삼산업법의 목적

- 자율 경쟁을 통한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는 달리 현 인삼산업법은 엄격한 규제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과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삼의 부정 유통이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을 중요시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인삼의 고품질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궁극적인 인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새롭게 재정립될 필요성이 있음.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법은 <u>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b>제1조(목적)</b> ----- <u>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인삼 및 인삼류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u></p>

### 3.1.2. 인삼 정의 개정 및 인삼자조금단체 정의 신설

○ 인삼 경작자 보호를 위하여 인삼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인삼류 시장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흑삼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삼자조금단체가 출범함(2015.5.14.)에 따라 향후 민간 주도의 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인삼산업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담당하였던 농축산물의 판매·유통을 전담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출범(2017. 1. 1.)함에 따라 생산자단체의 자구수정이 필요함.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인삼"이란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p> <p>2. "수삼"(水蔘)이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p> <p>3. (생 략)</p> <p>&lt;신 설&gt;</p> <p>4. ~ 9. (생 략)</p> <p>10. "인삼류제조"란 수삼을 원료로 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p> <p>11. (생 략)</p>	<p><b>제2조(정의)</b> ----- -----.</p> <p>1. ----- ---- 식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것--.</p> <p>2. "생삼"(生蔘) 또는 "수삼"(水蔘)이란 -----.</p> <p>3. (현행과 같음)</p> <p>3의2. "흑삼"(黑蔘)이란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찌서 익혀 말리는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p> <p>4. ~ 9. (현행과 같음)</p> <p>10. ----- ----- 흑삼, 태극삼----- -----.</p> <p>11.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12.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u>농업협동조합중앙회</u> 및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p> <p>&lt;신 설&gt;</p>	<p>12. ----- ----- ----- <u>농협경제지주회사</u> ----- ----- -----.</p> <p>13. "인삼자조금단체"란 「<u>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u>」 제6조에 따라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인삼 관련 자조금단체를 말한다.</p>

### 3.1.3.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

- 현행 인삼 경작신고는 자율사항으로 되어 있어 미신고 경작농가의 파악이 곤란하며, 이에 따라 인삼의 안전관리 및 인삼의무자조금의 거출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인삼 전체 농가 중에서 미신고 농가의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부적합률은 5.7%(2015년 기준)이었음. 반면, 경작신고 농가의 경우 부적합률이 1.3%에 불과하여 미신고 농가는 경작신고 농가에 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재배 단계부터 인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삼의무자조금의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자율적인 인삼 경작신고를 의무화하여 경작신고내용을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인삼자조금단체는 인삼 경작농가를 대상으로 경작면적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부과·징수하여 인삼 소비촉진, 품질향상 및 수급조절 등 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 인삼자조금단체가 의무거출금을 부과·징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인삼의무자조금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인삼의 경작신고가 의무화가 되면 인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여 소비자의 신뢰가 제고되고, 인삼의무자조금의 조성·적립이 확대되어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현 행	개 정 안
<p><b>제4조(경작신고)</b> ①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u>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조합(이하 "조합등"이라 한다)</u>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등에 상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③ 조합등은 제1항에 따른 경작신고내용을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p>&lt;신설&gt;</p>	<p><b>제4조(경작신고)</b> ① ----- ----- ----- <u>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u>----- ----- <u>신고하여야 한다.</u> ----- ----- -----.</p> <p>② ----- ----- ----- ----- ----- ----- <u>하여야 한다.</u></p> <p>1.2. (현행과 같음)</p> <p>③ ----- <u>제1항 및 제2항</u>----- ----- -----.</p> <p>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작신고를 한 자와 제2항에 따라 상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한 자(이하 "경작신고인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제3항에 따라 조합등에서 통보한 경작신고내용을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u></p>

(계속)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경작신고인등의 동의 방법과 절차,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하는 경작신고내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3.1.4.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필요사항 반영

- 안전한 인삼 생산을 위해서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재 농촌진흥청장이 인삼류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고시하고 있는 표준인삼경작방법에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음.
- 인삼 경작농가의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확산을 유도하여 안전한 인삼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인삼경작자의 소득 증진과 인삼류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와 협의하여 <u>표준인삼경작방법</u>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 ① ----- ----- ----- <u>표준인삼경작방법</u> 및 수확후 관리기술과 관련된 사항(이하 "<u>표준인삼경작방법등</u>"이라 한다)--.</p> <p>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u>표준인삼경작방법등</u>을 고시함에 있어 「<u>농수산물 품질관리법</u>」 제6조에 따른 <u>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을 반영하여야 한다.</p>

(계속)

현 행	개 정 안
<p>② 농촌진흥청장 및 조합등은 인삼경작자에게 제1항에 따른 <u>경작방법</u>에 따라 경작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p>	<p>③ ----- ----- <u>표준인삼경작방법</u>등-----.</p>
<p>③ 인삼경작자는 인삼을 경작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경재배(水耕栽培)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u>화학비료</u>를 사용할 수 있다.</p>	<p>④ ----- ----- ----- ----- ----- ----- <u>배양액</u>을 -----.</p>

### 3.1.5. 수삼의 연근확인 개선 및 수수료 근거규정 신설

- 현행 수삼의 연근확인은 경작농가의 희망에 따라 인삼조합의 검사담당 직원이 수확 현장에 입회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검사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수료 부과 규정도 없어 조합과 경작농가 간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조합의 검사담당 직원 외에 인삼자조금단체에서 추천한 수확입회인도 연근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연근확인 수수료의 부과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수삼의 연근확인에 필요한 인력이 확대되고, 연근확인 수수료 부과 근거규정이 마련되면 조합의 연근확인 부담이 경감되고 경작농가와 의 갈등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현 행	개 정 안
<p><b>제9조(수삼의 연근확인)</b> ① 인삼경작자가 5년근 이상의 수삼을 수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연근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검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수확에 참여하여 수삼의 연근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근확인방법과 절차 및 검사담당 직원의 자격요건 등 연근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lt;신 설&gt;</p>	<p><b>제9조(수삼의 연근확인)</b> ① -----                  -- 수삼-----                  -----                  -----.</p> <p>② -----                  ----- <u>직원 또는 인삼자조금단체의 장이 추천한 수확입회인(이하 "검사담당직원등"이라 한다)</u>--.</p> <p>③ 조합은 수삼의 연근확인을 받으려는 인삼경작자에게 연근확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연근확인방법과 절차, 검사담당직원등의 자격요건 및 연근확인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 3.1.6. 인삼류제조업 신고 수수료 근거규정 마련

- 현재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있으나, 인삼산업법에는 수수료 부과 근거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인삼산업법에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수수료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민원 발생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됨.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유통이 활성화되어 인삼 경작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관련 인삼제품류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됨.

현 행	개 정 안
<p><b>제15조(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①</b>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고 해당 제품이나 그 용기·포장 등에 해당 연근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lt;신 설&gt;</p> <p>② (생 략)</p> <p>③ (생 략)</p> <p>④ 제3항의 경우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b>제15조(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①</b> ----- ----- <u>홍삼, 태극삼</u> ----- ----- ----- <u>연근을 표시할 수 있다.</u> &lt;후단 삭제&gt;</p> <p>②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제조한 제품이나 그 용기·포장 등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⑤ <u>제4항</u>----- ----- -----.</p>

### 3.1.8. 인삼류 검사제도 완화

- 현행 인삼류 검사제도는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모두 합격하여야만 판매 또는 수출이 가능하여 새로운 유통·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현 행	개 정 안
<p>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제조한 홍삼, <u>태극삼</u>,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한 수집자</p> <p>3. 홍삼, <u>태극삼</u>,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p> <p>② (생 략)</p> <p>③ 제1항에 따른 검사는 <u>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하되, 그 검사의 기준·방법 및 품질보증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p> <p>&lt;신 설&gt;</p> <p>④ ~ ⑥ (생 략)</p> <p>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수수료</u>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p>	<p>2. ----- ----- <u>흑삼, 태극삼</u>----- -----</p> <p>3. ----- <u>흑삼, 태극삼</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은 <u>안전성검사·연근검사·외형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하되, 그 중 연근검사와 외형검사는 검사를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검사한다.</u></p> <p>④ 제3항에 따른 각 검사항목의 기준·방법 및 품질보증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p> <p>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p> <p>⑧ ----- <u>제7항</u>----- ----- ----- <u>검사 수수료</u>----- -----.</p>

### 3.1.9. 미검사품의 보관·진열 규제 완화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인삼류 판매자는 검사를 받지 않은 인삼류를 영업장소에 보관할 수 없고, 검사품의 포장도 뜯어 진열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검사품이나 개봉된 검사품은 영업장소내 보관·진열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불합리한 미검사품의 보관·진열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삼류 판매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됨.

현 행	개 정 안
<p><b>제19조(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①</b>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u>검사에 불합격된 홍삼</u>,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u>검사에 불합격된 홍삼</u>,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수출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중인 것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p>	<p><b>제19조(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①</b> -- -- <u>흑삼, 태극삼</u>----- ----- ----- ----- ----- -----.</p> <p>② ----- ----- <u>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불합격한 홍삼, 흑삼</u>----- ----- -----.</p> <p>③ ----- ----- - <u>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검사기준에</u> - - <u>흑삼, 태극삼</u>----- ----- -----</p>

(계속)

현 행	개 정 안
<p>여금 해당 제품을 압류하게 하거나 제 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제품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p> <p>④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 같은 조 제1항 -----</p> <p>-----</p> <p>-----</p> <p>④ ----- <u>흑삼, 태극삼</u> -----</p> <p style="text-align: right;">----- 제17조제5항 -----</p> <p>-----</p> <p>- 판매하거나 그 내용물을 -----</p> <p>-----</p> <p>-----</p> <p>⑤ (현행과 같음)</p>

### 3.1.10. 인삼류 검사원 교육기관 변경

- 현행 인삼류 검사원의 교육기관에 인삼류 검사기관도 포함하여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다만, 인삼류 검사기관에는 자체검사업체도 포함되므로 인삼검사소에 한하며, 전문기관인 인삼검사소가 교육의 최적 기관이나, 모든 업무를 한꺼번에 담당하기에는 현재 여력이 부족함. 따라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삼검사소 모두 가능하도록 수정.

현 행	개 정 안
<p><b>제17조의5(검사원의 자격 등) ①·②</b> (생략)</p> <p>③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u>국립농산물 검사기관의 장이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u></p> <p>④ (생략)</p>	<p><b>제17조의5(검사원의 자격 등) ①·②</b> (현행과 같음)</p> <p>③ ----- <u>국립농산물 검사기관 또는 인삼류검사기관</u>----- ----- -.</p> <p>④ (현행과 같음)</p>

### 3.2. 인삼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이 가능한 인삼제품류의 용어를 인삼산업법에 맞게 정비하고, 인삼류 원산지 표시의무가 같은 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검사의 예외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 3.2.1. 인삼제품류의 종류 정비(제3조)

- 인삼산업법 제2조(정의)에 따라 인삼류는 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 및 그 밖의 인삼을 포함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인삼류” “홍삼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제조업계나 소비자의 혼선이 있어 정비함.

현 행	개 정 안
<p><b>제3조(인삼제품류의 종류)</b>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인삼제품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p>	<p><b>제3조(인삼제품류의 종류)</b> ----- ----- ----- -----.</p>

(계속)

현 행	개 정 안
1. <u>농축인삼류</u> 2. <u>인삼분말류</u> 3. <u>농축홍삼류</u> 4. <u>홍삼분말류</u> 5. <u>당침(糖沈)인삼</u> 6.·7. (생 약)	1. <u>농축 인삼류</u> 2. <u>분말 인삼류</u> <삭 제> <삭 제> 5. <u>당침(糖沈) 인삼류</u> 6.·7. (현행과 같음)

### 3.2.2.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등 삭제(현행 제3조의2 삭제)

○ 인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인삼산업법 제15조제2항에 명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삭제함.

현 행	개 정 안
<u>제3조의2(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u>	<삭 제>

### 3.2.3. 인삼류의 검사의 예외 규정 정비

○ 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인삼제품류의 제조자에게 인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부 인삼류에 대해 검사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나, 흑삼과 그 밖의 인삼은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하고, 자가제조한 인삼류를 인삼류 수집자 간에 거래하는 경우도 검사의 예외로 인정하여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검사의 예외)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u>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그 원산지, 무게 및 제조자와 판매자의 성명을 표기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4조(검사의 예외) ----- ----- ----- 다음 각 호의 ----- ----- ----- ----- -----</p> <p>1. <u>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인삼류의 도매가 가능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홍삼·흑삼·태극삼·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그 원산지, 무게 및 제조자와 판매자의 성명을 표기하여 해당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류를 제조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u></p> <p>2. <u>인삼류의 수집자간에 법 제1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가제조한 홍삼·흑삼·태극삼·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그 원산지, 무게 및 제조자와 판매자의 성명을 표시하여 거래한 경우</u></p>

### 3.3.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인삼류의 색상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선하고 인삼산업법 개정으로 경작신고 의무화, 수삼의 연근확인 제도 개선, 인삼류 검사제도 개편 등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차·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3.3.1. 인삼류 색상 현실화

- 홍삼, 태극삼 및 흑삼의 색상을 특정 색상에서 범위로 정의하여 소비자와 인삼류 제조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홍삼의 색깔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고, 색상의 용어가 전문 용어로 사용되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의2(인삼류의 색상) ①</b>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이란 <u>담적갈색·담황갈색·다갈색 또는 <u>농다갈색</u></u>을 말한다.</p> <p>&lt;신 설&gt;</p> <p>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이란 <u>담황색·백황색 또는 <u>담갈색</u></u>을 말한다.</p>	<p><b>제1조의2(인삼류의 색상) ①</b> ----- ----- ----- ----- ----- <u>농다갈색(담적갈색부터 농다갈색의 범위 안에 있는 색상을 포함한다)</u> ----- --.</p> <p>② 법 제2조제3의2호에서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u>"이란 <u>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담흑갈색부터 흑다갈색의 범위 안에 있는 색상을 포함한다)</u>을 말한다.</p> <p>③ ----- ----- ----- <u>담갈색(담황색부터 담갈색의 범위 안에 있는 색상을 포함한다)</u>-----.</p>



(계속)

현 행	개 정 안
<p>청장을 말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장(이하 “조합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등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삼경작확인서를 <u>신고인</u>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 ----- ----- ----- ----- ----- <u>경작신고인</u> ----- -----</p>

### 3.3.4. 수삼의 연근확인 개선

- 조합의 검사담당 직원 외에 인삼자조금단체에서 추천한 수확입회인도 연근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연근확인 수수료의 부과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p><b>제8조(수삼의 연근확인) ① (생 략)</b>                      ②조합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u>검사담당직원</u>으로 하여금 수확에 입회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u>검사담당직원</u>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u>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u>(이하 “<u>중앙회장</u>”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p>	<p><b>제8조(수삼의 연근확인) ① (현행과 같음)</b>                      ②-----                      ----- <u>검사담당직원 또는 인삼자조금단체의 장</u>이 추천한 수확입회인(이하 “<u>검사담당직원등</u>”이라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③----- <u>검사담당직원등</u>-----                      - <u>조합의 장</u>-----                      -----</p>

(계속)

현 행	개 정 안
<p>1. <u>농업협동조합중앙회</u>(이하 “<u>중앙회</u>”라 한다) 또는 조합에서 2년이상 인삼경작지도 및 인삼제조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p> <p>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인삼관련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u>중앙회</u> 또는 조합의 직원</p> <p>&lt;신 설&gt;</p> <p>④ (생 략)</p>	<p>1. <u>농협경제지주회사</u> ----- ----- -----</p> <p>2. ----- ----- ----- ----- ----- ----- <u>농협경제지주회사</u> -----</p> <p>3.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이하 “<u>자체검사업체</u>”라 한다)에서 2년이상 인삼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연근확인이 필요한 수확 예정지의 계약경작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직원 중 <u>인삼자조금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중앙회장</u>은 연근확인을 한 수삼의 포장별 봉인 및 표시방법 기타 연근확인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⑤ <u>농협경제지주회사</u>의 대표이사는 --- ----- ----- -----.</p> <p>⑥ 조합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근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p>

### 3.3.5. 인삼류 검사기준 개편

- 현행 인삼류 검사제도는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되어 새로운 유통·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연근검사나 외형검사(현행 품질검사)는 선택검사로 전환하고, 포장검사는 폐지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p><b>제18조의3(검사의 기준등) ①</b>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인삼류의 <u>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u> 및 표시검사등의 기준·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 다만, 수출입하거나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되, 그 기준을 달리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수출의 경우 : 수출상대국 또는 수출 상대방의 요청(수입면장 등)에 의하여 검사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가 별표 3의2의 검사중 <u>원산지 및 연근검사</u>외의 검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2. (생략)</p>	<p><b>제18조의3(검사의 기준등) ①</b>----- ----- <u>안전성검사·</u> <u>연근검사·외형검사</u> ----- ----- ----- ----- ----- ----- ----- ----- ----- -----</p> <p>1. ----- ----- ----- ----- ----- ----- <u>연근검사와 표시검사의</u> <u>원산지외의</u> ----- -----</p> <p>2. (현행과 같음)</p>

(계속)

현 행	개 정 안
<p>3. 면세점 판매의 경우: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는 절편 및 절삼 인삼류에 대하여 별표 3의2 제2호나목4)의 표시검사기준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3. ----- ----- ----- 제2호라목의 ----- -----.</p> <p>② (현행과 같음)</p>

### 3.4. 별표 주요 개정안

-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홍삼, 태극삼, 백삼 및 흑삼의 제조기준을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음. 별표3의2 용어의 정리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인삼류의 검사기준은 별표3의2 검사기준에 따라 가공·선별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인삼제품류의 검사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인삼산업법을 개정하고자 하여 시행규칙 제18조의3와 관련된 별표 3의2도 개정이 필요함. 용어의 정리 부분은 별표2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필수검사인 안전성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외형검사(품질검사)와 연근검사는 선택검사로, 표시검사는 필수검사로 개정하고자 함. 포장검사기준은 포장검사를 폐지함에 따라 삭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p><b>별표2 인삼류의 제조기준</b> (시행규칙 제15조관련)</p> <p>용어의 정의</p> <p>가. "머리"라 함은 뿌리인삼의 뇌두(腦頭) 또는 노두(蘆頭)를 말한다.</p> <p>나. "몸통"이라 함은 인삼뿌리의 동체(胴體) 또는 주근(主根)을 말한다.</p> <p>다. "다리"라 함은 몸통에 붙은 지근(支根)을 말한다.</p> <p><u>라~하. (생략)</u></p> <p><u>거~서. (생략)</u></p>	<p>가. (현행)</p> <p>나. (현행)</p> <p>다. (현행)</p> <p><u>라~하. (삭제)</u></p> <p><u>거~서. (삭제)</u></p>
<p>2. 인삼류의 제조기준</p> <p>나. 제조기준</p> <p>(2) 인삼류별 제조공정 및 규격</p> <p>(가)홍삼</p> <p>1) 홍삼은 홍삼본삼, 원형홍삼, 홍미삼류 및 기타 홍삼류로 분류하여 제조한다.</p> <p>2) 품목별 제조기준</p> <p>가) 홍삼본삼</p> <p>① 원료수삼을 선별·세척하여 고르게 익힐 수 있도록 크기별로 구분한다.</p> <p>② 증삼장치에서 수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찌서 익힌다.</p> <p>③ 삼체의 수분함량이 15.0%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다.</p> <p>④ 별표 3의2의 인삼류의 검사기준(이하 "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p> <p>⑤ 계량하여 포장한다.</p>	<p>1) 홍삼은 홍삼본삼, 원형홍삼, 홍미삼류 및 단순가공 홍삼류로 분류하여 제조한다.</p> <p>2) 제조기준</p> <p>가) 원료수삼을 선별·세척하여 고르게 익힐 수 있도록 크기별로 구분한다.</p> <p>나) 증삼장치에서 수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찌서 익힌다.</p> <p>다) 별표 3의2의 인삼류의 검사기준(이하 "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표 삭제&gt;</p>

(계속)

현 행	개 정 안
<p>나) 원형홍삼</p> <p>① 원료수삼을 가)의 ① 내지 ③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되,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을 유지하도록 제조한다.</p> <p>②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p> <p>③ 계량하여 포장한다.</p> <p>다) 홍미삼류</p> <p>① 원료미삼은 가)의 ①, ②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고, 제조된 홍삼으로부터 분리한 다리부분 및 잔뿌리 등은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p> <p>② 계량하여 포장한다.</p> <p>라) 기타 홍삼류</p> <p>① 절삼홍삼은 홍삼본삼을 가로로 2등분하여 절단한다.</p> <p>② 절편홍삼은 홍삼본삼을 가로·세로 또는 경사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다.</p> <p>③ 분쇄홍삼은 홍삼본삼 및 홍미삼을 파쇄기 등으로 파쇄한 것을 말하며, 파쇄한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p>	
구 분	규 격 기 준
중 절 홍 삼	○2mesh(11100 $\mu$ 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 $\mu$ m)의 체위에 남

현 행		개 정 안
세 절 홍 삼	<p>는 것이 90% 이상인 것</p> <p>○10mesh(1900<math>\mu</math>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math>\mu</math>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p>	
파 쇄 홍 삼	<p>○20mesh(864<math>\mu</math>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math>\mu</math>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p>	
<p>(나) 태극삼</p> <p>1) 태극삼은 태극본삼, 원형태극삼, 태극미삼류 및 기타 태극삼류로 분류하여 제조한다.</p> <p>라) 기타 태극삼류는 절삼태극삼, 절편태극삼 및 분쇄태극삼을 말한다.</p> <p>2) 품목별 제조기준</p> <p>가) 태극본삼</p> <p>① 원료수삼을 선별·세척하여 고르게 익힐 수 있도록 크기별로 구분 한다.</p> <p>② 열수처리장치에서 물로 익힌다.</p> <p>③ 삼체의 수분함량이 15.0%이하가 되도록 건조한다.</p> <p>④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p> <p>⑤ 계량하여 포장한다.</p> <p>나) 원형태극삼</p> <p>① 원료수삼을 가)의 ① 내지 ③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되,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유지되도록 제조한다.</p> <p>②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p> <p>③ 계량하여 포장한다.</p>		<p>1) 태극삼은 태극본삼, 원형태극삼, 태극미삼류 및 단순가공 태극삼류로 분류하여 제조한다.</p> <p>라) 단순가공 태극삼류는 절삼태극삼, 절편태극삼, 중절태극삼, 세절태극삼 및 파쇄태극삼을 말한다.</p> <p>가) 원료수삼을 선별·세척하여 고르게 익힐 수 있도록 크기별로 구분 한다.</p> <p>나) 열수처리장치에서 물로 익힌다.</p> <p>다) 별표 3의2의 인삼류의 검사기준(이하 “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표 삭제&gt;</p>

(계속)

현 행	개 정 안								
<p>다) 태극미삼류</p> <p>① 원료미삼은 가)의 ①,②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고, 제조된 태극삼으로부터 분리한 다리부분 및 잔뿌리 등은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p> <p>② 계량하여 포장한다.</p> <p>라) 기타 태극삼류</p> <p>① 절삼태극삼을 태극본삼을 가로로 2등분하여 절단한다.</p> <p>② 절편태극삼은 태극본삼을 가로·세로 또는 경사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다.</p> <p>③ 분쇄태극삼은 태극본삼 및 태극미삼을 파쇄기 등으로 파쇄한 것을 말하며 파쇄한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p> <p>④ 계량하여 포장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288 1422 785 1727"> <thead> <tr> <th>구 분</th> <th>규 격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중절태극삼</td> <td>○2mesh(11100<math>\mu</math>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math>\mu</math>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td> </tr> <tr> <td>세절태극삼</td> <td>○10mesh(1900<math>\mu</math>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math>\mu</math>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td> </tr> <tr> <td>파쇄태극삼</td> <td>○20mesh(864<math>\mu</math>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math>\mu</math>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td> </tr> </tbody> </table>	구 분	규 격 기 준	중절태극삼	○2mesh(11100 $\mu$ 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 $\mu$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세절태극삼	○10mesh(1900 $\mu$ 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 $\mu$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파쇄태극삼	○20mesh(864 $\mu$ 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 $\mu$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구 분	규 격 기 준								
중절태극삼	○2mesh(11100 $\mu$ 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 $\mu$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세절태극삼	○10mesh(1900 $\mu$ 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 $\mu$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파쇄태극삼	○20mesh(864 $\mu$ 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 $\mu$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p>(2) 인삼류별 제조공정 및 규격</p> <p>(다)백삼</p> <p>1) 백삼은 백삼본삼, 백미삼류, 잡삼류 및</p>	<p>(다)백삼</p> <p>1) 백삼은 백삼본삼(피부백삼 포함), 백미삼류, 단순가공 백삼류, 잡삼류 및</p>								

현 행	개 정 안
<p>기타 백삼류로 분류하여 제조한다.</p> <p>라) 기타 백삼류는 절삼백삼, 절편백삼, 분쇄백삼 및 원형백삼을 말한다.</p> <p>2) 품목별 제조기준</p> <p>가) 백삼본삼</p> <p>① 직삼은 직립형태의 것중 표피가 제거된 것을 말한다.</p> <p>② 곡삼은 다리부분과 몸통의 일부까지 구부러 둥글게 말아감은 것중 표피가 제거된 것을 말한다.</p> <p>③ 반곡삼은 다리부분을 구부러 반곡형태로 말아감은 것중 표피가 제거된 것을 말한다.</p> <p>④ 피부직삼은 직립형태의 것중 표피가 제거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p> <p>⑤ 피부곡삼은 다리부분은 물론 몸통의 일부까지도 구부러 둥글게 말아감은 것중 표피가 제거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p> <p>⑥ 피부반곡삼은 다리부분을 구부러 반곡형태로 말아감은 것중 표피가 제거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p> <p>⑦ 기타 세부적인 제조방법은 아래와 같다.</p> <p>㉠ 원료수삼을 선별·세척한다. 세척시는 60분 이상 물에 침지시켜서는 아니된다.</p> <p>㉡ 몸통에서 다리외의 결뿌리 및 잔뿌리를 제거한다.</p>	<p>원형백삼으로 분류하여 제조한다.</p> <p>라) 단순가공 백삼류는 절삼백삼, 절편백삼, 중절백삼, 세절백삼 및 파쇄백삼을 말한다.</p> <p>2) 제조기준</p> <p>가) 원료수삼을 선별·세척하여 고르게 익힐 수 있도록 크기별로 구분한다.</p> <p>나) 증삼장치에서 수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찌서 익힌다.</p> <p>다) 별표 3의2의 인삼류의 검사기준(이하 "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표 삭제&gt;</p>

(계속)

현 행	개 정 안
<p>㉔ 직삼, 곡삼 및 반곡삼의 경우 표피를 제거한다.</p> <p>㉕ 곡삼, 반곡삼 피부곡삼 및 피부반곡삼의 경우는 삼체의 수분함량이 50%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 다음 고유한 형태로 구부린다.</p> <p>㉖ 삼체의 수분함량이 15.0%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다.</p> <p>㉗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p> <p>㉘ 계량하여 포장한다.</p> <p>나) 백미삼류</p> <p>① 백미삼은 제조된 백삼으로부터 분리한 다리 또는 잔뿌리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p> <p>② 표피를 제거한 것은 크기에 따라 백대미와 백중미로 구분한다.</p> <p>③ 표피가 제거되지 아니한 것은 크기에 따라 피대미, 피중미 및 세미로 구분한다.</p> <p>다) 잡삼류</p> <p>① 생건삼은 표피·머리의 형태가 피부본삼과 유사하나 몸통의 직경이 10mm 미만이며 개체당 무게가 6g 미만인 것을 말한다.</p> <p>② 춘미삼은 묘삼을 건조한 것을 말한다.</p> <p>③ 파삼은 인삼의 원형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병충해 등의 피해정도가 삼체표면의 2/3 이상인 것을 말한다.</p> <p>라) 기타 백삼류</p> <p>① 절삼백삼은 백삼본삼을 가로로 2등분하여 절단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절편백삼은 백삼본삼을 가로·세로 또는 경사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것을 말한다.</p> <p>③ 분쇄백삼은 백삼본삼 및 백미삼을 파쇄기 등으로 파쇄한 것을 말하며, 파쇄한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p> <p>④ 원형백삼은 머리·몸통·다리 및 잔뿌리가 수삼상태 그대로의 형태가 유지되도록 건조한 것을 말하며, 세부적인 제조방법은 아래와 같다.</p> <p>㉠ 원료수삼을 선별·세척한다. 세척시는 60분 이상 물에 침지시켜서는 아니된다.</p> <p>㉡ 50°C이하의 온도에서 일정시간 건조한 다음 고유한 형태로 만든다.</p> <p>㉢ 삼체의 수분함량이 15.0%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다.</p> <p>㉣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p> <p>㉤ 계량하여 포장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84 1556 386 1601">구분</th> <th data-bbox="386 1556 794 1601">규격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84 1601 386 1691">중절백삼</td> <td data-bbox="386 1601 794 1691">○2mesh(11100<math>\mu</math>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math>\mu</math>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td> </tr> <tr> <td data-bbox="284 1691 386 1780">세절백삼</td> <td data-bbox="386 1691 794 1780">○10mesh(1900<math>\mu</math>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math>\mu</math>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td> </tr> <tr> <td data-bbox="284 1780 386 1904">파쇄백삼</td> <td data-bbox="386 1780 794 1904">○20mesh(846<math>\mu</math>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math>\mu</math>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td> </tr> </tbody> </table>	구분	규격기준	중절백삼	○2mesh(11100 $\mu$ 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 $\mu$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세절백삼	○10mesh(1900 $\mu$ 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 $\mu$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파쇄백삼	○20mesh(846 $\mu$ 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 $\mu$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구분	규격기준								
중절백삼	○2mesh(11100 $\mu$ 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 $\mu$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세절백삼	○10mesh(1900 $\mu$ 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 $\mu$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파쇄백삼	○20mesh(846 $\mu$ 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 $\mu$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계속)

현 행	개 정 안
<p>(라)흑삼분삼</p> <p>1) 흑삼은 흑삼분삼, 원형흑삼, 흑미삼류 및 그 밖의 흑삼류로 분류하여 제조한다.</p> <p>라) 단순가공 흑삼류는 절삼흑삼, 절편흑삼, 중절흑삼, 세절흑삼 및 과쇄흑삼을 말한다.</p> <p>2)품목별 제조기준</p> <p>가) 흑삼분삼</p> <p>① 원료수삼을 선별·세척하여 고르게 익힐 수 있도록 크기별로 구분한다.</p> <p>② 증삼장치에서 수증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찌서 익히고 건조하는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한다.</p> <p>③ 삼체의 수분함량은 15.0%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다.</p> <p>④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p> <p>⑤ 계량하여 포장한다.</p> <p>나) 원형흑삼</p> <p>① 원료수삼을 가) ①부터 ③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되,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을 유지하도록 제조한다.</p> <p>②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p> <p>③ 계량하여 포장한다.</p> <p>다) 흑미삼류</p>	<p>1) 흑삼은 흑삼분삼, 원형흑삼, 흑미삼류 및 단순가공 흑삼류로 분류하여 제조한다.</p> <p>라) 그 밖의 흑삼류는 절삼흑삼, 절편흑삼 및 분쇄흑삼을 말한다.</p> <p>2)제조기준</p> <p>가) 원료수삼을 선별·세척하여 고르게 익힐 수 있도록 크기별로 구분한다.</p> <p>나) 증삼장치에서 수증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찌서 익히고 건조하는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한다.</p> <p>다)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표 삭제&gt;</p>

현 행	개 정 안								
<p>① 원료미삼은 가) ① 및 ②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고, 제조된 흑삼으로부터 분리한 다리부분 및 잔뿌리 등은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p> <p>② 계량하여 포장한다.</p> <p>라) 그 밖의 흑삼류</p> <p>① 절삼흑삼은 흑삼본삼을 가로로 2등분하여 절단한다.</p> <p>② 절편흑삼은 흑삼본삼을 가로·세로 또는 경사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다.</p> <p>③ 분쇄흑삼은 흑삼본삼 및 흑미삼을 파쇄기 등으로 파쇄한 것을 말하며, 파쇄한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p> <p>④ 계량하여 포장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284 1377 782 1747"> <thead> <tr> <th data-bbox="284 1377 399 1429">구분</th> <th data-bbox="399 1377 782 1429">규격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84 1429 399 1534">중절흑삼</td> <td data-bbox="399 1429 782 1534">○ 2mesh(11100<math>\mu</math>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math>\mu</math>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td> </tr> <tr> <td data-bbox="284 1534 399 1639">세절흑삼</td> <td data-bbox="399 1534 782 1639">○ 10mesh(1900<math>\mu</math>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math>\mu</math>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td> </tr> <tr> <td data-bbox="284 1639 399 1747">파쇄흑삼</td> <td data-bbox="399 1639 782 1747">○ 20mesh(864<math>\mu</math>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math>\mu</math>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td> </tr> </tbody> </table>	구분	규격기준	중절흑삼	○ 2mesh(11100 $\mu$ 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 $\mu$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세절흑삼	○ 10mesh(1900 $\mu$ 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 $\mu$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파쇄흑삼	○ 20mesh(864 $\mu$ 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 $\mu$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구분	규격기준								
중절흑삼	○ 2mesh(11100 $\mu$ 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 $\mu$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세절흑삼	○ 10mesh(1900 $\mu$ 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 $\mu$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파쇄흑삼	○ 20mesh(864 $\mu$ 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 $\mu$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계속)

현 행	개 정 안																
<p><b>별표 3의2</b></p> <p>1. 용어의 정의 (생략)</p>	<p>인삼류의 검사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2 제1호(용어의 정의)에 따른다.</p>																
<p>2. 인삼류의 검사기준</p> <p>가. 일반검사기준</p> <p>8) 세균수 : 50,000/g 이하이어야 하며 진공 포장한 제품은 3,000/g 이하일 것</p> <p>9) 대장균이 음성일 것</p> <p>12) 진세노사이드 함량(흑삼을 제외한다): Rg1 0.10% 이상, Rb1 0.20% 이상일 것</p>	<p>가. 안전성검사기준(필수검사)</p> <p>8). 9) 현행 유지</p> <p>12) 진세노사이드 함량(흑삼을 제외한다): Rg1 과 Rb1 합이 0.30% 이상일 것</p>																
<p>2) 품질검사</p> <p>가) 홍삼</p> <p>(1) 직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th> <th style="width: 30%;">1등(천삼)</th> <th style="width: 30%;">2등(지삼)</th> <th style="width: 35%;">3등(양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③ 조 직</td> <td>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되, 머리 밑 10mm 이하부분 절단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0.5mm 이하인 것으로 길이가 10mm 이하인 것</td> <td>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되, 뇌두 밑 10mm 이하부분 절단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2.0mm 이하의 것으로 몸통길이의 1/4 이하인 것</td> <td>내백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3 이하이거나, 내공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2 이하인 것</td> </tr> </tbody> </table> <p>(2) 원형홍삼(생략)</p> <p>(3) 기타형태의 홍삼(생략)</p>		1등(천삼)	2등(지삼)	3등(양삼)	③ 조 직	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되, 머리 밑 10mm 이하부분 절단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0.5mm 이하인 것으로 길이가 10mm 이하인 것	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되, 뇌두 밑 10mm 이하부분 절단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2.0mm 이하의 것으로 몸통길이의 1/4 이하인 것	내백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3 이하이거나, 내공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2 이하인 것	<p>다. 외형검사기준(희망검사)</p> <p>1) 홍삼류</p> <p>가) 본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th> <th style="width: 30%;">1등(천삼)</th> <th style="width: 30%;">2등(지삼)</th> <th style="width: 35%;">3등(양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③ 조 직</td> <td>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되, 머리 밑 10mm 이하부분 절단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1.0mm 이하인 것으로 몸통길이의 1/4이하인 것</td> <td>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되, 뇌두 밑 10mm 이하부분 절단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3.0mm 이하의 것으로 몸통 길 이 의 2/4 이하인 것</td> <td>내백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3 이하이거나, 내공의 직경이 몸통 직 격 의 1/2 이하인 것</td> </tr> </tbody> </table> <p>나) 원형홍삼(생략)</p> <p>다) 기타형태의 홍삼(생략)</p> <p>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체형·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p>		1등(천삼)	2등(지삼)	3등(양삼)	③ 조 직	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되, 머리 밑 10mm 이하부분 절단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1.0mm 이하인 것으로 몸통길이의 1/4이하인 것	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되, 뇌두 밑 10mm 이하부분 절단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3.0mm 이하의 것으로 몸통 길 이 의 2/4 이하인 것	내백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3 이하이거나, 내공의 직경이 몸통 직 격 의 1/2 이하인 것
	1등(천삼)	2등(지삼)	3등(양삼)														
③ 조 직	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되, 머리 밑 10mm 이하부분 절단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0.5mm 이하인 것으로 길이가 10mm 이하인 것	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되, 뇌두 밑 10mm 이하부분 절단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2.0mm 이하의 것으로 몸통길이의 1/4 이하인 것	내백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3 이하이거나, 내공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2 이하인 것														
	1등(천삼)	2등(지삼)	3등(양삼)														
③ 조 직	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되, 머리 밑 10mm 이하부분 절단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1.0mm 이하인 것으로 몸통길이의 1/4이하인 것	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되, 뇌두 밑 10mm 이하부분 절단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3.0mm 이하의 것으로 몸통 길 이 의 2/4 이하인 것	내백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3 이하이거나, 내공의 직경이 몸통 직 격 의 1/2 이하인 것														

(계속)

현 행										개 정 안					
(4) 홍미삼류(대미, 중미, 세미)										라) 홍미삼류(세부품명 : 대미, 중미, 세미)					
①직경(mm)	대 미			중 미			세 미			등급 항목	1 등	2 등	3 등		
	1 등	2 등	3 등	1 등	2 등	3 등	1 등	2 등	3 등						
②길이(mm)	6 이상			4 ~ 6			4 미만			①직경(mm)	제한없음				
③균열 상태	없는 것	약간 있는 것	제한 없음	없는 것	약간 있는 것	제한 없음	약간 균열이 있는 것	제한없음		②길이(mm)	제한없음				
④내공 · 내백	없는 것	단면의 1/5 이하 인 것	제한 없음	없는 것	단면의 1/5 이하 인 것	제한 없음	제한 없음			③균열상태	균열이 없는 것	제한없음	제한없음		
⑤수분(%)	15.0 이하									④내공 · 내백	제한없음				
⑥이형삼의 혼입률 (%)	5.0 미만	10.0 미만	50.0 미만	5.0 미만	10.0 미만	50.0 미만	5.0 미만	10.0 미만	⑤수분(%)	15.0 %					
⑦피해삼(%)	10미만	30미만	제한 없음	10미만	30미만	제한 없음	10미*만	30*미만	⑥이형삼의 혼입률(%)	10미만	제한없음				
										⑦피해삼(%)	10미만	30미만	제한없음		
										※ 대미, 중미, 세미의 기준은 자의적 일 수 있어 통합 필요.					
(5) 기타 홍삼류(절삼홍삼, 절삼홍삼, 절편 홍삼, 중절홍삼, 세절홍삼, 파쇄홍삼)										마) 단순가공 홍삼류, 태극삼류, 백삼류 (세부품명 : 절삼홍삼, 절편홍삼, 중절홍삼, 세절홍삼, 파쇄홍삼)					
구분 항목	절삼 홍삼, 태극삼, 백삼	절편 홍삼, 태극삼, 백삼	중절 홍삼, 태극삼, 백삼	세절 홍삼, 태극삼, 백삼	파쇄 홍삼, 태극삼, 백삼					구분 항목	절삼 홍삼, 태극삼, 백삼	절편 홍삼	중절 홍삼	세절 홍삼	파쇄 홍삼
	② 절단면	타원형 또는 원형이며 평활한 것									② 절단면	타원형 또는 원형일 것			
④ 절단 두께		5mm								④ 절단 두께	20mm 이하				
										비고 : 약사법과의 형평성 반영					
										바) 기타 홍삼류: 가)~마)에 해당하지 아니한 홍삼으로 미검사품을 포함한다.					

(계속)

현 행	개 정 안																
<p>나) 태극삼</p> <p>(1) 직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등급 항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1등(천삼)</th> <th style="text-align: center;">2등(지삼)</th> <th style="text-align: center;">3등(양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⑥머리탈락삼 혼입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없을 것</td> <td style="text-align: center;">1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한 없음</td> </tr> </tbody> </table> <p>(2) 원형태극삼(생략)</p> <p>(3) 기타 형태의 태극삼(생략)</p> <p>(4) 태극미삼류(생략)</p>	등급 항목	1등(천삼)	2등(지삼)	3등(양삼)	⑥머리탈락삼 혼입율	없을 것	10 이하	제한 없음	<p>2) 태극삼</p> <p>가) 본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등급 항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1등(천삼)</th> <th style="text-align: center;">2등(지삼)</th> <th style="text-align: center;">3등(양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⑥머리탈락삼 혼입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한 없음</td> </tr> </tbody> </table> <p>나) 원형태극삼(생략)</p> <p>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 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p> <p>다) 기타 형태의 태극삼(생략)</p> <p>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체형·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p> <p>라) 태극미삼류(생략)</p> <p>마) 단순가공 태극삼류(세부품명 : 절삼태극삼, 절편태극삼, 중절태극삼, 세절태극삼, 파쇄태극삼)</p> <p>바) 기타 태극삼류 : 가)~마)에 해당하지 아니한 태극삼으로 미검사품을 포함한다.</p>	등급 항목	1등(천삼)	2등(지삼)	3등(양삼)	⑥머리탈락삼 혼입율	5 이하	10 이하	제한 없음
등급 항목	1등(천삼)	2등(지삼)	3등(양삼)														
⑥머리탈락삼 혼입율	없을 것	10 이하	제한 없음														
등급 항목	1등(천삼)	2등(지삼)	3등(양삼)														
⑥머리탈락삼 혼입율	5 이하	10 이하	제한 없음														
<p>다) 백삼</p> <p>(1) 본삼류(직삼, 곡삼, 반곡삼, 피부직삼, 피부곡삼, 피부반곡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등급 항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1등(천삼)</th> <th style="text-align: center;">2등(지삼)</th> <th style="text-align: center;">3등(양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외관 및 성상</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좌 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머리 및 동체가</td> </tr> </tbody> </table>	등급 항목	1등(천삼)	2등(지삼)	3등(양삼)	①외관 및 성상	좌 동		머리 및 동체가	<p>3) 백삼</p> <p>가) 본삼류(직삼, 곡삼, 반곡삼, 피부직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등급 항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1등(천삼)</th> <th style="text-align: center;">2등(지삼)</th> <th style="text-align: center;">3등(양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외관 및 성상</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좌 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머리 및 동체가</td> </tr> </tbody> </table>	등급 항목	1등(천삼)	2등(지삼)	3등(양삼)	①외관 및 성상	좌 동		머리 및 동체가
등급 항목	1등(천삼)	2등(지삼)	3등(양삼)														
①외관 및 성상	좌 동		머리 및 동체가														
등급 항목	1등(천삼)	2등(지삼)	3등(양삼)														
①외관 및 성상	좌 동		머리 및 동체가														

(계속)

현 행				개 정 안																																																							
<table border="1"> <tr> <td>등급 항목</td> <td></td> <td></td> <td></td> </tr> <tr> <td>① 외관 및 성장</td> <td>머리 및 몸체</td> <td>생략</td> <td>머리 및 동체가 건설하고 균형정도가 등의 표준품 이상일 것</td> </tr> <tr> <td>② 수분</td> <td>다리</td> <td>직삼 이상의 경우에는 1개부터 3개까지의 다리가 있어야 하고 그길이가 몸통길이의 2/5 이상일 것</td> <td></td> </tr> <tr> <td>③ 피해삼 혼입율</td> <td></td> <td>생략</td> <td></td> </tr> <tr> <td>④ 머리탈락삼 혼입율</td> <td></td> <td>없을 것</td> <td>10 이내 제한 없음</td> </tr> <tr> <td>⑤ 선택</td> <td></td> <td>생략</td> <td></td> </tr> <tr> <td>⑥ 기타</td> <td></td> <td colspan="2">○ 피부백삼이 아닌 경우에는 탈피가 되어 있어야 한다.</td> </tr> </table>				등급 항목				① 외관 및 성장	머리 및 몸체	생략	머리 및 동체가 건설하고 균형정도가 등의 표준품 이상일 것	② 수분	다리	직삼 이상의 경우에는 1개부터 3개까지의 다리가 있어야 하고 그길이가 몸통길이의 2/5 이상일 것		③ 피해삼 혼입율		생략		④ 머리탈락삼 혼입율		없을 것	10 이내 제한 없음	⑤ 선택		생략		⑥ 기타		○ 피부백삼이 아닌 경우에는 탈피가 되어 있어야 한다.		<table border="1"> <tr> <td>머리 및 몸체</td> <td colspan="2"></td> <td>건설하고 균형정도가 3등 표준품 이상일 것</td> </tr> <tr> <td>② 수분</td> <td>다리</td> <td colspan="2">직삼의 경우에는 1개 이상의 다리가 있어야 하고 그길이가 몸통길이의 2/5 이상일 것</td> </tr> <tr> <td>③ 피해삼 혼입율</td> <td colspan="3">좌 동</td> </tr> <tr> <td>④ 머리탈락삼 혼입율</td> <td>5 이하</td> <td>10 이내</td> <td>제한 없음</td> </tr> <tr> <td>⑤ 선택</td> <td colspan="3">좌 동</td> </tr> <tr> <td>⑥ 기타</td> <td colspan="3">○ 피부백삼은 탈피가 되지 않아야 한다.</td> </tr> </table> <p>※ 비고 : 높은 온도로 급속건조하여 내용 조직의 선택이 변한 때에는 3등으로 하고, 건조작업의 부실로 동체 절단부에 연륜이 아닌 테가 선명하게 있는 것은 2등 이하로 한다.</p> <p>나) 백미삼류(세부품명 : (피)대미, (피)중미, 세미)(생략)</p> <p>다) 단순가공 백삼류(세부품명 : 절삼백삼, 절편백삼, 중절백삼, 세절백삼, 파쇄백삼)(생략)</p> <p>라) 잡삼류(생략)</p> <p>마) 원형백삼(생략)</p> <p>※ 비고 : 높은 온도로 급속건조하여 내용 조직의 선택이 변한 때에는 3등으로 하고, 건조작업의 부실로 동체 절단부에 연륜이 아닌 테가 선명하게 있는 것은 2등 이하로 한다.</p> <p>바) 기타 백삼류 : 가)~마)에 해당하지 아니한 백삼으로 미검사품을 포함한다.(생략)</p>				머리 및 몸체			건설하고 균형정도가 3등 표준품 이상일 것	② 수분	다리	직삼의 경우에는 1개 이상의 다리가 있어야 하고 그길이가 몸통길이의 2/5 이상일 것		③ 피해삼 혼입율	좌 동			④ 머리탈락삼 혼입율	5 이하	10 이내	제한 없음	⑤ 선택	좌 동			⑥ 기타	○ 피부백삼은 탈피가 되지 않아야 한다.		
등급 항목																																																											
① 외관 및 성장	머리 및 몸체	생략	머리 및 동체가 건설하고 균형정도가 등의 표준품 이상일 것																																																								
② 수분	다리	직삼 이상의 경우에는 1개부터 3개까지의 다리가 있어야 하고 그길이가 몸통길이의 2/5 이상일 것																																																									
③ 피해삼 혼입율		생략																																																									
④ 머리탈락삼 혼입율		없을 것	10 이내 제한 없음																																																								
⑤ 선택		생략																																																									
⑥ 기타		○ 피부백삼이 아닌 경우에는 탈피가 되어 있어야 한다.																																																									
머리 및 몸체			건설하고 균형정도가 3등 표준품 이상일 것																																																								
② 수분	다리	직삼의 경우에는 1개 이상의 다리가 있어야 하고 그길이가 몸통길이의 2/5 이상일 것																																																									
③ 피해삼 혼입율	좌 동																																																										
④ 머리탈락삼 혼입율	5 이하	10 이내	제한 없음																																																								
⑤ 선택	좌 동																																																										
⑥ 기타	○ 피부백삼은 탈피가 되지 않아야 한다.																																																										
<p>(2) 백미삼류((피)대미, (피)중미, 세미)(생략)</p> <p>(3) 기타 백삼류(절삼백삼, 절편백삼, 중절백삼, 세절백삼, 파쇄백삼)(생략)</p> <p>(4) 잡삼류(생략)</p> <p>(5) 원형백삼(생략)</p>																																																											

(계속)

현 행		개 정 안													
<p>라) 흑삼 (1) 직삼</p> <table border="1"> <tr> <td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mixed;">등급 항목</td> <td><u>1등(천삼)</u></td> <td><u>2등(지삼)</u></td> <td><u>3등(양삼)</u></td> </tr> <tr> <td>③ 조직</td> <td>내부조직이 치밀·견고 하되, 머리 밑 10mm 이하부분 절단 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0.5mm 이하인 것으로 길이가 10mm 이하인 것</td> <td>내부조직이 치밀·견고 하되, 뇌두 밑 10mm 이하부분 절단 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2.0mm 이하의 것으로 몸통길이의 1/4이하인 것</td> <td>내백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3 이하이거나, 내공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2 이하인 것</td> </tr> </table> <p>(2) 원형흑삼(생략) (3) 기타 형태의 흑삼(생략) (4) 흑미삼류(대미, 중미, 세미)(생략)</p>		등급 항목	<u>1등(천삼)</u>	<u>2등(지삼)</u>	<u>3등(양삼)</u>	③ 조직	내부조직이 치밀·견고 하되, 머리 밑 10mm 이하부분 절단 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0.5mm 이하인 것으로 길이가 10mm 이하인 것	내부조직이 치밀·견고 하되, 뇌두 밑 10mm 이하부분 절단 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2.0mm 이하의 것으로 몸통길이의 1/4이하인 것	내백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3 이하이거나, 내공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2 이하인 것	<p>4) 흑삼 가) 본삼</p> <table border="1"> <tr> <td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mixed;">등급 항목</td> <td></td> </tr> <tr> <td>③ 조직</td> <td>삼 제</td> </tr> </table> <p>나) 원형흑삼(생략)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p> <p>다) 기타형태의 흑삼(생략)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체형·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p> <p>라) 흑미삼류(세부품명 : 대미, 중미, 세미)(생략) 마) 단순가공 흑삼류(세부품명 : 절삼흑삼, 절편흑삼, 중절흑삼, 세절흑삼, 파쇄흑삼)(생략) 바) 기타 흑삼류 : 가)~마)에 해당하지 아니한 흑삼으로 미검사품을 포함한다.(생략)</p>		등급 항목		③ 조직	삼 제
등급 항목	<u>1등(천삼)</u>	<u>2등(지삼)</u>	<u>3등(양삼)</u>												
③ 조직	내부조직이 치밀·견고 하되, 머리 밑 10mm 이하부분 절단 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0.5mm 이하인 것으로 길이가 10mm 이하인 것	내부조직이 치밀·견고 하되, 뇌두 밑 10mm 이하부분 절단 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2.0mm 이하의 것으로 몸통길이의 1/4이하인 것	내백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3 이하이거나, 내공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2 이하인 것												
등급 항목															
③ 조직	삼 제														
		<p>5) 최저표준품 최저표준품이란 삼종별로 최저한도 품질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인삼류검사기관이 제작하여 비치하는 것을 말한다.</p>													

(계속)

현 행	개 정 안
<p>4) 표시검사</p> <p>가) 품목, 원료삼의 생산년도, 원산지, 연근(미삼을 제외한다), 등급, 중량, 뿌리수·크기(본삼만 해당한다), 제조자(수검자)의 주소·상호·성명, 지리적표시 등록번호(지리적표시 등록자만 해당한다), 품질보증기간, 검사연월일 및 검사자를 기재하였는지 여부</p> <p>나) 인삼류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상호 등을 포장에 표기하였는지의 여부</p> <p>다) 겉포장이나 속포장 등의 설명에 인삼의 유효성분·함량·용법 및 용량 등을 허위로 표시하였는지의 여부</p> <p>라) 내용물의 용량이 포장에 표시된 중량 이상인지의 여부</p> <p>마)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있는지의 여부</p>	<p>라. 표시검사기준(필수검사)</p> <p>1) 필수 표시사항 : 품목(“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 또는 “그 밖의 인삼”으로 표시한다), 원료삼의 생산년도, 원산지, 연근(연근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한다), 등급, 중량, 제조자(수검자)의 주소·상호·성명, 품질보증기간, 검사연월일 및 검사자</p> <p>2) 선택 표시사항 : 뿌리수·크기, 지리적표시 등록번호 등</p> <p>3) 연근검사 또는 외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외형검사기준에 부적합하여 기타 홍삼류, 기타 태극삼류, 기타 백삼류 및 기타 흑삼류로 분류된 인삼류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상호 등을 포장에 표기하였는지의 여부</p> <p>4) 겉포장이나 속포장 등의 설명에 인삼의 유효성분·함량·용법 및 용량 등을 허위로 표시하였는지의 여부</p> <p>5) 내용물의 용량이 포장에 표시된 중량 이상인지의 여부</p> <p>6)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있는지의 여부</p>
<p>3. 불합격 기준</p> <p>가. 품질검사, 포장검사 및 표시검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것</p>	<p>3. 불합격 기준</p> <p>가. 안전성검사, 연근검사, 외형검사 및 표시검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것</p>

## 제 7 장

### 요약 및 결론

-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인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그러나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경우 최근 들어 생산비 상승 및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긴 생육기간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성의 증가와 제조 및 유통 부문에서의 복잡한 유통구조 문제 등은 인삼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 인삼시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데 반해 인삼 중주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 인삼산업은 위축하고 있음. 특히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한·중 FTA 체결 등 인삼시장을 둘러싼 대외적인 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인삼산업법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나라 인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인삼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삼산업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일부 채소 및 과일 등에서 농약이 과다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되는 가운데, 인삼의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음. 인삼 중주국의 위상 회복을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소비자들은 농약, 중금속 등

화학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먹거리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GAP의 확산이 필요함. 무엇보다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경작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안전관리체계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인삼의 경우 생산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GAP 시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안전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음. 생산이력제는 GAP의 필수항목으로 생산자에게 각 생산단계별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며 소비자들로부터 생산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소비자 속성분석 결과, 인삼제품 및 원료관리와 직결된 GAP 인증여부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추가적인 지불의사를 보임. 이러한 분석결과는 GAP 인증여부와 같은 제품 및 원료관리 측면에서의 제품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이를 위해서는 GAP 도입과 생산이력제 추진이 필요하며 인삼표준경작법을 더욱 강화해야 함. 이를 통해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근표시제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6년근 수삼만이 고품질의 수삼인 것으로 오인시켜 저년근 인삼류의 부정 표시·유통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었음. 6년근에 집중된 인삼시장을 보다 다양화시키기 위하여 저년근 시장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현 인삼류 연근표시 의무제를 제조업체 자율사항으로 전환하고, 수삼의 연근확인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인삼산업법은 인삼산업의 육성과 인삼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최근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맞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율성을 확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인삼산업법 개정의 주요 쟁점은 경작신고의무제 도입과 인삼류의 검사

제도 완화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이와 함께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경작부문의 안전성 강화 및 수삼의 연근확인과 연근표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인삼경작신고 자율화 체제인 현 인삼산업법은 향후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경작신고를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함.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청정한 인삼의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자율사항인 인삼경작신고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 인삼류의 품질 관리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인삼의 검사가 의무화되었지만, 현 품질기준이 지나치게 외형 중심으로 등급·세부품명을 구분하고 있어 불필요한 시간·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모든 검사항목을 의무화하는 현 인삼산업법의 일부 검사항목을 선택검사제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인삼류의 유통을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검사항목을 선택검사제로 전환하여 인삼류 제조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유통을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음.
- 향후 중장기적 인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 및 제도 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 대안이 필요함. 먼저 무엇보다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경작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인삼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삼유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다양한 유통단위를 현실에 맞게 축소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포장 규격도 소규모 단위로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삼 생산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자연재해 등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어 자연재해 시 인삼경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입시기의 조

질 등을 통해 농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줄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촌노동력의 고령화와 부족으로 인삼의 후계자 육성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 인삼의 경우 일반 농산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삼의 특성을 고려한 후계자 육성 정책을 통해 인삼산업이 직면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향후 인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개별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한 인삼제품의 개발을 통해 인삼시장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함. 인접 영역인 제약분야와의 융합 활성화는 바이오 신약 개발 등을 통해 인삼시장의 신성장동력 발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인삼 신산업동력 발굴 및 투자 촉진, 기능성 인삼제품을 위한 R&D 투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인삼산업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은 강화함으로써 고려인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의 인삼산업법이 개정되어야 함.

## 참고 문헌

- 권혁인, 이정희, 최용의, 류귀진, 신은경, 성명환 등. 2002. “진품확인 및 품질인증체계를 통한 인삼유통 혁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농림축산식품부.
- 김동환, 이희재, 김유용, 이영은, 이주량, 류상모, 이미숙. 2014. “농업분야 미래 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김명환, 한석호, 조재성, 김태구, 이창수. 2013.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3 운용·개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 김선웅, 윤병삼, B. Wade Brorsen. 2016. “세계열모형의 인삼가격 예측성과 비교.” 『경영·정책연구』. 43(2): 287-304.
- 김태균, 홍나경. 2005. “식품안전성의 속성별 지불의사금액 측정: 사과를 중심으로.” 『농업경제연구』. 46(2): 181-196.
- 박기환·허성운·최세균 “화훼·인삼·녹차의 소비행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미성, 신성철. 2016. “당류 저감 정책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과제.” 『농정포커스 13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재기, 송우용, 윤동섭. 2001. “인삼관련산업의 시장실태분석과 경쟁촉진방안.”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 서종혁, 이동필, 오내원, 황의식. 1992. “인삼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명환, 이동필, 유승우, 임송수, 김철민, 박문호, 이원진, 목성균, 양재원, 최용의. 2004. “WTO/DDA 협상타결이 인삼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제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명환, 정은미, 박영목. 1999. “인삼 수급전망과 인삼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2006. “중국의 인삼산업 실태와 관련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2005. “미국의 화기삼 생산·유통·수출입 실태 및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용선, 이선령. 2010. “인삼·약초를 활용한 식품가공산업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현지. 2010. “유전자변형식품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창곤, 김동훈, 이은혜. 2012. “금산인삼약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창곤. 2013.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인삼산업 발전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립독성연구원. 2006. 「형질전환식품유래의약품 참고자료집」.
- 농림축산식품부. 2016. 「인삼 통계자료집」.
- 농림축산식품부. 2016. 「인삼산업법령집」.
-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2010. 「인삼류 해외시장 동향 및 수출확대 여건」.
- 충남 금산군청 인삼산업 보고자료, 2001.
- 충청남도 인삼 세계화 프로젝트팀 자료, 2001.
- 금산군청 군지 제2편 산업과 경제, 제1장 인삼산업의 어제와 오늘

- Adamowicz, W., Boxall, P., Williams, M., Louviere, J. 1998. “Stated preference approaches for measuring passive use values: Choice experiments and contingent 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0(1): 64-75.
- Greene, W. H. 2000. *Econometric Analysis*(4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International.
- Han, S. Y., Lee, C. K., Mjelde, J. W., Kim, T. K. 2010. “Choice experiment valuation of management alternatives for reintroduction of the endangered mountain goral in Woraksan National Park, South Korea”, *Scandinavian Journal of Forest Research*, 25(6): 534-543.
- Lee, C. K., Lee, J. H., Kim, T. K., Mjelde, J. W. 2010. “Preferences and willingness-to-pay for bird-watching tour and interpretive services using a choice experiment”,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8(5): 695-708.
- Lusk, J. L., Roosen, J., Fox, J. A. 2003. “Demand for beef from cattle administered growth hormones or fed genetically modified corn: A comparison of consumers in France,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5(1): 16-29. MA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2004. Annual Report for Agricultural Policy.

### 참고 사이트

- KOTRA 해외비즈니스포털, <http://tradedoctor.kotra.or.k>
- 귀농귀촌종합센터, <http://www.returnfarm.com>
-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9810/nd98100290.html](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9810/nd98100290.html)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27>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